

프랑스의 재정

2012. 10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은 경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정치적·경제적 배경 | 2 |
| 1. 일반적 배경 | 2 |
| 2. 1980년대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 | 6 |
| 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 시기: 1981. 5 ~ 1995. 5 | 6 |
| 나.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 시기: 1995. 5 ~ 2007. 5 | 8 |
| 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시기: 2007. 5 ~ 2012. 5 | 10 |
| 라.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시기: 2012. 5 ~ 현재 | 11 |
| III.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 추이 | 13 |
| 1. 공공부문(Secteur public) | 13 |
| 가. 중앙공공행정(Administration publique centrale) | 13 |
| 나.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APUL) | 14 |
| 다.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ASSO) | 15 |
| 라. 공기업(Entreprise publique) | 16 |
| 2. 재정 추이 | 18 |
| 가. 재정의 규모와 특징 | 18 |
| 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 27 |
| IV. 예산·결산제도 | 32 |
| 1. 재정 관련 주요 법 | 32 |
| 가. 헌법(Constitution) | 32 |
| 나.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 | 34 |
| 다. 재정법(Lois de finances) | 35 |
| 라. 사회보장재원조달법(Loi du financement de sécurité sociale) | 37 |
| 마. 공공재정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 39 |
| 2. 재정 관련 조직 | 41 |
| 가. 경제·재정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관련 조직 | 41 |
| 나. 부처별 내부 조직 | 44 |
| 다. 의회 | 45 |

| | |
|---|-----------|
| 라.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 47 |
| 마.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 48 |
| 바. 국가평의회(Conseil d'État) | 48 |
| 사. 국고청(Agence France Trésor, AFT) | 49 |
| 3. 예산구성과 범위 | 49 |
| 가. 예산구성 | 49 |
| 나. 예산 범위 | 50 |
| 다. 예산구성의 원칙 | 52 |
| 4. 예산 일정 | 54 |
| 가. 예산편성 | 54 |
| 나. 예산 심의 및 승인 | 56 |
| 다. 예산집행 | 57 |
| 5. 결산, 감사 및 성과평가 | 58 |
| 가. 결산 | 58 |
| 나. 감사 | 60 |
| 다. 성과평가 | 61 |
| 6. 주요 관련 문서 | 62 |
| 가. 예산방향토론 참조 문서 | 62 |
| 나. 재정법안 관련 문서 | 62 |
| 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 관련 문서 | 64 |
| 라. 결산법안 관련 문서 | 65 |
| V. 기타 재정제도 | 66 |
| 1. 프로그램별·미션별 지출 분류 | 66 |
| 2. 프로그램 운영예산(Budgets opérationnels de programme) | 69 |
| 3. 다년도 예산(Budget pluriannuel) | 72 |
| 4. 안정 및 성장협약(Pacte de stabilité et de croissance) | 73 |
| 참고문헌 | 75 |
| 부 록(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76 |

표 목차

| | |
|---------------------------------------|----|
| 〈표 1〉 프랑스 의회의 정치적 구성 | 5 |
| 〈표 2〉 매출액 기준 20대 공기업(2010년 기준) | 17 |
| 〈표 3〉 공공행정 부문별 지출과 수입 | 20 |
| 〈표 4〉 공공행정 기능별 지출 추이 | 21 |
| 〈표 5〉 공공행정 부문별·기능별 지출 추이 | 23 |
| 〈표 6〉 공공행정 부문별 총조세부담 | 24 |
| 〈표 7〉 공공행정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 | 26 |
| 〈표 8〉 공공부채규모 | 28 |
| 〈표 9〉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 29 |
| 〈표 10〉 공공행정 부문별 GDP 대비 적자 추이 | 31 |
| 〈표 11〉 재정 관련 프랑스 헌법 조항 | 33 |
| 〈표 12〉 LOLF 구성 | 35 |
| 〈표 13〉 2011~2014년 공공재정계획법 부록 목차 | 40 |
| 〈표 14〉 목별 국가예산부담 | 51 |
| 〈표 15〉 성과 목표의 구체적인 예 | 61 |
| 〈표 16〉 재정법안 관련 문서 | 63 |
| 〈표 17〉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속서(2011년 기준) | 64 |
| 〈표 18〉 RAP 포함 내용 | 65 |
| 〈표 19〉 32개 미션과 124개 프로그램 | 67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 경제성장과 실업 추이 | 8 |
| [그림 2] 시라크 대통령 집권기 경제성장과 실업 추이 | 10 |
| [그림 3] GDP 대비 재정 규모 | 18 |
| [그림 4] 총수입과 총지출 추이 | 19 |
| [그림 5] 프로그램 예산지출의 대체가능성 | 52 |
| [그림 6] 예산 편성 일정 | 56 |
| [그림 7] 예산과 결산의 연계: LOLF의 선사슬(chainage vertueux) | 59 |
| [그림 8] 프랑스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 66 |
| [그림 9] 프로그램 운영예산 | 71 |
| [그림 10] 다년도 예산체계 | 73 |

I. 서론

2010년부터 본격화된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 EU) 회원국들의 재정 상황 및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République française)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프랑스의 인구는 2011년 1월 추정치 기준 약 6,500만명으로 EU 27개 회원국 인구 5억 250만명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인구의 16.3%를 차지하는 독일에 이어 2번째로 EU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프랑스의 GDP는 2010년 기준 1조 9,328억유로이고 1인당 GDP는 2010년 추정치 기준 2만 9,805유로로 EU 27개국 중 11위이다.

프랑스에서 공공재정(Finances publiques)은 국가(État), 공공단체(Collectivités publiques),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관련 기관, 국가 및 지방 산하 공공기관(Etablissements publics), EU 등의 재원, 부담 및 회계에 대한 검토로 정의된다(<http://www.vie-publique.fr>).¹⁾ 공공재정은 공법상 법인 혹은 기관의 경제활동이 비상품적인 서비스의 생산 및 재분배를 담당하거나, 대부분의 재원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충당되는 기관들의 지출과 관련된다. 따라서 파리교통공사(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 등과 같이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재정은 공적 의무를 가지는 공적 주체들의 금융적·회계적 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며 정부의 유력한 정책적 수단으로 해당 국가의 역사·경제·정치적 특징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공공재정 운영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프랑스의 공공재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II장은 재정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위해 프랑스의 정치적·경제적 배경과 특징을 개괄한다. 제III장은 프랑스 공공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프랑스 공공부문의 구성, 특징 및 공공부문의 재정 추이에 대해 검토한다. 제IV장은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운용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제V장은 프랑스의 재정 관련 주요 제도를 검토한다.

1) 공공기관은 국가, 레지옹(région), 데парта트망(département), 꼬뮌(commune) 등의 통제하에 대중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는 공법상 법인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성과 자체 예산을 가지는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지만, 국가, 레지옹, 데парта트망, 꼬뮌 등 행정적 단위와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전문성(spécialité)을 가진다. 공공기관의 관할권은 분명하게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활동영역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임무는 경제적·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공공기관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적 공공기관과 산업적·상업적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II. 정치적 · 경제적 배경

1. 일반적 배경

현재 프랑스는 제5공화국이며 정치형태는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결합된 준대통령제(Régime semi-présidentiel)이다(<http://www.vie-publique.fr>).²⁾ 준대통령제는 다수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62년 대통령을 직접보통선거로 선출하면서 준대통령제는 제5공화국의 통치체제로 도입되었다. 제5공화국의 기초인 1958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Président)과 의회(Parlement) 등 공권력 및 상급 법원들은 제5공화국의 제도(institutions)들로 규정된다.³⁾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수상(Premier ministre)을 임명하고 수상의 제청에 따라 각료를 임명하며 정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 1회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주요 법률을 채택할 수 있고 법률을 공포하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비상시에는 예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일요일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의 상위 득표자 2명 중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⁴⁾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2) 프랑스의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했다는 의미에서 이원집정부제로 불리기도 한다. 준대통령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인 수상으로 이원화된 통치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이 수상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프랑스의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유사하여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3) 제5공화국의 제도는 대통령직(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하원(Assemblée nationale), 상원(Sénat),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국가평의회(Conseil d'État),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 공화국정치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등이다.

4) 2000년 9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다. 1980년대 이후 3번 탄생된 동거정부(Cohabitation)는 대통령과 수상의 정치적 불일치로 인해 국정운영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제1차 동거정부(1986-1988년)와 제2차 동거정부(1993-1995년)는 미테랑 대통령 집권 시, 제3차 동거정부(1997-2002년)는 시

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지만, 대통령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하는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의장으로 사법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수상은 내각(gouvernement)을 지휘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책적 책임을 진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주재하여 일반적인 행정 및 의회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대통령에 의해 수상으로 지명되면 수상 지명자는 의회에서 시정방향을 밝히고 의회는 수상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한다. 표결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수상 지명자는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이 내각의 불신임을 걸고 법안을 제안할 경우 하원은 24시간 이내에 불신임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서 불신임이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토론이나 의결 없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자동 부결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수상, 장관(ministre), 국무장관(Secretaire d'Etat) 등 내각은 국가행정(administration de l'Etat)을 총괄한다. 2012년 6월 기준 20명의 장관이 있다.⁵⁾ 프랑스는 별도의 정부조직법이 없어 수상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정 부처들이 유연하게 구성되며 의회는 이에 간여하지 않는다. 부처 수장인 장관과 국무장관의 권한은 권한시행령(décret d'attribution)에 근거하여 정치적·행정적 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장관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집단책임의 원칙하에 모든 내각회의에 참석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는 소관 부처 업무 이외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부처별 업무조정 권한은 장관들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수

라크 대통령 집권 시에 탄생되었다. 대통령 임기 축소에 의해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동일해지고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를 거의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되어 동거정부의 출현 가능성은 감소되었다.

5) 20개 부처는 외교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사회적 문제·보건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농업·농식품·산림부(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수공업·상업·관광부(Ministère de l'Artisanat, du Commerce et du Tourisme),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대외통상부(Ministère du Commerce extérieur), 국방부(Ministère de la Défense), 여성권리부(Ministère des Droits des femmes), 생태·지속가능한 발전·에너지부(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경제·재정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국가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국토 평등·주거부(Ministère de l'Égalité des territoires et du Logement),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 해외영토부(Ministère des Outre-mer), 생산성 재건부(Ministère du Redressement productif), 국가개혁·분권화·공직부(Ministère de la Réforme de l'État, de la Décentralis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연대생활부(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노동·고용·직업교육·사회적 대화부(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등이다.

상이 가진다. 명예호칭인 국무장관은 법적인 특권은 없지만 의전상 대우를 받고 특별한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국무장관은 수상이나 장관 직속하에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며 위임의 성격은 정부 또는 부처별로 다르다.

프랑스 의회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로 법률안을 제안·의결하며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의회는 5년마다 직접 선출되는 하원(Assemblée nationale)과 선거단에 의해 선출되는 상원(Sénat)으로 구성된다. 577명의 하원의원은 대통령 선출과 유사한 직접보편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하원은 의원 총수 10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불신임을 받으면 수상을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348명의 상원의원은 약 15만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보편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단위로 상원의원 선거가 있고 절반 정도의 인원이 교체된다. 상원은 해산될 수 없으며 내각 개각의 권한이 없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원과 하원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양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헌법 개정이나 상원 자체 조직법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하원은 예산결정과 관련해서도 우선권을 가지며 의회의 임시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다. 법률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표 1>은 프랑스 의회의 정치적 그룹별 구성 현황이다.

〈표 1〉 프랑스 의회의 정치적 구성

| 상원 | | 하원 | |
|---|-----|--|-----|
| 정치적 그룹 | 성원 | 정치적 그룹 | 성원 |
| 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 132 | 사회주의 · 공화주의 · 시민 (Socialiste, républicain et citoyen) | 297 |
| 사회주의 · 명부연합그룹 (Groupe Socialiste et Apparentée) | 128 | 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m Mouvement Populaire) | 196 |
| 중도 · 공화주의 연합그룹 (Groupe de l'Union Centraliste et Républicaine) | 31 | 민주주의 · 독자 연합 (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 29 |
| 공산주의 · 공화주의 · 시민 그룹 (Groupe communiste, républicaine et citoyen) | 21 | 생태주의자(Ecologiste) | 17 |
| 민주주의적 연합과 유럽적 사회그룹 (Groupe du Rassemblement Démocratique et Social européen) | 17 | 급진주의 · 공화주의 · 민주주의 · 진보주의 (Radical, républicain, démocrate et progressiste) | 16 |
| 생태주의그룹(Groupe écologiste) | 12 | 민주주의 · 공화주의 좌파 (Gauche démocrate et républicaine) | 15 |
| 소계 | 341 | 소계 | 570 |
| 무소속 | 7 | 무소속 의원 | 7 |
| 총의석 | 348 | 총의석 | 577 |

자료: <http://www.assemblee-nationale.fr>, 2012년 7월 기준

2. 1980년대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

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 시기: 1981. 5 ~ 1995. 5

사회당 소속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으로 제5공화국 최초로 좌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미테랑 대통령은 집권 초반 금융부문 및 주요 대기업의 국유화, 정년 하향조정, 노동시간 단축, 5주 유급휴가,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1~84년 모루아(Mauroy) 수상은 적자상태인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고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였다. 1982년 2월 11일 법(Loi du 11 février 1982)에 따라 수에즈(Suez), 파리바(Paribas) 등 금융기업 및 36개 은행, 5개의 대규모 기업그룹(CGÉ, Saint-Gobain, Pechiney, Rhône-Poulenc, Thomson) 등이 국유화되었다. 1982년 기준 공공부문은 프랑스 GDP의 23%에 달하여 3천개 이상의 기업과 경제활동인구의 9%인 190만명을 고용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적 정부정책은 자본의 해외유출, 해외투자자들의 프랑스 투자기피, 경상수지 적자 증가 및 이로 인한 프랑화 평가절하 압력,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적자기업들의 국유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되었다. 실질 GDP 증가율은 1970년대 3.1%에서 1980년대 2.1%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1970년대 5%대에서 1980년대 9%대로 상승되었다. 1984~86년 파비우스(Fabius) 수상은 공기업 고용감축과 보조금 삭감, 은행법 제정을 통한 겸업주의 은행제도 확립 및 자본이동 자유화 등 금융혁신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안정화를 시도하였다.

1986년 3월 총선에서 우파는 민영화 등 레이건주의 및 대처주의적 경제프로그램을 기치로 내걸고 다수파가 되었다. 1986년 제1차 동거정부의 시라크(Chirac) 수상은 기업의 창의력과 민간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세제개혁, 금융시장 규제완화, 정부지출 및 중앙부처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였다. 1986년 7월 2일 법(Loi du 2 juillet 1986)은 60여 개의 민영화 대상기업을 결정하고 1986년 8월 6일 법(Loi du 6 août 1986)은 실행방식을 구체화하였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10개의 기업들만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⁶⁾

1988년 미테랑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비국유화 - 비민영화(ni nationalisation-ni privat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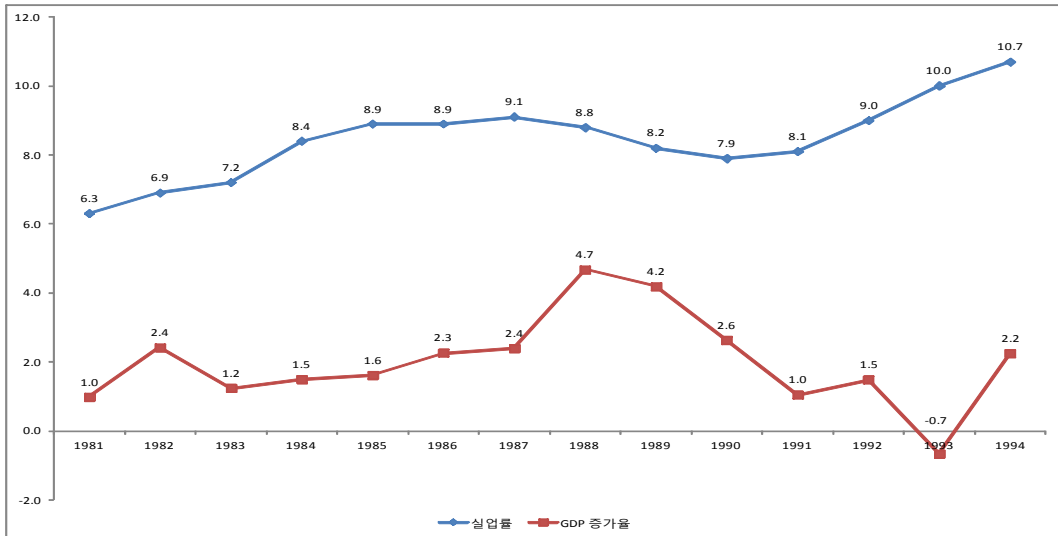
6) 은행과 보험 부문에서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1987년 6월), 파리바(1987년 1월), 수에즈(1987년말), 프랑스 상업은행(Crédit commercial de France, 1987년 5월), 산업부문에서는 생고뱅(Saint-Gobain, 1986), 전력회사(미래의 Alcatel, 1987년), 마트라(Matra, 1988년), 방송통신부문에서는 아바스(Agence Havas, 1987년)와 TF1(1987년) 등이 민영화되었다.

ni-ni) 원칙을 주장하였지만 부분적인 민영화는 지속되었다. 1988년에 취임한 로카르(Rocard) 수상은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임금상승 최소화, 법인세 등의 세제감면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고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insertion)을 위해 1989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통합최저소득제도(Revenu Minimum d'Insertion, RMI)가 도입되었다. 다른 한편 사회보장 제도의 적자 해소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보편적 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족급여에 대한 고용주 부담의 일부를 조세로 조달하여 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1년에 집권한 크레송(Cresson) 수상은 좌파적 정책기조로 전환하였지만 긴축통화정책과 재정제약으로 인해 경제침체는 지속되었다. 1993년 제2차 동거정부인 발라뒤르(Baladur) 수상이 우파내각을 구성하였지만 정책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1993년 7월 19일 법(Loi du 19 juillet 1993)은 21개 기업들의 이양을 결정하여, 1993년 Rhône-Poulenc, 1994년 Elf Aquitaine, 1995년 Seita, Pechiney, Usinor, 1993년 BNP와 UAP 등이 민영화되었다. 1992년 9월부터 유럽환율기구(Exchange Rate Mechanism)가 와해위기에 직면하면서 프랑화 환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고금리로 인해 실업률이 1994년말 12%까지 상승되었다. 민영화와 공기업 자율성 확대, 퇴직연금과 의료보험금 감축,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이 단행되었다.

미테랑 대통령 시기는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저성장·고실업으로 특징지어진다. 14년 동안 부침은 있었지만 사회주의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누적되었다. 1980년대 후반 2차 집권 상반기를 제외하고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집권 후반기에는 10%를 초과하였다. GDP 증가율도 1988년과 198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2%대에 머물렀다.

[그림 1]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 경제성장과 실업 추이

(단위: %)



자료: INSEE

나.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 시기: 1995. 5 ~ 2007. 5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 당선 이후 1995년 12월에 취임한 쥐삐(Juppé) 수상은 복지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하였다. 적자가 가장 많은 의료보험의 지출 억제에 대해 의료수첩제도 신설, 의료보험 연간지출 상한선 설정,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의 기여금 인상 등이 추진되었다. 쥐삐 수상의 정책이 국민들의 반발로 실패하면서 1997년 사회당 소속 조스팽(Jospin)이 수상으로 취임하였고 제3차 동거정부가 구성되었다. 조스팽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실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용촉진을 위해 1998~2000년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9~2002년에 약 5%가 감소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1997~2002년 조스팽 내각은 공기업들을 민간부문으로 실질적으로 이양하였다.⁷⁾ 조스팽 수상 시기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7) 국가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부분적 기업공개가 이 시기에 실현되었다. 산업부문의 경우 1999년 Thomson Multimedia, 은행과 보험의 경우 1998년 CNP, 운송업에서는 1999년 Air France, 통신에서는 1997년과 1998년 프

높은 경제성장률, 사상 최저의 실업률 등 국내 경제는 안정되었지만 이민 증가로 인한 국내 치안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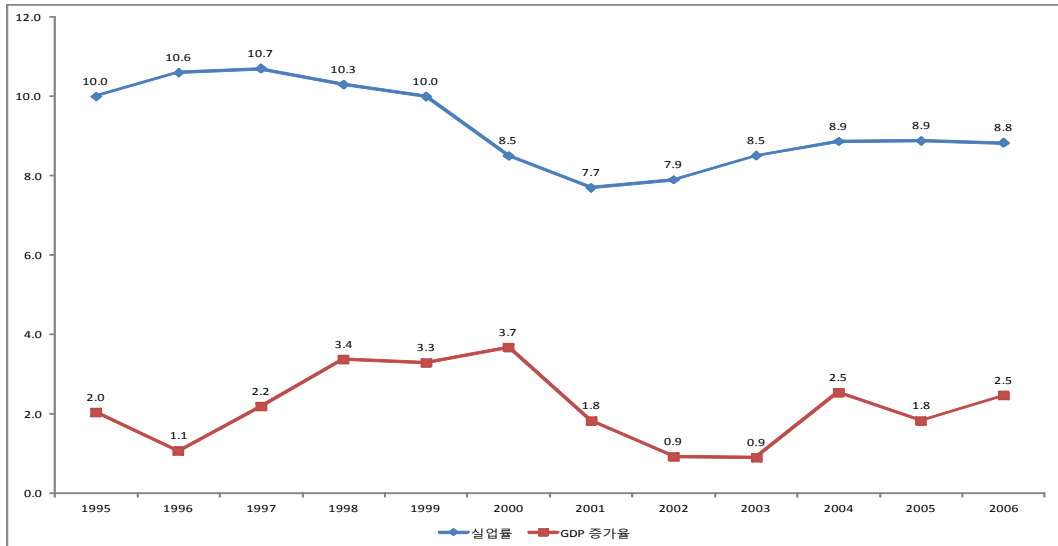
2002년 5월 극우파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좌·우파 연대를 통해 시라크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수상이 된 라파랭(Raffarin)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EU가 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주 48시간까지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했다.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2004년 프랑스테레콤(France Télécom)과 에어프랑스(Air France)가 민영화되었다. 2006년 2월 2일과 16일의 시행령(Décrets des 2 et 16 février 2006)은 각각 프랑스북동부고속도로공사(Société Autoroutes du Nord et de l'Est de la France)와 빠리-렌-론 고속도로공사(Société Autoroutes Paris-Rhin-Rhône) 등의 전면적 민영화를 허용하였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가가 지분의 과반수는 보유하면서 2005년 여름 프랑스가스공사(Gaz de France, GDF), 2005년 11월 프랑스전기공사(Electricité de France, EDF)가 부분적으로 기업공개를 하였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도 본격화되었다. 2006년 1월 3일 정부 신년사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 창설을 제안하고, 공무원들과 국가기관들에 공공부채의 안정화를 요청하였다. 2006년 1월 11일 빌팽(de Villepin) 수상은 공공재정을 위한 국가회의에서 연평균 2.25%의 성장률을 전제로 국가부채를 GDP 대비 66%에서 2010년 GDP 대비 60%로 인하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1년에 제정된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EU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높은 실업률도 지속되었다. 시라크 대통령 집권기에는 점진적이고 미미하나마 실업률이 10%대를 벗어나게 되었다. 제3차 동거정부 시기에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3%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다소 높은 성장률이 실업률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랑스 텔레콤(France Télécom) 등이 부분적으로 기업공개를 하였다. 많은 경우 공기업의 부분적 공개는 국가가 과반수의 지위를 포기하는 민영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CIC와 GAN, 1999년 Crédit Lyonnais, 2000년 Banque Hervet 등의 민영화이다.

[그림 2] 시라크 대통령 집권기 경제성장과 실업 추이



자료: INSEE

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시기: 2007. 5 ~ 2012. 5

사르코지 대통령과 피용(Fillon) 수상은 헌법 개정, 완전고용과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소비촉진, 근로유인 강화, 재정건전성 확립, 근무시간 탄력 조정, 조세감면, 연금개혁, 치안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노동, 고용과 구매력을 위한 법(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근로자들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 초과근무소득 세금면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총액 삭감, 주택구입 및 건축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면제 등이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대통령 권한을 명확하게 하면서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헌법이 개정되었다. 2009년부터 발효된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은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경쟁으로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고용, 더 많은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0년에는 연금개혁법(Loi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이 통과되어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최저 67세까지 조정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2010년까지 기간사업 및 R&D 투자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

하였고 이로 인해 2009년과 20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7%를 상회하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재정적자 관리를 위해 다년도 재정계획을 도입하였다.⁸⁾ 또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예산에 재정수지 목표를 도입하고 제로증가율 원칙을 채택하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정책의 전반적 개선(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RGPP)’을 도입하였다.⁹⁾ 사르코지 대통령은 적자감축회의를 2010년 1월 및 5월 2회에 걸쳐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는 수상 및 각료들이 참여하여 재정개혁 기초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재정, 의료지출, 사회보장기금 부채 등 이슈별로 실무진을 운영하였고, 합의된 내용 중 일부는 2011-14년 중기재정예산과 2011년 예산 및 사회보장예산에 반영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동안 실업률은 2007년 8.0%에서 2010년 9.4%로 증가되고 GDP 증가율은 2007년 -0.1%, 2008년 -3.1%, 2009년과 2010년 각각 1.7%를 기록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1980년대 이후 재선에 실패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라.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시기: 2012. 5~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정책에 대한 반감은 사회당 등 좌파의 집권으로 표출되었다. 2011년 상원 선거에서 제5공화국 처음으로 사회당은 다수당이 되었고 2012년 6월 총선에서도 사회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2012년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회당의 올랑드는 ‘보통 대통령’을 내걸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정책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현재 수상은 사회당의 에로(Ayrault)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정책 대신 성장정책을 통해 유럽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분배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금수령 연령 복귀, 공공지출을 통한 일자리 증가, 금융자본통제를 위한 상업·투자은행 분리, 스톡옵션 제한, 금융거래세 도입, 100만유로(약 1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75% 소득세율 부과, 대기업 법인세 35%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올랑드 대통령의 분배정책강화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

8) 다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IV장을 참조하라.

9) RGPP는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2007년 6월 20일 장관회의에서 발표되어 7월 10일 공식적으로 시작된 강력한 국가개혁 프로젝트이다. 시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 개선, 국가조직과 프로세스 현대화 및 단순화 등 세부목표를 가지고 국가지출에 대한 의무적인 청문회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션(mission) 정지 또는 미션의 지자체 이양 등을 결정한다.

속적으로 반복되는 유로존 위기의 구조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유럽 전체의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2012년 2사분기 경제성장률은 0%로 3분기 연속 0% 성장률에 머물렀고 2012년 7월 기준 실업자수는 15개월 연속 증가한 299만명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1% 감소해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기업투자 확대와 공공지출 감소가 필요하지만 대기업 증세 등 올랑드 대통령의 반기업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푸조, 알카텔, 사노피, 카르푸 등 대기업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금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림에 따라 연금재원의 증가분도 마련해야 한다. 부자증세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자들의 해외이탈이 점차 가시화되고 경제지표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세율을 75%에서 67%로 축소하고 근로소득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집권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들은 향후 경제회복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 추이

1. 공공부문(Secteur public)¹⁰⁾

가. 중앙공공행정(Administration publique centrale)

중앙공공행정은 국가(État) 및 다양한 중앙행정조직(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ODAC)으로 구성된다.¹¹⁾ 국가는 행정부(대통령직, 정부와 장관들),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 등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국가 회계차원에서는 단일한 제도적 단위이다. 국가의 활동은 일반예산(budget général), 국고특별회계(comptes spéciaux du Trésor), 부속예산(budgets annexes) 등에 나타난다. ODAC는 국가공공기관, 사회정책 재정 지원기관, 사법상의 권력 기관, EU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이질적인 기관들의 집합체이다. ODAC는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의 총합이며, 국가가 기능적·전문적 권한을 부여한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ODAC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재정법(lois de finances)에서 할당된 재원에 의해 지원을 받아 주로 국가를 대신하여 임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ODAC는 공공행정기능구분(Classification des fonctions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CFAP)에 따라 10가지 기능으로 분류된다.¹²⁾ ODAC에는 치안 및 공공질서와 관련된 기구는 거의 없으며 주로 전문분야별 연구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¹³⁾ 대학과 공공 그랑제콜(Grandes écoles

10)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행정(Administration)이 책임지는 경제적·사회적 모든 활동, 공기업(entreprises publiques), 사회보장 공공기관(organismes publics de Sécurité sociale) 등을 포함한다(<http://www.vie-publique.fr>).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은 건물과 기계 등 고정자산은 1985년 47.3%에서 2009년 15.5%, 임금근로자는 1985년 19.3%에서 2009년 5.0%, 부가가치는 1985년 24.9%에서 2009년 6.0%로 각각 감소되었다.

11) 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은 비상품적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국가수입과 국부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단위의 집합이며, 대부분의 재원을 징세를 통해 조달한다. 프랑스의 공공행정은 중앙공공행정(Administration publique centrale),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APUL)과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ASSO) 등으로 구성된다.

12) CFAP는 국가재정에 대한 국제적 분류 기준인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COFOG)를 의미한다. 10가지 기능은 일반 공공서비스, 국방, 질서와 공공치안, 경제적 사업, 환경보호, 주거와 도시정비, 보건, 여가, 문화와 종교, 교육, 사회보장 등이다.

13) ODAC는 사회보장, 경제사업,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공공행정기관을 포함하며 비상품적인 활동을 한다. 국가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원자력에너지위원회(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CEA), 취업청(Pôle Emploi), 프랑스기상청(Météo France), 국가주거지원기금(Fonds national d'aide au

publiques) 등 고등교육기관, 오페라(Opéra),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 등의 극장, 루브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등도 ODAC에 포함된다.

나.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APUL)

지방공공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지역공공조직(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locale, ODAL)이 포함된다. 지방행정은 레지옹(Région), 데парта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 등의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다.¹⁴⁾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은 레지옹 계획, 지역경제발전, 직업훈련, 고등학교 건설 등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행정단위인 데парта트망은 도로, 사회서비스, 소방, 사회보장, 중학교 건설, 농촌계획,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은 토지이용통제와 치안(시읍면)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레지옹에 레지옹의회(Conseil régional), 데парта트망에 일반의회(Conseil général), 코뮌에 시읍면의회(Conseil municipal) 등이 각각 구성되어 있다.¹⁵⁾ APUL에는 해외령 자치단체(collectivités d'outre-mer), 특별자치단체(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코뮌간 협력 공공기관(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혼합조합 등도 있다. 자체 재정을 가지는 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대도시권 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와 코뮌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 코뮌조합(syndicats de communes) 등도 APUL에 속한다. ODAL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방공공기관은 사회적 활동 코뮌센터(centres communaux d'action sociale, CCAS), 홍수와 구조를 위한 학교와 데парта트망 금고(caisse des écoles et départementaux d'incendie et de secours, SDIS), 농업고등학교와 직업교육 관련 지방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로 재원을 받는 레크리에이션과 문화협회, 상업·산업·농업과 수공업 회의소(commerce et industrie, agriculture et métiers) 등이다.

logement, FNAL), 국립보건의료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Inserm) 등이 ODAC에 포함된다. 행정부를 제외하고도 ODAC로 분류되는 기관은 700개가 넘으며 일부 기관들은 아카데미(대학)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에 소속되어 있다.

14) 2011년 기준 레지옹은 26개(5개는 해외영토), 데парта트망은 101개(5개는 해외영토)이고 2010년 1월 1일 기준 코뮌은 36,682개이다(<http://www.insee.fr>).

15) 프랑스 지방행정체제는 2014년에 주요한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2010년 12월 16일 법(Loi du 16 décembre 2010)이 통과되어 1,880명의 레지옹 의원과 4,182명의 데парта트망 의원이 3,000명의 단일한 지역의원(conseiller territorial)으로 대체되며 첫 선거는 2014년 3월에 실시될 것이다. 새로이 선출될 지역 의원은 레지옹과 데парта트망 의원을 겸하며 임기는 6년이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레지옹과 데парта트망 지역의원들은 '권한과 서비스의 상호부조 조직화에 대한 계획도(schéma d'organisation des compétences et de mutualisation des services)'라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다. 이는 레지옹과 데парта트망 사이의 행정적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의 조직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ASSO)

사회보장행정에는 사회보험체제(Régimes d'assurance sociale)와 사회보험 의존 조직(Organismes dépendant des assurances sociales, ODASS)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체제는 질병,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노년, 생존, 모성, 가족, 고용촉진, 실업, 주거, 교육빈곤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사회적 수당(prestations sociales)을 지급한다. 사회보험체제의 주요 재원은 의무적인 사회적 기여금(cotisations sociales obligatoires)이며 기여금 부담률은 공공행정이 정하거나 승인한다. 하부 분야로는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 근거한 사회보장기금(caisses de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의무기관인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UNEDIC) 등이 있다. 사회보장행정에서 사회보장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de sécurité sociale)는 국가의료보험금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국립가족수당금고(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국가노령보험금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중앙사회보장기관청(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COSS)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수당을 지불하고 사회보장기금에서 나온 기여금의 분담이나 다양한 기금들 사이에 할당된 수입을 배분하는 특별기금(fonds spéciaux)은 산재공동기금(Fonds commun pour les accidents du travail, FCAT), 석면근로자배상기금(Fonds d'indemnisation des travailleurs de l'amiante, FIVA), 노인 할당사회서비스(Service social d'allocation aux personnes âgées, SASV),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사회보장기관보상기금(Fonds de compensation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FOREC) 등을 포함한다. 임금근로자에 기초한 다른 체제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농업근로자들의 특별체제가 있다. 비근로자체제에는 농업사회공제와 농업경영인 체제가 포함된다. 비근로자·비농업레짐에는 노년보험과 질병리스크의 공동관리를 위해 장인, 상인, 산업가와 전문 자영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ODASS는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를 위한 공공시스템에 참여하는 제도적 단위들로 다양한 사회보장체제와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보장행정에 포함된다. ODASS는 공공보건시스템에 참여하는 공공병원 및 공공병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병원 등 주로 공공재정지원을 받는 병원과 사회보장기구에 통합된 사업들을 포괄한다.

라. 공기업(Entreprise publique)

공기업은 국가가 자본의 50% 이상 혹은 보유 지분에 연계된 투표권의 과반을 차지하고 소유 혹은 출자에 근거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다. 2010년말 기준 프랑스에는 1,217개의 공기업이 있으며 79만 1,900명이 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1,217개의 공기업 중 국가가 자본의 절반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우선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회사는 93개이다. 국가가 자본의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출자기업은 약 500개에 이른다. 2010년 7천여 명을 고용한 60여 개의 공기업이 자회사의 판매나 활동의 이양을 통해 민영화되었지만, 약 2만 2천명을 고용한 300여 개 기업이 공공부문으로 진입했다(<http://www.insee.fr>).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인 우체국(La Poste), 프랑스 철도공사(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SNCF), EDF 및 이들의 자회사 771개는 공기업 근로자의 72%인 57만 5,3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기업 근로자의 80%는 3차 산업(secteur tertiaire)에 종사하고 있고, 국가는 운송, 과학과 기술 활동을 하는 대규모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운수업과 창고업의 경우 공기업이 49만 9천명을 고용하고 있어 해당 분야 근로자들의 96%가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표 2〉 매출액 기준 20대 공기업(2010년 기준)

| | | 매출액 (백만 유로) | 최종 순결과 ¹⁾ (백만유로) | 정원 ²⁾ (천명) |
|----|--------------------------------------|----------------|--------------------------------|--------------------------|
| 1 | GDF-SUEZ | 84,478 | 5,626 | 236.1 |
| 2 | EDF | 65,165 | 1,249 | 158.8 |
| 3 | EADS ³⁾ | 45,752 | 572 | 121.7 |
| 4 | France Télécom | 45,503 | 4,877 | 161.4 |
| 5 | Renault ³⁾ | 38,971 | 3,490 | 124.7 |
| 6 | SNCF ³⁾ | 30,466 | 722 | 241.0 |
| 7 | Air France-KLM | 23,615 | 612 | 102.0 |
| 8 | Groupe La Poste | 20,939 | 537 | 276.6 |
| 9 | Thales ³⁾ | 13,125 | -107 | 63.7 |
| 10 | Safran | 11,028 | 189 | 53.4 |
| 11 | Areva ³⁾ | 9,104 | 986 | 47.9 |
| 12 | Réseau Ferré de France ³⁾ | 4,637 | 197 | 1.3 |
| 13 | RATP ³⁾ | 4,570 | 191 | 47.8 |
| 14 | France Télévisions | 3,140 | 12 | 10.7 |
| 15 | Aéroports de Paris | 2,739 | 300 | 12.2 |
| 16 | DCNS | 2,503 | 137 | 12.2 |
| 17 | La Française des Jeux | 1,242 | 83 | 1.4 |
| 18 | GIAT Industries | 1,070 | 212 | 3.0 |
| 19 | Grands ports maritimes ⁴⁾ | 671 | 57 | 4.8 |
| 20 | Groupe SNPE ³⁾ | 543 | 28 | 2.9 |

주: 1) 통합 회계

2) 연평균

3) 12월 31일 기준 정원

4) Dunkerque, Le Havre, Marseille, Nantes Saint-Nazaire, Paris et Rouen

자료: IN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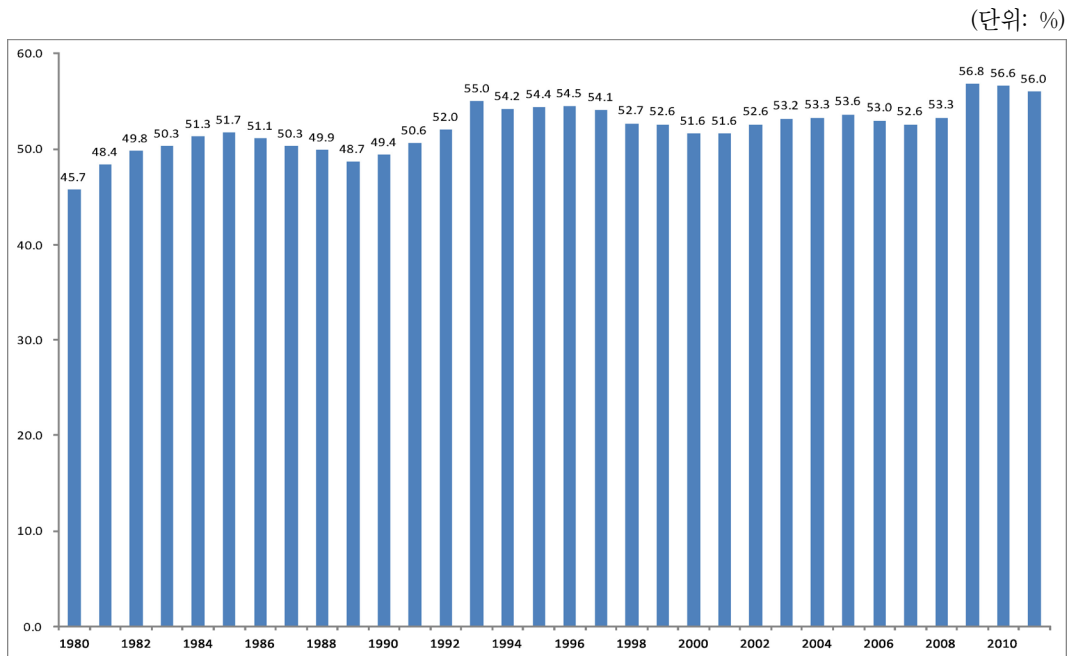
2. 재정 추이¹⁶⁾

가. 재정의 규모와 특징

1) 개요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2011년 기준 56.0%로 매우 큰 편에 속한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평균 45.2%이다. 프랑스의 재정규모는 이미 1980년대부터 50% 내외에서 변동해 왔다.

[그림 3] GDP 대비 재정 규모



자료: IN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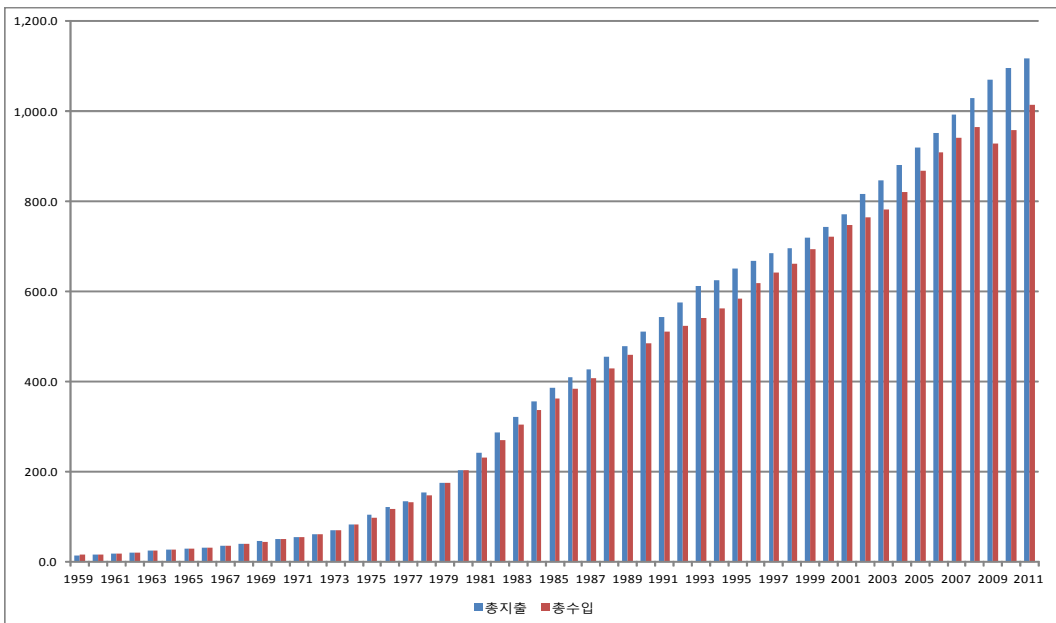
16)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는 공기업은 공공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 추이의 분석 대상은 중앙 공공행정, 지방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등 공공행정이다.

프랑스의 재정은 1974년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공공재정은 1976~1980년, 1994~2000년, 2004~2006년 등 몇 번의 건전성 회복 국면을 가지지만 항상 다시 악화되었다(Champsaur & Cotis, 2010). 프랑스도 1997년 이래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정 및 성장협약(Pacte de stabilité et de croissance, PSC)’에 의해 재정준칙의 제약을 받지만 국내 경제상황으로 인해 PSC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지출의 총수요 초과는 점차 폭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된 반면 총수입은 위기로 인해 2008년 수입규모 자체가 감소되었고 2010년에야 소폭 증가되었다.

[그림 4] 총수입과 총지출 추이

(단위: 십억유로)



자료: INSEE

총지출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중앙공공행정이며 특히 국가가 총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국가의 총지출은 1978년 737억유로에서 2011년 4,143억유로로 4.6배 증가된 반면 총수입은 1978년 725억유로에서 2011년 3,268억유로로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ODAC, 지방공공행정이나 사회보장행정도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지만 국가에 비해서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표 3〉 공공행정 부문별 지출과 수입

(단위: 십억유로)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 | 지방공공행정 | | 사회보장행정 | |
|------|--------|-------|------|------|--------|-------|--------|-------|
| | 국가 | | ODAC | | 총지출 | 총수입 | 총지출 | 총수입 |
| | 총지출 | 총수입 | 총지출 | 총수입 | | | | |
| 1978 | 73.7 | 72.5 | 11.5 | 11.5 | 26.9 | 22.5 | 65.3 | 64.9 |
| 1979 | 84.8 | 84.4 | 12.4 | 13.3 | 30.9 | 26.0 | 75.6 | 78.6 |
| 1980 | 98.1 | 97.8 | 15.0 | 16.0 | 35.4 | 30.5 | 88.6 | 91.7 |
| 1981 | 116.9 | 111.5 | 18.1 | 18.7 | 41.4 | 35.1 | 105.4 | 104.6 |
| 1982 | 138.0 | 128.7 | 22.2 | 22.8 | 49.1 | 41.4 | 125.4 | 125.0 |
| 1983 | 153.6 | 140.6 | 24.1 | 24.7 | 55.6 | 48.0 | 139.6 | 143.1 |
| 1984 | 168.0 | 152.2 | 29.0 | 28.2 | 57.3 | 52.1 | 152.7 | 155.1 |
| 1985 | 183.4 | 164.3 | 31.5 | 32.5 | 63.3 | 57.6 | 164.0 | 165.0 |
| 1986 | 191.4 | 176.4 | 27.8 | 26.3 | 70.2 | 64.9 | 174.8 | 170.2 |
| 1987 | 198.5 | 185.6 | 28.4 | 28.2 | 73.8 | 69.3 | 182.1 | 181.8 |
| 1988 | 211.4 | 192.5 | 28.0 | 28.6 | 80.5 | 75.0 | 194.2 | 193.4 |
| 1989 | 219.0 | 203.3 | 28.4 | 30.6 | 87.0 | 81.0 | 207.4 | 208.3 |
| 1990 | 231.2 | 210.0 | 30.9 | 32.8 | 93.0 | 87.8 | 221.3 | 220.2 |
| 1991 | 240.4 | 219.5 | 32.8 | 34.6 | 101.2 | 93.2 | 236.0 | 231.1 |
| 1992 | 255.8 | 218.9 | 35.2 | 37.1 | 106.3 | 98.5 | 252.7 | 244.3 |
| 1993 | 278.8 | 219.9 | 38.9 | 40.3 | 108.3 | 104.4 | 265.6 | 254.7 |
| 1994 | 279.5 | 225.0 | 36.9 | 38.3 | 113.8 | 109.5 | 273.2 | 267.3 |
| 1995 | 280.4 | 232.6 | 46.3 | 40.5 | 117.8 | 114.2 | 285.0 | 276.9 |
| 1996 | 291.8 | 247.8 | 41.3 | 40.9 | 123.2 | 122.4 | 295.2 | 290.9 |
| 1997 | 304.0 | 256.0 | 41.8 | 49.3 | 122.6 | 124.2 | 302.8 | 299.7 |
| 1998 | 301.3 | 263.7 | 43.1 | 43.6 | 126.2 | 129.0 | 311.8 | 311.4 |
| 1999 | 316.4 | 281.4 | 42.9 | 44.2 | 131.7 | 134.7 | 320.8 | 326.7 |
| 2000 | 318.6 | 284.5 | 46.0 | 45.3 | 141.3 | 142.6 | 331.7 | 343.2 |
| 2001 | 329.9 | 294.3 | 50.5 | 49.5 | 144.7 | 145.9 | 347.9 | 358.5 |
| 2002 | 350.3 | 293.1 | 54.1 | 55.1 | 154.1 | 155.8 | 367.3 | 371.0 |
| 2003 | 354.6 | 293.7 | 55.9 | 55.1 | 163.0 | 163.6 | 386.6 | 382.7 |
| 2004 | 375.6 | 323.4 | 53.7 | 59.2 | 177.6 | 175.1 | 406.2 | 395.4 |
| 2005 | 386.4 | 334.9 | 58.7 | 62.0 | 187.1 | 184.1 | 426.1 | 426.4 |
| 2006 | 379.8 | 331.5 | 59.9 | 66.6 | 198.5 | 195.1 | 438.9 | 441.3 |
| 2007 | 378.9 | 338.9 | 68.3 | 59.4 | 212.9 | 205.2 | 461.6 | 466.2 |
| 2008 | 397.4 | 333.9 | 64.6 | 59.4 | 222.4 | 213.0 | 475.1 | 488.6 |
| 2009 | 405.8 | 288.7 | 72.8 | 68.1 | 229.8 | 223.9 | 497.2 | 482.2 |
| 2010 | 454.1 | 332.4 | 79.8 | 88.9 | 229.2 | 227.8 | 515.3 | 492.0 |
| 2011 | 414.3 | 326.8 | 81.8 | 79.1 | 234.4 | 233.5 | 531.5 | 519.1 |

자료: INSEE

2) 부문별·기능별 지출

공공행정의 총지출 추이를 기능별로 보면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일반 공공서비스와 보건의 비중도 높다. 경제사업, 국방, 교육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된 반면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표 4〉 공공행정 기능별 지출 추이

(단위: 십억유로, %)

| | 일반 공공 서비스 | 국방 | 치안 및 공공질서 | 경제 사업 | 환경 보호 | 주거 및 도시개발 | 보건 | 여가 문화 및 종교 | 교육 | 사회 보장 | 총지출 |
|------|-----------------|---------------|---------------|---------------|---------------|---------------|-----------------|------------------|----------------|-----------------|------------------|
| 1995 | 98.4 (15.1) | 29.9 (4.6) | 18.3 (2.8) | 53.1 (8.2) | 8.1 (1.3) | 17.6 (2.7) | 85.2 (13.1) | 11.2 (1.7) | 72.6 (11.2) | 256.2 (39.4) | 650.6 (100.0) |
| 1996 | 102.1 (15.3) | 31.1 (4.7) | 18.5 (2.8) | 53.6 (8.0) | 8.5 (1.3) | 17.3 (2.6) | 89.1 (13.3) | 11.3 (1.7) | 74.5 (11.1) | 262.5 (39.3) | 668.5 (100.0) |
| 1997 | 107.0 (15.6) | 30.3 (4.4) | 18.4 (2.7) | 50.2 (7.3) | 9.3 (1.4) | 20.0 (2.9) | 90.0 (13.1) | 12.1 (1.8) | 75.8 (11.1) | 272.3 (39.7) | 685.3 (100.0) |
| 1998 | 105.7 (15.2) | 28.2 (4.1) | 19.0 (2.7) | 50.6 (7.3) | 9.5 (1.4) | 19.8 (2.8) | 93.1 (13.4) | 13.0 (1.9) | 78.1 (11.2) | 279.9 (40.2) | 697.0 (100.0) |
| 1999 | 109.3 (15.2) | 28.1 (3.9) | 19.7 (2.7) | 50.3 (7.0) | 9.7 (1.4) | 21.8 (3.0) | 95.4 (13.3) | 13.3 (1.9) | 81.8 (11.4) | 289.6 (40.3) | 719.0 (100.0) |
| 2000 | 111.5 (15.0) | 28.2 (3.8) | 20.1 (2.7) | 51.6 (6.9) | 11.1 (1.5) | 25.6 (3.4) | 101.6 (13.6) | 14.5 (1.9) | 85.2 (11.4) | 294.9 (39.6) | 744.1 (100.0) |
| 2001 | 114.3 (14.8) | 30.3 (3.9) | 22.5 (2.9) | 50.9 (6.6) | 12.1 (1.6) | 26.1 (3.4) | 106.3 (13.8) | 16.3 (2.1) | 88.3 (11.4) | 305.6 (39.5) | 772.6 (100.0) |
| 2002 | 117.0 (14.3) | 31.5 (3.9) | 24.3 (3.0) | 55.6 (6.8) | 12.8 (1.6) | 28.3 (3.5) | 113.7 (13.9) | 18.0 (2.2) | 92.9 (11.4) | 321.8 (39.5) | 815.8 (100.0) |
| 2003 | 118.4 (14.0) | 29.7 (3.5) | 25.6 (3.0) | 55.2 (6.5) | 14.1 (1.7) | 29.1 (3.4) | 120.9 (14.3) | 19.7 (2.3) | 95.2 (11.2) | 340.0 (40.1) | 848.0 (100.0) |
| 2004 | 123.4 (14.0) | 30.9 (3.5) | 26.3 (3.0) | 55.1 (6.2) | 15.2 (1.7) | 31.1 (3.5) | 127.0 (14.4) | 20.6 (2.3) | 96.4 (10.9) | 355.8 (40.3) | 881.8 (100.0) |

〈표 4〉의 계속

(단위: 십억유로, %)

| | 일반 공공 서비스 | 국방 | 치안 및 공공질서 | 경제 사업 | 환경 보호 | 주거 및 도시개발 | 보건 | 여가 문화 및 종교 | 교육 | 사회 보장 | 총지출 |
|------|-----------------|---------------|---------------|---------------|---------------|---------------|-----------------|------------------|-----------------|-----------------|--------------------|
| 2005 | 129.0 (14.0) | 31.5 (3.4) | 27.0 (2.9) | 58.6 (6.4) | 16.4 (1.8) | 32.4 (3.5) | 133.2 (14.5) | 22.0 (2.4) | 99.2 (10.8) | 371.1 (40.3) | 920.4 (100.0) |
| 2006 | 120.0 (12.6) | 32.5 (3.4) | 27.5 (2.9) | 59.8 (6.3) | 17.7 (1.9) | 34.1 (3.6) | 138.6 (14.6) | 25.5 (2.7) | 102.7 (10.8) | 394.3 (41.4) | 952.6 (100.0) |
| 2007 | 129.0 (13.0) | 32.9 (3.3) | 28.5 (2.9) | 60.9 (6.1) | 18.0 (1.8) | 36.5 (3.7) | 143.8 (14.5) | 26.9 (2.7) | 104.4 (10.5) | 411.7 (41.5) | 992.6 (100.0) |
| 2008 | 134.5 (13.1) | 33.7 (3.3) | 31.0 (3.0) | 61.1 (5.9) | 19.0 (1.8) | 37.5 (3.6) | 147.7 (14.3) | 28.0 (2.7) | 108.5 (10.5) | 429.0 (41.6) | 1,030.0 (100.0) |
| 2009 | 133.5 (12.5) | 35.4 (3.3) | 32.4 (3.0) | 66.3 (6.2) | 20.0 (1.9) | 38.0 (3.5) | 152.5 (14.2) | 29.0 (2.7) | 113.6 (10.6) | 451.2 (42.1) | 1,071.9 (100.0) |
| 2010 | 132.8 (12.1) | 40.1 (3.7) | 33.1 (3.0) | 66.6 (6.1) | 19.9 (1.8) | 36.0 (3.3) | 154.6 (14.1) | 28.7 (2.6) | 115.8 (10.6) | 466.9 (42.7) | 1,094.5 (100.0) |

자료: INSEE

공공행정별로 보아도 사회보장지출을 담당하는 사회보장행정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행정은 사회복지지출과 보건에 대부분의 재원을 지출한다. 국가의 지출규모나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는 일반 공공서비스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ODAC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출은 1995년에 비해 2010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은 채 비중은 가장 높지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었다. 지방공공행정의 경우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행정에 비해 지방공공행정에서 차지하는 일반 공공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방행정의 경우 경제사업, 교육, 주거 및 도시개발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국가행정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중앙공공행정과 지방공공행정 모두 전체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공공행정 부문별·기능별 지출 추이

(단위: 십억유로, %)

| | 중앙공공행정 | | | | 지방공공행정 | | 사회보장행정 | |
|---------------|------------------|------------------|-----------------|-----------------|------------------|------------------|------------------|------------------|
| | 국가 | | ODAC | | 1995 | 2010 | 1995 | 2010 |
| | 1995 | 2010 | 1995 | 2010 | | | | |
| 총지출 | 280.4 (100.0) | 379.0 (100.0) | 46.3 (100.0) | 79.9 (100.0) | 117.8 (100.0) | 228.7 (100.0) | 285.0 (100.0) | 513.7 (100.0) |
| 일반 공공서비스 | 108.1 (38.6) | 187.6 (41.3) | 6.5 (14.0) | 8.1 (10.1) | 28.8 (24.4) | 42.1 (18.4) | 1.0 (0.4) | 4.9 (1.0) |
| 국방 | 30.0 (10.7) | 43.2 (9.5) | 0.0 (0.1) | 0.2 (0.2) | - | - | - | - |
| 치안 및 공공질서 | 16.6 (5.9) | 28.7 (6.3) | 0.0 (0.0) | 0.0 (0.0) | 2.1 (1.8) | 7.0 (3.0) | - | - |
| 경제사업 | 18.5 (6.6) | 27.1 (6.0) | 22.7 (49.0) | 27.0 (33.8) | 19.6 (16.7) | 29.7 (13.0) | - | - |
| 환경보호 | 1.8 (0.7) | 3.2 (0.7) | 0.2 (0.3) | 0.4 (0.5) | 6.4 (5.5) | 17.7 (7.7) | - | - |
| 주거와 도시개발 | 3.1 (1.1) | 4.0 (0.9) | 0.6 (1.2) | 2.0 (2.5) | 15.5 (13.1) | 34.4 (15.0) | - | - |
| 보건 | 0.4 (0.2) | 1.7 (0.4) | 0.4 (1.0) | 2.8 (3.5) | 0.8 (0.7) | 1.7 (0.8) | 83.9 (29.5) | 149.5 (29.1) |
| 여가, 문화와 종교 | 2.4 (0.8) | 5.5 (1.2) | 1.3 (2.8) | 3.6 (4.5) | 8.3 (7.1) | 21.1 (9.2) | - | - |
| 교육 | 55.2 (19.7) | 77.9 (17.2) | 4.5 (9.8) | 15.1 (18.9) | 16.7 (14.2) | 36.3 (15.9) | - | - |
| 사회보장 | 44.3 (15.8) | 0.1 (16.5) | 10.0 (21.6) | 20.6 (25.8) | 19.7 (16.7) | 38.8 (17.0) | 200.0 (70.2) | 359.2 (69.9) |

자료: INSEE

3) 공공행정별 총조세부담(prélèvements obligatoires)

공공행정이 부과하는 총조세부담을 보면 사회보장행정이 가장 많은 총조세부담을 부과하고 있다.¹⁷⁾ 사회보장행정에서는 조세보다 사회보험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조세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중앙공공행정의 경우 국가는 조세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은 1978년 37.6%에서 2011년 43.9%로 증가되었으며, 2011년 기준 사회보장행정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은 23.9%이다.

〈표 6〉 공공행정 부문별 총조세부담

(단위: 십억유로)

| | 중앙공공행정 | | | | 지방 공공 행정 | 사회보장행정 | | | EU 기구 | 총합 |
|------|--------|-----------|-------|------|----------------|--------|-----------|-------|----------|-------|
| | 국가 | | | ODAC | | 조세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조세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 | |
| 1978 | 59.7 | 0.7 | 60.4 | 0.5 | 10.9 | 1.6 | 53.5 | 55.1 | 2.5 | 129.4 |
| 1979 | 70.9 | 0.8 | 71.7 | 0.6 | 12.7 | 1.5 | 65.1 | 66.7 | 2.8 | 154.5 |
| 1980 | 82.0 | 0.9 | 82.9 | 0.7 | 14.9 | 1.6 | 75.7 | 77.3 | 2.8 | 178.6 |
| 1981 | 92.7 | 1.1 | 93.8 | 0.8 | 17.3 | 2.0 | 85.0 | 87.0 | 3.5 | 202.4 |
| 1982 | 105.6 | 1.3 | 106.9 | 0.9 | 20.4 | 2.6 | 100.7 | 103.3 | 4.4 | 235.9 |
| 1983 | 116.4 | 1.5 | 117.8 | 1.1 | 23.7 | 4.6 | 114.3 | 118.9 | 5.1 | 266.6 |
| 1984 | 125.3 | 1.9 | 127.3 | 1.8 | 28.9 | 5.5 | 126.1 | 131.7 | 5.3 | 294.9 |
| 1985 | 135.3 | 2.0 | 137.3 | 1.8 | 32.0 | 4.0 | 135.5 | 139.5 | 5.8 | 316.5 |
| 1986 | 143.1 | 2.2 | 145.3 | 2.4 | 34.8 | 4.0 | 141.8 | 145.8 | 7.6 | 335.8 |
| 1987 | 151.3 | 2.5 | 153.8 | 2.7 | 37.7 | 5.1 | 151.5 | 156.6 | 8.4 | 359.2 |
| 1988 | 158.0 | 2.5 | 160.5 | 2.4 | 40.8 | 5.2 | 162.0 | 167.2 | 9.6 | 380.5 |
| 1989 | 166.3 | 3.1 | 169.3 | 2.6 | 44.0 | 5.2 | 176.5 | 181.7 | 9.5 | 407.1 |
| 1990 | 171.0 | 3.3 | 174.3 | 3.0 | 49.1 | 7.1 | 187.0 | 194.0 | 9.1 | 429.6 |

17) 직역하면 의무적인 징수를 의미하는 prélèvements obligatoires(영어로는 total tax burden)는 일반정부(공공행정)와 유럽기구(institutions européennes)들이 징수한 실질적인 조세(impôts)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

〈표 6〉의 계속

(단위: 십억유로)

| | 중앙공공행정 | | | | 지방 공공 행정 | 사회보장행정 | | | EU 기구 | 총합 |
|------|--------|-----------|-------|------|----------------|--------|-----------|-------|----------|-------|
| | 국가 | | | ODAC | | 조세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조세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 | |
| 1991 | 175.7 | 3.0 | 178.6 | 3.4 | 52.3 | 9.6 | 193.7 | 203.3 | 11.0 | 448.6 |
| 1992 | 173.4 | 3.1 | 176.5 | 4.0 | 54.8 | 10.4 | 203.0 | 213.4 | 9.9 | 458.7 |
| 1993 | 174.5 | 3.4 | 177.9 | 4.0 | 58.2 | 15.0 | 206.2 | 221.3 | 9.0 | 470.4 |
| 1994 | 180.7 | 3.6 | 184.3 | 4.2 | 61.7 | 22.0 | 210.9 | 232.9 | 9.5 | 492.6 |
| 1995 | 186.4 | 3.8 | 190.2 | 4.3 | 64.6 | 24.5 | 217.1 | 241.6 | 9.9 | 510.6 |
| 1996 | 200.9 | 3.8 | 204.6 | 4.4 | 68.5 | 29.6 | 223.7 | 253.2 | 8.5 | 539.2 |
| 1997 | 208.1 | 5.2 | 213.2 | 4.3 | 71.5 | 38.8 | 223.0 | 261.8 | 8.7 | 559.6 |
| 1998 | 216.1 | 5.3 | 221.4 | 4.6 | 74.4 | 68.7 | 205.0 | 273.6 | 8.1 | 582.1 |
| 1999 | 233.0 | 5.4 | 238.4 | 4.6 | 75.3 | 72.5 | 215.3 | 287.9 | 8.0 | 614.1 |
| 2000 | 233.1 | 5.4 | 238.5 | 4.7 | 74.5 | 85.2 | 224.3 | 309.5 | 8.7 | 635.9 |
| 2001 | 236.4 | 5.6 | 242.0 | 4.7 | 74.3 | 92.3 | 233.4 | 325.7 | 8.9 | 655.6 |
| 2002 | 234.3 | 5.6 | 239.9 | 7.3 | 76.4 | 94.2 | 242.7 | 336.9 | 7.1 | 667.6 |
| 2003 | 236.5 | 5.7 | 242.1 | 7.7 | 79.8 | 96.2 | 253.1 | 349.3 | 5.1 | 684.1 |
| 2004 | 264.5 | 5.7 | 270.2 | 8.2 | 87.8 | 85.6 | 261.1 | 346.7 | 3.8 | 716.7 |
| 2005 | 271.9 | 5.8 | 277.6 | 8.1 | 95.0 | 94.6 | 272.9 | 367.5 | 4.5 | 752.7 |
| 2006 | 264.5 | 8.7 | 273.3 | 8.9 | 101.4 | 120.3 | 284.5 | 404.7 | 4.7 | 793.0 |
| 2007 | 263.4 | 8.2 | 271.6 | 10.7 | 107.9 | 127.4 | 296.1 | 423.5 | 4.9 | 818.6 |
| 2008 | 258.6 | 7.9 | 266.5 | 10.1 | 112.8 | 137.4 | 303.7 | 441.1 | 5.1 | 835.6 |
| 2009 | 211.7 | 7.8 | 219.5 | 12.9 | 116.5 | 135.8 | 306.2 | 442.0 | 3.8 | 794.7 |
| 2010 | 258.4 | 7.7 | 266.1 | 15.0 | 88.7 | 137.2 | 312.5 | 449.7 | 4.4 | 823.9 |
| 2011 | 251.6 | 7.6 | 259.2 | 16.4 | 118.7 | 151.3 | 325.8 | 477.1 | 5.0 | 876.3 |

자료: INSEE

〈표 7〉 공공행정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

(단위: %)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 | 지방 공공행정 | 사회보장행정 | | | EU 기구 | 총합 |
|------|--------|-----------|------|------|------------|--------|-----------|------|----------|------|
| | 국가 | | | ODAC | | 세금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조세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 | |
| 1978 | 17.4 | 0.2 | 17.6 | 0.2 | 3.2 | 0.5 | 15.5 | 16.0 | 0.7 | 37.6 |
| 1979 | 18.1 | 0.2 | 18.3 | 0.1 | 3.2 | 0.4 | 16.6 | 17.0 | 0.7 | 39.4 |
| 1980 | 18.4 | 0.2 | 18.6 | 0.2 | 3.3 | 0.4 | 17.0 | 17.4 | 0.6 | 40.2 |
| 1981 | 18.5 | 0.2 | 18.7 | 0.2 | 3.4 | 0.4 | 16.9 | 17.3 | 0.7 | 40.4 |
| 1982 | 18.3 | 0.2 | 18.6 | 0.2 | 3.5 | 0.5 | 17.5 | 17.9 | 0.8 | 41.0 |
| 1983 | 18.2 | 0.2 | 18.4 | 0.2 | 3.7 | 0.7 | 17.9 | 18.6 | 0.8 | 41.7 |
| 1984 | 18.0 | 0.3 | 18.3 | 0.3 | 4.2 | 0.8 | 18.1 | 18.9 | 0.8 | 42.4 |
| 1985 | 18.2 | 0.3 | 18.4 | 0.2 | 4.3 | 0.5 | 18.2 | 18.7 | 0.8 | 42.5 |
| 1986 | 17.9 | 0.3 | 18.1 | 0.3 | 4.3 | 0.5 | 17.7 | 18.2 | 0.9 | 41.9 |
| 1987 | 18.0 | 0.3 | 18.3 | 0.3 | 4.5 | 0.6 | 18.0 | 18.6 | 1.0 | 42.7 |
| 1988 | 17.4 | 0.3 | 17.7 | 0.3 | 4.5 | 0.6 | 17.8 | 18.4 | 1.1 | 41.9 |
| 1989 | 17.0 | 0.3 | 17.3 | 0.3 | 4.5 | 0.5 | 18.0 | 18.5 | 1.0 | 41.6 |
| 1990 | 16.6 | 0.3 | 16.9 | 0.3 | 4.8 | 0.7 | 18.1 | 18.8 | 0.9 | 41.6 |
| 1991 | 16.4 | 0.3 | 16.7 | 0.3 | 4.9 | 0.9 | 18.1 | 19.0 | 1.0 | 41.9 |
| 1992 | 15.6 | 0.3 | 15.9 | 0.4 | 4.9 | 0.9 | 18.3 | 19.3 | 0.9 | 41.4 |
| 1993 | 15.6 | 0.3 | 15.9 | 0.4 | 5.2 | 1.3 | 18.4 | 19.8 | 0.8 | 42.0 |
| 1994 | 15.6 | 0.3 | 15.9 | 0.4 | 5.3 | 1.9 | 18.2 | 20.1 | 0.8 | 42.5 |
| 1995 | 15.6 | 0.3 | 15.9 | 0.4 | 5.4 | 2.0 | 18.2 | 20.2 | 0.8 | 42.7 |
| 1996 | 16.4 | 0.3 | 16.7 | 0.4 | 5.6 | 2.4 | 18.2 | 20.6 | 0.7 | 44.0 |
| 1997 | 16.4 | 0.4 | 16.9 | 0.3 | 5.7 | 3.1 | 17.6 | 20.7 | 0.7 | 44.2 |
| 1998 | 16.4 | 0.4 | 16.8 | 0.3 | 5.6 | 5.2 | 15.5 | 20.7 | 0.6 | 44.1 |
| 1999 | 17.0 | 0.4 | 17.4 | 0.3 | 5.5 | 5.3 | 15.8 | 21.1 | 0.6 | 44.9 |
| 2000 | 16.2 | 0.4 | 16.6 | 0.3 | 5.2 | 5.9 | 15.6 | 21.5 | 0.6 | 44.2 |

〈표 7〉의 계속

(단위: %)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 | 지방 공공행정 | 사회보장행정 | | | EU 기구 | 총합 |
|------|--------|-----------|------|------|------------|--------|-----------|------|----------|------|
| | 국가 | | | ODAC | | 세금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조세 | 사회 보험료 | 소계 | | | | | | | |
| 2001 | 15.8 | 0.4 | 16.2 | 0.3 | 5.0 | 6.2 | 15.6 | 21.8 | 0.6 | 43.8 |
| 2002 | 15.2 | 0.4 | 15.5 | 0.5 | 4.9 | 6.1 | 15.7 | 21.8 | 0.5 | 43.3 |
| 2003 | 14.9 | 0.4 | 15.2 | 0.5 | 5.0 | 6.1 | 15.9 | 22.0 | 0.3 | 43.1 |
| 2004 | 16.0 | 0.3 | 16.3 | 0.5 | 5.3 | 5.2 | 15.8 | 20.9 | 0.2 | 43.3 |
| 2005 | 15.8 | 0.3 | 16.2 | 0.5 | 5.5 | 5.5 | 15.9 | 21.4 | 0.3 | 43.8 |
| 2006 | 14.7 | 0.5 | 15.2 | 0.5 | 5.6 | 6.7 | 15.8 | 22.5 | 0.3 | 44.1 |
| 2007 | 14.0 | 0.4 | 14.4 | 0.6 | 5.7 | 6.8 | 15.7 | 22.4 | 0.3 | 43.4 |
| 2008 | 13.4 | 0.4 | 13.8 | 0.5 | 5.8 | 7.1 | 15.7 | 22.8 | 0.3 | 43.2 |
| 2009 | 11.2 | 0.4 | 11.6 | 0.7 | 6.2 | 7.2 | 16.2 | 23.4 | 0.2 | 42.1 |
| 2010 | 13.3 | 0.4 | 13.7 | 0.8 | 4.6 | 7.1 | 16.1 | 23.2 | 0.2 | 42.5 |
| 2011 | 12.6 | 0.4 | 13.0 | 0.8 | 5.9 | 7.6 | 16.3 | 23.9 | 0.2 | 43.9 |

자료: INSEE

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프랑스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1990년대부터 공공분야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 전체 공공행정의 부채규모는 1978년 728억유로에서 2011년 1조 7,173억유로로 22.6배 증가되었다. 공공행정 가운데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전체 공공행정부채 대비 부채 비중은 1978년 60%에서 2011년 77%로 증가되었다. 1978년 국가부채는 444억유로에서 2011년 1조 3,352억유로로 29.1배 증가, 지방공공행정은 같은 기간 239억유로에서 1,663억유로로 6.0배, 사회보장행정은 35억유로에서 2,054억유로로 57.7배 증가되었다. 규모 면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행정의 부채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표 8〉 공공부채규모

(단위: 십억유로)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지방공공행정 | 사회보장행정 | 전체공공행정 |
|------|---------|------|--------|--------|---------|
| | 국가 | ODAC | | | |
| 1978 | 44.4 | 1.0 | 23.9 | 3.5 | 72.8 |
| 1979 | 49.8 | 1.1 | 27.6 | 4.4 | 82.8 |
| 1980 | 55.1 | 1.2 | 30.9 | 5.0 | 92.2 |
| 1981 | 67.3 | 1.3 | 35.8 | 5.6 | 110.1 |
| 1982 | 94.7 | 2.0 | 42.5 | 6.3 | 145.5 |
| 1983 | 111.3 | 2.5 | 49.1 | 7.1 | 170.0 |
| 1984 | 133.5 | 2.7 | 55.8 | 9.5 | 201.4 |
| 1985 | 151.6 | 2.8 | 63.8 | 9.6 | 227.7 |
| 1986 | 170.4 | 4.1 | 68.7 | 6.0 | 249.3 |
| 1987 | 191.7 | 4.8 | 78.2 | 6.5 | 281.2 |
| 1988 | 211.8 | 1.6 | 81.6 | 7.8 | 302.8 |
| 1989 | 238.2 | 1.8 | 85.1 | 8.2 | 333.3 |
| 1990 | 263.1 | 2.2 | 90.0 | 8.3 | 363.6 |
| 1991 | 277.2 | 2.3 | 95.0 | 10.7 | 385.1 |
| 1992 | 320.3 | 2.4 | 99.5 | 17.9 | 440.1 |
| 1993 | 379.7 | 5.2 | 104.3 | 26.3 | 515.4 |
| 1994 | 435.4 | 5.2 | 108.2 | 21.2 | 570.0 |
| 1995 | 485.6 | 33.4 | 110.6 | 33.9 | 663.5 |
| 1996 | 528.5 | 30.3 | 112.4 | 41.4 | 712.7 |
| 1997 | 564.5 | 26.7 | 105.3 | 56.0 | 752.5 |
| 1998 | 610.8 | 23.8 | 105.7 | 47.0 | 787.4 |
| 1999 | 636.7 | 19.6 | 105.1 | 44.6 | 805.9 |
| 2000 | 657.7 | 19.2 | 105.2 | 45.3 | 827.3 |
| 2001 | 685.5 | 17.8 | 105.4 | 44.5 | 853.3 |
| 2002 | 746.0 | 15.4 | 104.1 | 46.6 | 912.0 |
| 2003 | 810.0 | 23.7 | 107.8 | 63.3 | 1,004.9 |
| 2004 | 851.2 | 21.9 | 111.5 | 94.8 | 1,079.5 |
| 2005 | 898.6 | 20.9 | 117.9 | 110.2 | 1,147.6 |
| 2006 | 896.2 | 15.3 | 125.6 | 115.0 | 1,152.2 |
| 2007 | 932.8 | 22.8 | 135.5 | 120.3 | 1,211.6 |
| 2008 | 1,040.9 | 11.6 | 146.3 | 119.9 | 1,318.6 |
| 2009 | 1,168.4 | 18.7 | 155.2 | 151.2 | 1,493.4 |
| 2010 | 1,245.0 | 14.1 | 161.1 | 175.0 | 1,595.2 |
| 2011 | 1,335.2 | 10.4 | 166.3 | 205.4 | 1,717.3 |

자료: INSEE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1978년 21.2%에서 2011년 86.0%로 증가되었다. 지방공공행정의 부채 비중은 1978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1978년 12.9%에서 2011년 66.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1978년 1.0%에 불과했지만 2011년 기준 10.3%로 10배 이상이 증가되었다.

〈표 9〉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단위: %)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지방공공행정 | 사회보장행정 | 전체공공행정 |
|------|--------|------|--------|--------|--------|
| | 국가 | ODAC | | | |
| 1978 | 12.9 | 0.3 | 6.9 | 1.0 | 21.2 |
| 1979 | 12.7 | 0.3 | 7.0 | 1.1 | 21.1 |
| 1980 | 12.4 | 0.3 | 6.9 | 1.1 | 20.7 |
| 1981 | 13.4 | 0.3 | 7.1 | 1.1 | 22.0 |
| 1982 | 16.4 | 0.3 | 7.4 | 1.1 | 25.3 |
| 1983 | 17.4 | 0.4 | 7.7 | 1.1 | 26.6 |
| 1984 | 19.2 | 0.4 | 8.0 | 1.4 | 29.0 |
| 1985 | 20.4 | 0.4 | 8.6 | 1.3 | 30.6 |
| 1986 | 21.3 | 0.5 | 8.6 | 0.7 | 31.1 |
| 1987 | 22.8 | 0.6 | 9.3 | 0.8 | 33.4 |
| 1988 | 23.3 | 0.2 | 9.0 | 0.9 | 33.3 |
| 1989 | 24.3 | 0.2 | 8.7 | 0.8 | 34.0 |
| 1990 | 25.5 | 0.2 | 8.7 | 0.8 | 35.2 |
| 1991 | 25.9 | 0.2 | 8.9 | 1.0 | 36.0 |
| 1992 | 28.9 | 0.2 | 9.0 | 1.6 | 39.7 |
| 1993 | 33.9 | 0.5 | 9.3 | 2.3 | 46.0 |
| 1994 | 37.6 | 0.4 | 9.3 | 1.8 | 49.2 |
| 1995 | 40.6 | 2.8 | 9.2 | 2.8 | 55.5 |

〈표 9〉의 계속

(단위: %)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지방행정 | 사회보장행정 | 전체공공행정 |
|------|--------|------|------|--------|--------|
| | 국가 | ODAC | | | |
| 1996 | 43.1 | 2.5 | 9.2 | 3.4 | 58.1 |
| 1997 | 44.6 | 2.1 | 8.3 | 4.4 | 59.5 |
| 1998 | 46.2 | 1.8 | 8.0 | 3.6 | 59.6 |
| 1999 | 46.6 | 1.4 | 7.7 | 3.3 | 59.0 |
| 2000 | 45.7 | 1.3 | 7.3 | 3.1 | 57.5 |
| 2001 | 45.8 | 1.2 | 7.0 | 3.0 | 57.1 |
| 2002 | 48.3 | 1.0 | 6.7 | 3.0 | 59.1 |
| 2003 | 51.0 | 1.5 | 6.8 | 4.0 | 63.3 |
| 2004 | 51.4 | 1.3 | 6.7 | 5.7 | 65.2 |
| 2005 | 52.3 | 1.2 | 6.9 | 6.4 | 66.8 |
| 2006 | 49.8 | 0.9 | 7.0 | 6.4 | 64.1 |
| 2007 | 49.4 | 1.2 | 7.2 | 6.4 | 64.2 |
| 2008 | 53.8 | 0.6 | 7.6 | 6.2 | 68.2 |
| 2009 | 62.0 | 1.0 | 8.2 | 8.0 | 79.2 |
| 2010 | 64.3 | 0.7 | 8.3 | 9.0 | 82.3 |
| 2011 | 66.9 | 0.5 | 8.3 | 10.3 | 86.0 |

자료: INSEE

공공행정 부문별 GDP 대비 재정적자를 보면 전체 공공행정은 1978년 -1.7%에서 2011년 -5.2%로 악화되었다. 지방공공행정의 경우 재정이 대체로 건전한 반면 국가의 경우 1978년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이 -0.3%에서 2011년 -4.4%에 이르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EU의 성장 및 안정협약의 GDP 대비 3% 적자준칙을 거의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공공행정 부문별 GDP 대비 적자 추이

(단위: %)

| 연도 | 중앙공공행정 | | 지방행정 | 사회보장행정 | 전체공공행정 |
|------|--------|------|------|--------|--------|
| | 국가 | ODAC | | | |
| 1978 | -0.3 | 0.0 | -1.3 | -0.1 | -1.7 |
| 1979 | -0.1 | 0.2 | -1.2 | 0.8 | -0.4 |
| 1980 | -0.1 | 0.2 | -1.1 | 0.7 | -0.3 |
| 1981 | -1.1 | 0.1 | -1.3 | -0.2 | -2.4 |
| 1982 | -1.6 | 0.1 | -1.4 | -0.1 | -2.9 |
| 1983 | -2.0 | 0.1 | -1.2 | 0.5 | -2.6 |
| 1984 | -2.3 | -0.1 | -0.8 | 0.4 | -2.8 |
| 1985 | -2.6 | 0.1 | -0.8 | 0.1 | -3.1 |
| 1986 | -1.9 | -0.2 | -0.7 | -0.6 | -3.3 |
| 1987 | -1.5 | 0.0 | -0.5 | 0.0 | -2.1 |
| 1988 | -2.1 | 0.1 | -0.6 | -0.1 | -2.7 |
| 1989 | -1.6 | 0.2 | -0.6 | 0.1 | -1.9 |
| 1990 | -2.1 | 0.2 | -0.5 | -0.1 | -2.5 |
| 1991 | -2.0 | 0.2 | -0.7 | -0.5 | -3.0 |
| 1992 | -3.3 | 0.2 | -0.7 | -0.8 | -4.6 |
| 1993 | -5.3 | 0.1 | -0.3 | -1.0 | -6.5 |
| 1994 | -4.7 | 0.1 | -0.4 | -0.5 | -5.5 |
| 1995 | -4.0 | -0.5 | -0.3 | -0.7 | -5.5 |
| 1996 | -3.6 | 0.0 | -0.1 | -0.3 | -4.0 |
| 1997 | -3.8 | 0.6 | 0.1 | -0.2 | -3.3 |
| 1998 | -2.8 | 0.0 | 0.2 | 0.0 | -2.6 |
| 1999 | -2.6 | 0.1 | 0.2 | 0.4 | -1.8 |
| 2000 | -2.4 | 0.0 | 0.1 | 0.8 | -1.5 |
| 2001 | -2.4 | -0.1 | 0.1 | 0.7 | -1.6 |
| 2002 | -3.7 | 0.1 | 0.1 | 0.2 | -3.3 |
| 2003 | -3.8 | 0.0 | 0.0 | -0.2 | -4.1 |
| 2004 | -3.1 | 0.3 | -0.1 | -0.6 | -3.6 |
| 2005 | -3.0 | 0.2 | -0.2 | 0.0 | -2.9 |
| 2006 | -2.7 | 0.4 | -0.2 | 0.2 | -2.3 |
| 2007 | -2.1 | -0.5 | -0.4 | 0.2 | -2.7 |
| 2008 | -3.3 | -0.3 | -0.5 | 0.7 | -3.3 |
| 2009 | -6.2 | -0.2 | -0.3 | -0.8 | -7.5 |
| 2010 | -6.3 | 0.5 | -0.1 | -1.2 | -7.1 |
| 2011 | -4.4 | -0.1 | 0.0 | -0.6 | -5.2 |

자료: INSEE

IV. 예산·결산제도

1. 재정 관련 주요 법

가. 헌법(Constitution)

프랑스의 재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된다. 재정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헌법 제5장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Rapport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에 주로 명시되어 있다(〈표 11〉 참조). 헌법 제5장은 제34조에서 제51조 2항까지 포함하고 있다.¹⁸⁾ 2008년도 헌법 개정에서는 제34조에 공공재정의 다년간 방향설정을 위한 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이 규정되었다. 헌법은 국제관계 관련 재정문제, 재정 관련 자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정의 다년간 방향을 정하는 계획법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제70조).¹⁹⁾ 제7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및 기타 고유 재원은 자체 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권한 이양은 권한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 이양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또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인 시행은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정한다.²⁰⁾

18) 프랑스 제5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은 1958년 10월 4일 헌법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헌법이 용이하게 개정되는 편이며, 최근에는 2008년 7월 23일 제5공화국의 현대화와 관련되어 헌법이 개정되었다.

19)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1958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협의기구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자유직업(profession libérale) 대표, 농업신용조직과 협동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23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임기는 5년이다.

20) 조직법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범주의 법으로 헌법의 적용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조

〈표 11〉 재정 관련 프랑스 헌법 조항

| | |
|--------|---|
| 제3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성격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등은 법률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원칙은 법률로 결정 - 조직법에서 정한 조건과 유보조항에 따라 재정법은 국가의 재원 및 부담 결정 - 조직법에서 정한 조건과 유보조항에 따라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재정적 균형에 대한 일반적 조건을 결정하고 예상 수입을 감안하여 지출 목표 결정 - 계획법은 국가의 행동 목표 결정 - 공공재정의 다년간 방향설정은 계획법에 의해 정의되며 공공행정의 회계 균형 목표에 포함 |
| 제3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 및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하원에 먼저 제출되고 제44조 제1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부 발의법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 |
| 제4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제출 법률안과 수정안이 국고수입의 감소 혹은 공공부담의 창출이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수리 불가 |
| 제4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의 경우 양원 중 처음 제출된 의회의 1차 독회에서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독회에서는 다른 의회에서 이송된 법안에 대해 토론 |
| 제4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재정법 의결 - 하원이 정부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여 상원은 15일 이내에 의결 -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정령(ordonnance)으로 발효 사업연도의 재원과 부담을 정하는 재정법이 사업연도 개시 전에 공포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징세 및 결정된 서비스와 연계된 예산을 시행령에 따라 개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긴급 요청 |
| 제47-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의결 - 하원에 정부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의하고 상원은 15일 이내에 의결 -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정령으로 발효 |
| 제47-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원은 의회의 정부 활동 통제 지원 - 회계감사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법 집행,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의 적용 등의 관리를 위해 의회와 정부 지원 - 회계감사원은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기여 |
| 제4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다음 항의 규정의 유보하에 다른 원에서 이송된 지 최소한 6주 이상이 된 법안, 위기상황과 관련된 법안 및 제35조와 관련된 승인 요구 및 정부의 요청 법안들에 대한 검토는 의사일정에 우선 등록 |
| 제4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수상은 재정법 또는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의 표결과 관련하여 하원에 대해 책임지며, 24시간 이내에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의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고 전향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표결 |

자료: Constitution, <http://www.assemblee-nationale.fr>

직법은 헌법과 일반 법률의 사이에 있는 법규범이다.

나.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정부가 예산과 결산을 주도하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부만이 재정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LF)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공재정에 관한 의원입법권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일괄투표로 모든 수정안을 토론 없이 의회의 표결에 회부할 수 있어 정부는 의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지속적인 재정적자 속에 공공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1년 8월 의회 주도로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o.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이 제정되어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LOLF는 국가 예산의 준비, 표결 및 집행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1959년 1월 2일 조직 정령(ordonnance organique du 2 janvier 1959)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고 국가의 새로운 재정구조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 4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LOLF의 목적은 보다 정교한 재정성과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예산을 통제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다. LOLF는 성과주의, 예산계획 및 예산체계 개편, 다년도 지출한도 설정 등으로 공공재정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보장하고 있다. LOLF는 <표 12>와 같이 6개장 68개조로 구성된다.

〈표 12〉 LOLF 구성

| |
|--|
| 제1장 재정법(Lois de finances) |
| 제2장 국가의 자원과 부담(Ressources et des charges de l'Etat) |
| 제1절 예산 자원과 부담(Ressources et des charges budgétaires) |
| 제2절 예산 승인의 성격과 범위(De la nature et de la portée des autorisations budgétaires) |
| 제3절 수입의 할당(Affectations de recettes) |
| 제4절 국고의 자원과 부담(Ressources et des charges de trésorerie) |
| 제5절 국가의 회계(Comptes de l'Etat) |
| 제3장 재정법의 내용과 제출(Du contenu et de la présentation des lois de finances) |
| 제1절 진실성의 원칙(Du principe de sincérité) |
| 제2절 재정법의 규정(Dispositions des lois de finances) |
| 제4장 재정법안의 심의와 표결(De l'examen et du vote d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
| 제1절 각 연도 재정법안과 수정재정법안(Du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l'année et d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
| 제2절 결산법안(Du projet de loi de règlement) |
| 제3절 공통 규정(Dispositions communes) |
| 제5장 재정에 관한 정보와 통제(De l'information et du contrôle sur les finances) |
| 제1절 정보(De l'information) |
| 제2절 통제(Du contrôle) |
| 제6장 조직법의 발효와 적용(Entrée en vigueur et application de la loi organique) |

자료: LOI organique no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http://www.economie.gouv.fr/>

다. 재정법(Lois de finances)

프랑스는 매년 재정법을 제정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재정법은 헌법 제47조와 LOLF에 의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근거해 제정되며, 국가의 자원과 부담의 성격, 총액, 자원과 부담의 직접적 연계, 과세표준, 세율, 징수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다. 또한 재정법은 국가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회의 감독, 회계담당자의 책임 등도 규정하고 있다. 재정법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종의 행정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을 묘사하는 회계의 총합이다. 재정법의 내용은 재정에 관한 규정에만 한정되며 일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재정법과 LOLF 등은 보통법들이지만 특별투표의 절차를 거쳐 채택된다. 재정법에는 초기재정법(Loi de finances initiale, LFI), 수정재정법(Lois de finances rectificatives, LFR), 결산법(Loi de règlement, LR) 및 운용보고서(Rapport de gestion) 등이 있다.

초기재정법은 매 회기연도에 국가의 재원과 부담 전체를 예측하고 허용하는 법이다.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은 의회에 의해 심의되며 제출 후 최대 70일 이내에 의회의 표결에 붙여진다. 의회에 의한 재정법안의 채택 후 초기재정법이 공포된다. 초기재정법은 정부의 지출행위와 수입과의 재정균형 상태를 규정하고 징세를 허용하며, 재정균형을 보장하는 방법과 수단을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인건비 지출의 제한한도를 정한다. 초기재정법은 서론과 2개의 본문으로 구성된다. 서론에서는 계획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소개한다. 1부에서는 지출을 위한 세금의 징수를 허용하면서 재정균형의 일반적 조건으로 수입을 다룬다. 재정수단의 총체를 열거하고 각 지출범위마다 상한을 결정하는 균형조항에서 예산의 일반적인 균형조건을 정한다. 2부는 지출을 다루며 1부를 채택하기 전에 토론될 수 없다. 2부는 공공정책의 수단 및 특별 조치들과 관련된 부처들의 재정수단의 총체이다. 초기재정법은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의 인건비 지출의 총량제한, 투입승인(autorisation d'engagement, AE),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일반예산에 있어서 부속예산과 특별회계, 사업이나 보조금의 예산총량 등을 정한다.²¹⁾

수정재정법은 당해연도의 초기재정법에 규정된 조치들이 집행되는 가운데 수정되는 예산의 변경을 위해 연중 부정기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출되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추가경정 예산이다.²²⁾ 수정재정법은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수정재정법은 회계연도 말의 보완법으로 지출총량을 규정에 맞추고 초기재정법의 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출을 개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수정재정법들은 초기재정법의 집행 조건을 수정하거나 경제정책 및 예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반영하여 경기순환에 예산정책이 적용되도록 일반적으로 회기 동안에 의회에 제출된다. LOLF 제35조는 초기재정법의 내용 및 구조와 매우 유사하게 수정재정법의 내용과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수정재정법만이 재정법의 의무적·배타적 영역의 조항들을 변경할 수 있다. 수정재정법은 매년 하나 혹은 다수가 채택되며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의 재정법과 동일한 형태로 제출된다. 수정재정법을 제출할 때에는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경제적 상황과 예산 상태의 진전에 대한 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21) 투입승인은 예산의 틀 내에서 법적으로 하나의 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투입승인 총액은 당해연도에 승인된 지출의 최고한도이다. 지불예산은 투입승인 총액 내에서 회계연도에 합의된 투입 가능한 최대 지출규모이다.

22) 과거에 수정예산안은 예산적 집합(collectifs budgétaires)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collectifs budgétaires는 지금도 수정재정법을 의미하여 사용된다.

결산법과 운용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의 결정된 총량을 결산하는 재정법이며 수입과 지출로 인해 초래된 예산집행의 결과도 결산한다. 결산법은 국가의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법률로 예산 집행 다음해 6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산법은 회계연도 말에 정부가 집행내역과 목표, 달성내역 등을 적시하여 의회에 의한 사후적 통제를 받기 위한 것이다. 결산법에 따라 매년 재정운용의 결과를 확정하고 발생한 집행결과는 재정법에 포함되며 수정재정법에서 수정된 예산과의 차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결산법의 내용과 구조는 LOLF의 제37조와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다. 결산법에 첨부되는 연간성과보고서(Rapport annuel de performances, RAP)는 사업별로 회계연도의 재정법들에 의한 예측과의 차이를 밝히고 성과 및 입증된 지출과 고용의 관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연간성과보고서를 통해 예산의 예측과 집행, 목표에 대한 약속과 확증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연간성과보고서의 구조 및 형식은 연간성과계획(Projet annuel de performances, PAP)과 동일하다.

라. 사회보장재원조달법(Loi du financement de sécurité sociale)

프랑스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GDP의 30% 이상을 사회보장지출에 투자하고 있다. 1945년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시스템은 사회적 파트너인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대표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체제는 질병, 모성, 장애, 사망, 노동재해, 직업병, 노년과 가족 등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근로자, 학생, 특정 수당 수혜자 및 거주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재원인 사회보험기여금과 수당의 지급은 사회보장재원조달법(Loi du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에 근거해 매년 의회에서 결정된다. 원래 사회보장예산은 국가의 사회적 예산으로 재정법 추록의 형태로 의회에 통보되었고 의회에서 별도의 표결이나 의결 대상이 아니었다. 사회보장예산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하면서 1996년 2월 22일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이 도입되어 재정법과는 별도의 법으로 사회보장예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현행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2005년 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대한 조직법(Loi organique du 2 août 2005 relative aux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Projet de LFSS, PLFSS)은 재정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의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보장재원조달법으로 공포된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경제적 가정은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정부회의 및 경제·사회·재정보고서 등 재정법안의 정부 내 심의 시에 고려되는 다양한 예측보고서에 근거한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인 의무체제(régimes obligatoires)와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의 항목별 수입 예측, 지출목적 및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금들의 내용을 규정한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매년 체제들과 기금들의 균형표(tableaux d'équilibre)를 포함한다.²³⁾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국가의료보험지출목표(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 및 하위목표를 정하고 기초의무체제의 부채경감 담당 기관의 익년도의 경감목표를 결정하며 범주별 담당 기관의 예산을 할당한다. 또한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사회보험 기여금 및 분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조치와 관련된 계수조정의 총액을 승인한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기초의무체제에 계상되지 않은 사회보험 기여금의 감면 및 면제 조치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유일하게 사회보험 기여금의 면제수단의 국가에 의한 비청산(non-compensation)을 승인할 수 있다. 의회는 지출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출목표 속에 포함된 하나 또는 다수의 하위목표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은 4부분으로 구성된다. 일종의 결산법에 해당하는 제1부는 종결된 회계연도의 확정된 균형수지표로 구성되며 실제로 확인된 재정활동을 인준하는 것이다. 제2부는 현재 회계연도와 관련된 규정들로 구성되며 정부는 의회에 현재 회계연도를 위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입 및 일반균형과 관련된 부분과 지출과 관련된 부분 등 2개의 하부분야로 구성된다. 제3부와 제4부는 다음 연도를 위하여 수입과 일반적 균형을 다루면서 지출 목표 특히 ONDAM을 다룬다. 제3부는 n연도를 위해 해당 체제의 재원조달 협력 기관들, 사회보장 기초의무체제의 일반균형과 수입 예측 등을 설정한다. 그리고 n연도와 관련된 균형표(수입, 지출, 잔고), 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국고의 사전적 한도를 결정한다. 제4부는 질병, 산재, 직업병, 노년, 가족 등 사회보장의 다양한 분야의 지출목표를 정한다. 또한 ONDAM의 국가 목표와 하부 목표들을 채택한다. 사회보장법(code de la securite sociale)은 각 체제와 사회보장기관들의 회계는 적법하고(réguliers) 진실되며(sincères), 자산과 재정적 상황에 대해 충실한 이미지를 주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늦어도 10월 15일까지나 그 날에 국회가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개최 시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23) 2005년 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대한 조직법은 균형표를 도입하였으며 이 표는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표들은 각 회계연도의 일반체제, 모든 기초의무체제, 재원조달에 협력하는 기관 등 분야별 재정적 상황을 보여준다.

마. 공공재정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다년도 재정은 예산 단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프랑스는 EU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다년간 재정계획을 법제화하였다.²⁴⁾ 공공재정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LPFP)은 공공재정의 다년도 방향을 정하고 공공회계의 균형목표를 규정한다. 2009년 이래 2009~2012년과 2011~2014년 2개의 공공재정계획법이 채택되었다. 2009년 초기재정법에 다년도 공공재정계획이 공공재정의 균형목표에 첨부되었으며 의회는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LOI n°2009-135 du 9 février 2009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09 à 2012)’을 채택하였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지출 부문별 한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미리 정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법은 공공재정계획법에서 정한 지출 한도를 따라야 한다. 2009년의 다년도 재정계획법에서는 2009~2012년 정부지출의 전 부문(사회복지 포함)의 지출증가율을 연간 1.1%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동 기간 동안 정부지출의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금융위기에 대응해 집행되는 대규모의 경기부양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2010년 12월 28일에 채택된 2011~2014년 공공재정계획법(LOI n°2010-1645 du 28 décembre 2010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1 à 2014)은 5개의 절과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은 공공재정의 일반적 목표, 2절은 공공지출의 전개, 3절은 공공수입의 전개, 4절은 특정 공공기관의 부채 제한, 5절은 계획의 실행 등이다. 2011년 재정법과 2011~2014년 중기계획은 중앙정부, 사회보장, 일부 지방정부의 지출통제와 수입확대를 주요 기조로 하고 공무원연금 및 채무상환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 증가율은 0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2014년 공공재정계획법의 부록으로 첨부된 보고서(Rapport sur la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1 à 2014)의 목차는 <표 13>과 같다.

24) 다년간 예산제도는 2008년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개선프로젝트(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RGPP)’에 근거한 3개년 계획이 있었지만 2008년 헌법 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RGPP는 사회 전체의 부문별 개혁을 목적으로 재정,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 업무는 물론 각 조직의 역할, 실적,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해 공공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지출을 검토한다. 총공무원수 감축을 목표로 공무원 자연감소(퇴직자) 중 일부분만 충원하여 300억유로를 절감하고 행정비용 절감으로 200억유로 절약, 지방정부 중복 기능 검토 및 축소 등을 추진하였다.

〈표 13〉 2011~2014년 공공재정계획법 부록 목차

| |
|---|
| I. 거시경제적 배경과 총 전략 |
| A. 거시경제적 가정 |
| B. 공공재정전략 |
| C. 공공재정의 경로 |
| D. 지출과 수입의 거버넌스 준칙 |
| II. 국가의 지출과 수입 계획 |
| A. 국가의 지출계획 |
| B. 수입의 전개 |
| C. 국가의 잔고 |
| III. 국가의 다년간 예산 제출 |
| A. 다년간 예산의 포함 범위 |
| B. 다년간 예산승인의 성격과 범위 |
| C. 3년간 예산 운용 준칙 |
| D. 국가 예산의 주요 항목별 개혁 |
| IV. ODAC(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
| A. 경로 |
| B. 국가의 집행자(opérateurs de l'Etat)의 지출에 대한 최선의 관리를 위한 통합적 개혁 ²⁵⁾ |
| C. ODAC 부채 한도 |
| V. 사회보장행정 |
| A. 경로 |
| B. 사회적 회계의 점진적 재건을 위한 구조적 조치 |
| C. 사회적 재정의 운영수단의 강화 |
| D. 지출통제 및 부정행위대책과 관련한 사회보장기관의 강한 의무 |
| E. 사회적 부채문제에 대한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대응 |
| VI. 지방공공행정 |
| A. 하부섹터 공공재정의 경로 |
| B. 지역의 지출 통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기여 |

25) 국가의 집행자(operateur de l'Etat)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국가와는 다른 공적, 사적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560개 기관이 국가의 집행자에 해당된다. 집행자들은 법인을 부여받고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고 주로 비상품적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에 기여한다. 대학, 프랑스 기상청, CNRS, Iserm 등 공공기관도 국가의 집행자에 속한다.

2. 재정 관련 조직

가. 경제·재정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관련 조직

경제·재정부는 경제, 재정, 소비 및 부정행위의 억제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한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재정분야에서 공공회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년간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회계와 국유재산관리, 재정, 조세, 관세 및 경제재정부와 관련된 분야의 부처들과 공동으로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경제재정부는 내무부 및 국가개혁·분권화·공무원부와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준칙의 협의 및 시행, 사회적 문제·보건부 및 노동·고용·직업교육·사회적 대화부와는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의 준비와 집행을 협의한다.

1) 예산국(Direction du Budget, DB)

예산국은 공공재정정책, 국가예산정책의 정의, 재정법 수립, 국가예산 집행의 운영, 재정 통제 등을 책임지는 행정당국들의 조정, 공공기관들의 감독 등 국가 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예산국의 주요 임무는 7가지로 규정된다(<http://www.vie-publique.gouv.fr>). 첫째,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공공정책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 계획에 반영되는 공공정책의 전반적 전략을 제안하고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통계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연간 예산이 장기계획에 반영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넷째, 매 회계연도의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성과의 관점에서 결정된 목표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다섯째, 공동의 예산 수립과 다년간 예산 방침 결정에 참여한다. 여섯째, 예산의 원칙과 수단들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에 대한 전략적이고 재정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2) 공공재정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

공공재정과 관련되어 핵심적인 업무는 2008년 4월 4일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재정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이 담당한다. DGFIP는 이전의 조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과 공공회계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tabilité publique)을 통합시킨 조직이다. DGFIP 설립의 주요 목표는 국토 전체에 단일한 재정청

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조세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DGFIP는 서비스간의 보완성을 활용하여 탈세를 억제하고 모든 공공수입의 징수를 개선하면서 국가 서비스의 성과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청에는 13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DGFIP는 지점망 및 수단 운영 담당국(Direction chargée du pilotage du réseau et des moyens), 공공관리담당국(Direction chargée de la gestion publique), 조세국(Direction chargée de la fiscalité) 등 3개의 국을 가지고 있다. DGFIP의 주요 임무는 세금 결정, 세금 신고관리, 토지자산 조사와 부동산 관련 증서 보존, 공공수입 징수, 공공지출 통제와 집행, 예산 및 회계 정보 생산, 전문가적 감정 및 재정적 조언의 제공, 국고 기금예치 등이다.

재정 및 조세와 관련해서 DGFIP는 세제 및 그의 적용에 필요한 해설적이고 일반적인 지침과 법적이고 규제적인 텍스트 마련, 지적부와 부동산 광고 등과 관련된 법적이고 규제적인 텍스트 구상 등을 한다. DGFIP는 과세기관 등의 관련 행정업무들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감시하며 세금, 분담금 등 공공수입의 징수 등 모든 성격의 조세를 감독한다. 조세와 관련해서 DGFIP는 국제협상에서 부처를 대표하며 조세협정의 요구를 심리한다.

공공관리의 측면에서 DGFIP는 국가회계의 생산과 질을 통제한다. 또한 DGFIP는 공공지출의 통제 및 지불·국가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지방교육공공단체 등의 재정적·회계적 관리에 대한 준칙과 절차를 만들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예산 및 회계 통제국(Services du contrôle budgétaire et comptable)

예산 및 회계 통제국은 부처별 지출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관점을 가진 유일한 책임자이다. 각 부처 내에는 2005년 11월 18일의 시행령에 따라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상황과 지출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의 예산 및 회계통제관(contrôleur budgétaire et comptable ministériel, CBCM)이 있다. 부처의 예산 및 회계통제관은 부처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공공회계원이며 예산당국에 그리고 주요 지불명령자(ordonnateur)에게 예산집행과 부처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연간분석보고서를 전달한다. CBCM은 예산에 대해 사후적 통제를 도입하고 절차를 평가한다. 사후적 통제를 통해 관리자(gestionnaire)들은 예산처리와 실제적인 계획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절차에 대한 평가는 관리자들이 담당하는 서비스의 조직화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예산 및 회계통제관의 조사영역을 한정시켜 관리자에 대한 통제 자체가 준칙이 되는 시스템이 아닌 법적 통제가 예외적으로만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자율성을 높인다.

4) 프로그램 회계감사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el d'audit des programmes, CIAP)

프랑스 정부는 LOLF의 규정 및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 프로그램의 품질을 감사하기 위하여 CIAP를 만들었다. 프로그램의 회계감사는 연간성과계획(PAP), 연간성과보고서(RAP) 및 서비스관리를 통해 시행된다. CIAP는 2003년 가을에 시작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PAP와 RAP에 명시된 목표와 성과지표들의 측정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감사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과지표 측정의 적합성, 지표의 생산과 내부통제 측정 등 생산된 정보들의 양적·질적 수준과 이용된 정보처리 방법의 신뢰성, 서비스와 정책 운영에 있어서 성과 측정결과의 활용 정도 등을 검토한다.

CIAP를 구성하는 18명은 각자 적어도 국가 예산의 한 가지 미션을 가지는 부처인 예산부처들을 대표한다.²⁶⁾ CIAP는 예산을 책임지는 부처에 의해 임명된 재정총감(inspecteur général des finances)이 주재한다. CIAP는 감사를 위한 자체 수단은 없으며 임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3달이며 감사관들이 참여한다. 각 미션마다 3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부처간 하나의 팀이 작업을 한다. 팀 성원 중 1명은 감사를 받는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부처에 속하며 이 부처는 미션의 조정자이다. 2명의 공동팀원은 다른 부처에 속한다. 각 팀은 LOLF의 시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서를 제출하고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만든다. 감사보고서와 관련 부처들의 답변에 기초하여 CIAP는 각 감사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표명한다. 감사 결과인 감사관보고서, 부처의 답변, 위원회 의견 등의 문서는 관련 부처들과 회계감사원, 하원과 상원의 재정위원회에만 배포된다. CIAP의 유일한 공개 발간물은 과거의 감사에서 발췌된 교훈들을 소개하는 연간활동보고서이다. 2012년의 PLF에서 시행되는 147개 미션들은 일반예산 프로그램은 적어도 75%가 한 번의 감사를 받고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29%가 감사를 받는다. 2010~2011년의 8번째 감사회기(2010년 10월~2011년 9월) 동안 83개 목표와 175개 지표를 대표하는 19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었다.

26) LOLF에 따라 하나의 미션(mission)은 하나의 공공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프로그램(programme)의 총체이다. 정부 주도의 재정법만이 하나의 미션을 만들 수 있고 각각의 미션들은 예산지출 표결 단위이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액션(action) 혹은 동일한 부처의 일관된 총체적인 활동들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된 지출을 통합한 것이다. 프로그램들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분명하고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가져야 하며 사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각 프로그램에는 한 명의 책임자가 지명된다. 액션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이다. 액션은 이용자들이나 수혜자인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거나 행정 개입의 특별한 양식을 목표로 하는 지출들을 총합한 것이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액션들 간의 지출배분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액션의 목표가 프로그램에 연계된 다른 액션들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면 상호 연계될 수 있다.

나. 부처별 내부 조직

1) 프로그램 책임자와 프로그램 운용예산 책임자

(Responsables de programme et les responsables de budgets opérationnels de programme)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장관들은 프로그램의 집행자들을 지명한다.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앙행정의 국장급이나 총괄사무총장이다. 프로그램 운용예산(Budgets opérationnels de programme, BOP)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램 지출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²⁷⁾ 프로그램 책임자는 관련 장관의 권한하에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 연간성과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책임지며, 장관에게 달성된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한다. 프로그램 책임자의 주요 임무는 프로그램의 예산과 전략의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협의의 조직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고와 책임성 등 3가지이다. LOLF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인건비 지출의 고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 보고한다는 조건하에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지출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편성할 수 있다. 국가 일반예산에는 약 80명의 프로그램 책임자가 있고, 프로그램 책임자의 94%는 국가관할서비스의 총사무국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국장이며, 60%가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책임지고 있다. BOP 책임자는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BOP 책임자는 자유롭게 포괄적인 예산을 관리하지만 달성목표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BOP에서 정해진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 단위 사이에 예산이 배분된다. BOP 책임자는 예산의 집행과정 및 종료 후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BOP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BOP의 기여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 재정업무국장(Directeurs des affaires financières, DAF)

재정업무국장(DAF)은 프로그램 책임자들과 함께 예산분야에서의 결정과 중재를 준비한다. DAF는 재정운영을 위한 부처별 원칙과 재원이용을 결정한다. 부처 내에서 비용분석을 하고 프로그램 책임자들의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조정하고 확정하며 내부통제와 감시를 조직하는 것도 DAF의 임무이다. DAF는 자문, 전문가, 조언 등의 역할을 하며 재정통

27) BO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VI.장을 참조하라.

제당국과 부처 회계부서 간의 교섭 담당자이다. 국가재정국장단(Collège des directeurs financiers de l'État)은 부처의 재정업무국장간 합의를 위한 수단이다. 매달 상이한 부처의 예산과 재정 관련 담당국장들이 예산국에 모여 공공재정과 공공정책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예산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다. 국가재정국장단 회의에서는 각 부처들이 거시경제 상황과 총체적인 예산전략에 대해 상호정보를 얻고 성과와 관련된 특정 부처의 좋은 사례도 교환한다.

다. 의회

프랑스는 수상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지만,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부담의 신설 및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재정법안의 심의기간은 하원 40일, 상원 20일 이내, 10일은 상·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활동 등에 소요되어 총 7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예산심의회는 상원과 하원에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만약 70일 내에 양원이 단일한 재정법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당해 예산안을 정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양원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하원의 의견이 헌법에 따라 우월하다.

정부에 의해 수립된 예산안은 재정법안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되고 먼저 하원에서 검토되어 수정되고 하원에서 1차 독회 때 채택된 후 상원에 제출된다. 예산심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상하원에 재정위원회(commission des finances) 등 8개가 설치되어 있다. 재정위원회는 예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권한을 가진다. 재정법안은 재정위원회에 회부되고 7개의 위원회는 재정위원회에서 보내 온 재정법안을 검토한다. 7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1인의 총괄보고위원(rapporteur général)과 45인의 분야별 특별보고위원(rapporteurs speciaux)을 선출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법안 검토에 약 50시간을 투여하고 7개의 상임위원회는 미션의 전체 혹은 부분을 검토할 의무를 가지는 보고자들을 분야별로 지명한다. 총괄보고위원은 재정법안 심사에 대한 총괄, 조정 등의 총괄심사보고를 전담하고 특별보고위원은 부처별, 사업별 세출예산 중 각각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주도한다. 특별보고위원은 항시적으로 해당 분야의 예산집행을 통제한다. 매년 예산에 대한 60여 개의 견해(avis)가 출간된다.

재정위원회의 총괄보고서는 3권으로 구성된다. I권은 경제적·재정적 배경하에 예산에 대한 전반적 분석, II권은 재정법안 1부에 대한 평가 및 해당 회계연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재정적 수단에 대한 평가, III권은 재정법안 2부의 미션에 연결되지 않

은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연도의 예산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정적 혹은 예산적 규정을 고찰한다. 재정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특별보고위원은 소관사항의 예산에 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특별보고위원은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7월 10일 이전에 정부로 보내고 정부는 늦어도 10월 10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특별보고위원은 하나의 미션 또는 하나의 미션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출을 검토한다.

미션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초로 재정위원회는 예산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보고위원의 보고를 받고 심사한다. 부처별 심사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특별보고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안 심사, 관계 장관에 대한 청문회 등을 거쳐 10월말경 총괄보고위원의 주관하에 위원회의 최종심사보고서를 작성, 의결한다. 다른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소관부처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1인 또는 수인의 위원을 임명하여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 심사 시 임명된 위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하원 본회의에서 재정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심의절차도 하원과 비슷하다. 심의기간이 하원보다 짧기 때문에 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정법안이 이송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며 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결 내용이 달라 재심의를 해도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수상의 요구에 의해 양원합동위원회가 소집된다. 양원합동위원회는 양원에서 7명씩을 임명하여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재정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상하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양원합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거나 조정안이 양원에서 각각 1회에 한해 심의를 거친 후 정부는 하원에 최종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원은 양원합동위원회 또는 하원의 최종의결안을 채택할 수 있다.

라.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회계감사원은 1876년에 창설되었으며 국가재정에 관한 사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법원 형태의 회계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정부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보좌, 재정법의 실행과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적용에 대한 통제,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 시민들에게 공적 보고서를 통한 정보전달,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한다.

2002년 이래 회계감사원은 상하원 의장과 의회의 재정위원회 총괄보고위원의 지원 요

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재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계감사원은 해당 문제를 조사하거나 특정 공공정책의 평가서를 작성하며, 8달 내에 결론을 만들고 모든 조사를 요구에 맞추어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공공법인 및 준법인들(공공기관)의 경영 상태에 대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상하원의 의장단에 제출한다. 회계감사원은 국가회계와 사회보장 일반체제 분야와 결합된 회계와 징세, 일반체제 국가기관들의 회계 등의 적법성(régularité), 진실성(sincérité), 충실성(fidélité) 등을 입증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명백한 비적법성이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재정 및 예산재판소(Cour de discipline budgétaire et financière)에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원은 국가회계와 공공지출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회계감사원은 상원과 하원의 예산심사를 위해 다양한 보고서들을 제출한다. 공공재정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는 과거 집행의 결과에 대한 사전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는 이전 회계연도의 결과와 예산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의회에 설명을 하기 위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정부가 국회에 결산법을 제출할 때에는 첨부 서류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연간 보고서는 의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의 회계에 대한 통제관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관이나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회계감사원(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이 회계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회계감사원은 지방회계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항소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명은 대통령, 3명은 상원의장, 3명은 하원의장이 각각 지명한다. 최소한 60명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요청하면 재정법의 합헌성(constitutionnalité)을 평가한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일단 결정되어야만 재정법은 공포될 수 있다. 예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대체로 재정법의 관할과 진실성 원리(principe de sincérité)와 관련되었다. 즉 재정법에 없는 규정과 재정법으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예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표현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5년 LOLF의 헌법과의 일치성에 대해 판결했다.

바. 국가평의회(Conseil d'État)

국가평의회는 최고 행정심판관이자 사법적, 규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자문기구이다. 국가평의회는 정부에 대한 조언자로 법안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매년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 입법적, 규제적 또는 행정적 개혁에 대해 제안하는 공개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평의회는 300명의 위원과 39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3분의 2는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하고 법률과 행정을 심판하며 행정재판을 관리한다. 나머지 3분의 1의 위원들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의 감독 등에 파견되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 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국가평의회는 국가평의회 부의장(Vice-président du Conseil d'État)이 주관한다. 부의장이란 명칭은 과거 대통령이나 정치당국에 의해 국가평의회가 주재되던 시대의 오래된 산물이다.

정부가 재정법안이나 수정재정법안에 삽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조문들은 법적인 정확성과 올바른 기안 확인을 위해 국가평의회에 사전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각 조문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고위원으로 지정된 국가평의회에 의원에 의해 분석·검토되며 보고위원은 관련된 부처나 정부위원(Commissaires du gouvernement)과 같이 조문을 검토한다. 2번째 단계는 협의체적 검토로 재정부(Section des finances)와 국가평의회 총회(Assemblée générale du Conseil d'État)가 2번에 걸쳐 검토한다. 정부에 의해 재정법안의 조문이 늦게 전달되어 제출 지연이 되면 국가평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단계로 검토된다. 국가평의회 의견이 정부에 의해 제안된 조문의 텍스트와 다를 경우 정부는 그의 초기 서술을 유지해도 되지만 실제로 정부는 국가평의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다.

사. 국고청(Agence France Trésor, AFI)

국고청은 정부의 현금수요의 관리 및 전망, 국가채무의 운영관리, 위험관리 및 통제와 재정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고청은 2001년 2월 8일에 설립되어 매우 엄격하게 정의된 임무를 수행하며 국고국(direction du Trésor)이나 경제, 재정 및 대외통상부처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국고청의 임무는 국고의 예측과 관리, 국가채무전략의 정의, 국가채무의 운용 관리, 리스크 통제·관리 및 후선지원업무(back office), 거시경제적·재정적 분석, 정보와 DB 구축, 국제협력활동 등이다.

3. 예산구성과 범위

가. 예산구성

프랑스는 예산이 법률(loi)의 형식을 가지며 예산 관련 법들은 예산 관련 행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예산(budget de l'État)은 의회에 의해 표결되는 서류의 총체로서 정의될 수 있다(<http://www.vie-publique.fr>).²⁸⁾ 국가예산은 제출과 표결이라는 구체적인 준칙을 따른다.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표시한다. 예산은 일반예산(budget général), 부속예산(budget annexes), 특별회계(comptes spéciaux)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예산은 총액과 환급액의 차액인 순액, 부속예산은 항공통제와 경영(Contrôle et exploitation aériens), 공공출판과 행정정보(Publications officielles et information administrative) 등이다. 특별회계에는 특별할당회계(comptes d'affectation spéciale, CAS), 상업회계(comptes de commerce), 통화운영회계(comptes d'opérations monétaires)와 재정협력회계(comptes de concours financiers) 등이 있다. 부속예산과 특별회계는 하나의 지출에는 하나의 수입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예산할당 원칙의 예외이다.

재정법은 하나의 부속예산을 만들어 수입을 할당할 수 있다. 부속예산은 경제적, 상업적 활동을 반영한 특별한 운용준칙을 가지며 경상거래(opérations courantes)부문과 자본거래(opérations en capital)부문을 가진다. 부속예산은 재정법에 의해 승인된 총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된다. 예산이 부여된 회계는 프로그램별로 제출되고 일반예산의 회계처럼 관리된다. 부속예산은 투입승인과 지불예산이 허용되고 프로그램별로 분류되어 제출되며 각 회계는 분리되어 의회에서 표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미션과 유사하다. 부속예산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균형이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간에 확정된 잉여수입은 채무청산에 할당되어야 한다.

특별회계의 특별할당회계는 특별히 중요한 재정(연금, 국가의 재정적 지원 참여 등) 또는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특정 부문(여객교통협정 국가서비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28) '예산'이란 용어는 프랑스에서 19세기 초반에 나타나지만 14세기에는 1년을 단위로 예정된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재정의 일반현황(état général des finances)'이 운용되었다. 16~17세기에는 왕에게 지출과 수입계획이 제안되고 연말에는 실제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결과가 제출되었다. 1665년부터 매년 재정총감독관이 모든 회계관들에게 재정상태를 기록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1794년 9월 5일의 시행령에 따라 국가, 데파르트망과 꼬뮌의 지출과 수입을 구분하였다. 프랑스 왕정복고(Restoration)시대부터 한 회계연도가 달성되면 매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재정법이 채택되었다. 지방예산은 1892년 국가예산으로부터 분리되었다(<http://www.vie-publique.fr>).

에 대한 지출 등) 등을 포괄한다. 상업회계는 국가서비스에 의해 부수적인 형태로 실행되는 산업적 혹은 상업적 성격의 운영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국가 부채와 국고 관리 운영, 군대에 대한 석유제품 보급 또는 형벌적 범위에서 수감자 식당과 근로, 교도소의 산업적 관리 등이 해당된다. 통화운영회계는 금속화폐 발행회계와 국제통화기금(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FMI) 등의 운영회계를 포함한다. 재정협력회계는 국가에 의해 실현된 용자운영을 서술하는 용자회계로 상업정책이나 개발원조정책의 범위에서 실현된 외국에 대한 용자, 지방자치단체, 기구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대부금회계 등이다. LOLF는 특별할당회계의 경우 국가의 연금 부담, 국가의 재정적 지분 참여에는 민영화 수입, 국가 부채와 국고 관리의 상업회계 등 3개의 회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서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예산 범주

LOLF에 따라 프랑스의 예산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출을 용도별과 지출성격별(인력, 운영, 투자, 지원 등)로 소개한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부담은 지출성격별로 7개의 목(titre)으로 구분되고 각 목은 범주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범주별 구분은 한도가 정해지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참고적인(indicative) 성격을 가진다. 국가의 목별 예산 부담 구조는 <표 14>와 같다.

〈표 14〉 목별 국가예산부담

| 구분 | 국가예산부담 |
|---------------|--|
| 목 1: 공공기관 보조금 | |
| 목 2: 인건비 지출 | -급여 -사회적 부담금과 기여금 -사회적 급여와 각종 수당 |
| 목 3: 운영비 지출 | -인건비 외 운영비 지출 -공공서비스 부담을 위한 보조금 |
| 목 4: 국가채무 부담 | -양도성 국채 이자 -비양도성부채 이자 -기타 재정 부담금 |
| 목 5: 투자지출 | -국가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국가의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 |
| 목 6: 이전지출 | -가계에 대한 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기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보증인 공소 |
| 목 7: 재정운용지출 | -차입금 및 선급금 -고유 기금에 대한 보조 -출자 |

출처: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2012)

각 프로그램은 인건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비대칭적 대체가능성(fongibilité asymétrique)을 가진다.²⁹⁾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목별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액션 예산을 다른 액션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29) 대체가능성(fongibilité)은 관리자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가능성은 이른바 비대칭적(asymétrique)인데 이는 인건비 예산이 다른 성질의 지출(경영, 중재, 투자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5] 프로그램 예산지출의 대체가능성

| 프로그램 × | 지출유형별 | | | |
|--------|-----------|-----------|----------|----------|
| | 목2 인건비 | 목3 운영 | 목5 투자 | 목6 지원 |
| 액션 1 | | | | |
| 액션 2 | | | | |
| 액션 3 | | | | |
| ... | | | | |
| ... | | ← 대체가능성 → | | |
| 액션 n | | ← × → | | |

자료: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2010)

다. 예산구성의 원칙

프랑스 예산구성의 원칙은 단년주의(annualité), 단일성(unité), 보편성(universalité), 특정성(spécialité), 균형성(équilibre), 진실성(sincérité) 등이다. 예산 단년주의는 국가예산이 매년 표결되고 매년 징세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며 단년주의의 예외가 수정예산이다. 공권력은 공공재정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예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의 중·장기적 재정적 결과를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년주의 원리는 예산의 연속성과 국가기능의 유연성을 위해 조정된다. 예산집행의 계속성 원리에 따라 지출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LOLF에 따라 투입승인이 된 투자지출은 다년간 지출이 가능하며, 다년간 지출은 초기에는 프로그램의 승인에만 허용되었지만 국가의 모든 지출로 확장되었다.

단일성 원칙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단일한 일반회계로 통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단일주의라고 불린다. 세입, 세출을 단일 문서에 기입하는 단일성 원리는 보편성 원칙과 함께 재정법의 기본원칙으로 평가된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부속예산, 특별회계 등이다. 단일성 원칙은 단일성 준칙(règle de l'unité)과 철저성 준칙

(règle de l'exhaustivité)이라는 2개의 준칙에 기초한다. 단일성 준칙은 국가예산이 단일한 서류인 재정법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의회가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재정법이 핵심적인 서류이지만 매우 많은 부속보고서가 수반되어 재정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철저성 준칙은 재정법을 통해서만 국가의 재원과 부담 전체를 예측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저성 준칙은 종종 불완전한 형태로 준수되는데,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débudgétisation) 특정한 기금을 만들어 국가 예산의 일정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보편성 원칙은 국가의 총지출을 국가의 총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편성 원칙은 비상쇄준칙(règle de non-compensation)과 비할당준칙(règle de non-affectation) 등 2개의 준칙에 근거한다. 비상쇄준칙은 지출과 수입의 보상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과 지출의 상쇄는 예산의 가독성과 진실성을 해치는 특정한 부담을 은폐시킨다. 비할당준칙이란 수입을 예산에 결정된 지출에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수입을 기금의 원천이 결정되지 않은 단일한 금고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당국이 연대주의(solidarité)와 국가적 통합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금의 결정과 운영 권한을 지키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부속예산과 특별할당계정이다.

특정성은 재정법에 의해 예정된 재정운영의 총액과 성격을 명백하게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록(nomenclature)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특정해야 한다. 특정성 원칙은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LOLF는 특정성 단위의 범주를 확대하여 약 850개의 챕터에서 약 150개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예산운영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균형성 원리는 경제적 균형과 재정적 균형을 모두 포함한다.

진실성 원리는 가장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2001년 재정법 개혁에서 대두되었다. LOLF가 제정되면서 예산 구성의 새로운 원리로 만든 것이다. LOLF 제32조에 규정된 예산의 진실성 원리는 민간회계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국가에 의해 제공된 재정정보의 철저함(exhaustivité), 일관성(cohérence)과 정확성(exactitude)을 의미한다. 진실성 원리는

국가회계가 적법하고 진실해야 하며 국유재산과 재정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가의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진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성 여부는 이용 가능한 정보와 이 정보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예측 가능성을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재정법 자체가 예측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실성 원리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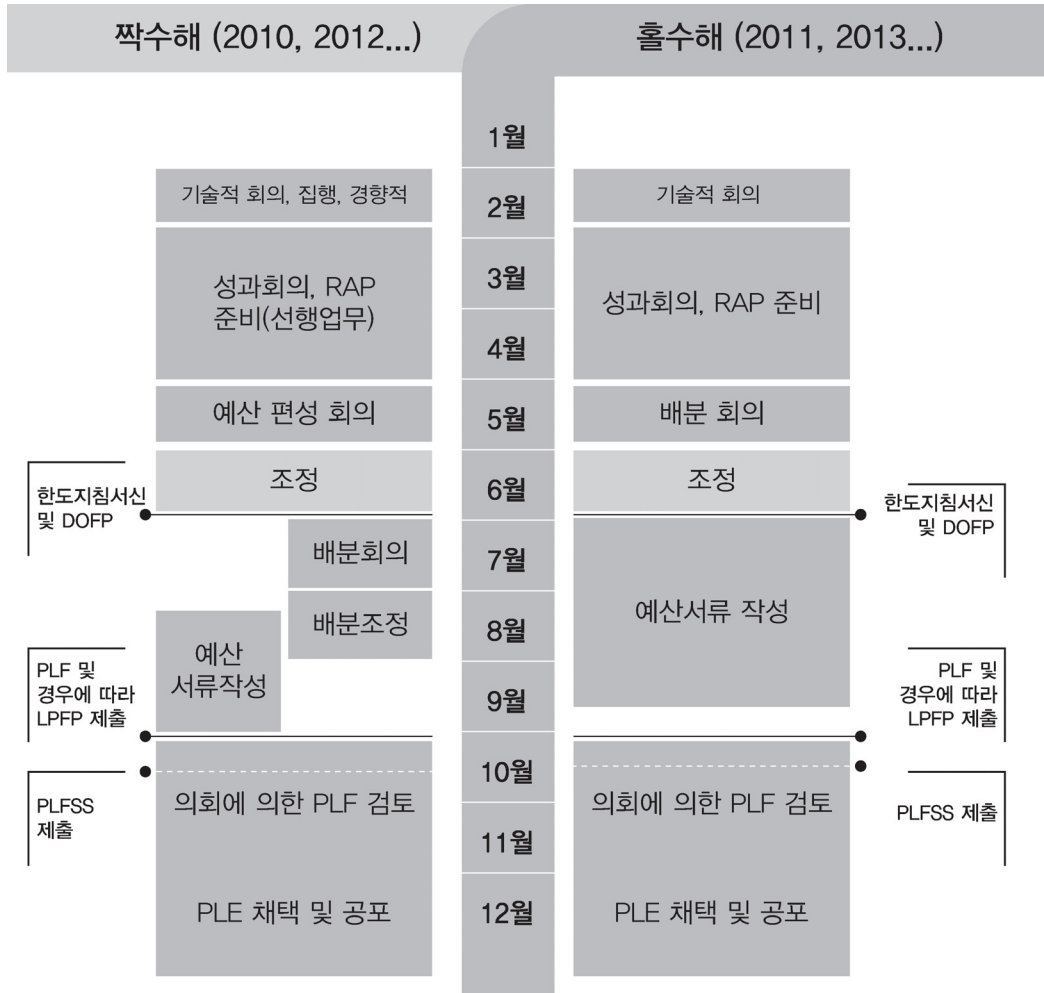
4. 예산 일정

가. 예산편성

프랑스의 예산편성은 경제재정부가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예산편성지침 초안을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매년 1월 예산국은 예산편성지침으로 1~2년에 걸친 예산초고를 작성한다. 초고는 2월 중순에 보다 상세한 형태로 작성된 후 국무회의에 제출되어 익년도 예산방침이 결정된다. 수상은 부서의 요구와 다년간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다음 연도의 사업목적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송부한다. 3~4월에는 전년도 예산의 계속집행을 위한 경비견적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 관할부서에 회람을 발송하고 전년도 예산계속집행에 필요한 경비견적을 예산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각 부처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증액조정안을 감안한 기정비를 산출하여 예산국에 제출한다. 5월경 각 부처는 경상경비의 추계규모를 확정하고 신규경비를 심의한다. 신규경비는 예산담당기관과 각 부처 예산소관부서의 예산절충 대상으로 5~6월 사이에 검토된다. 경제·재정부는 경비의 규모를 정하고 세입추계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범위와 자금조달 방안을 각 부처와 협의한다. 제1차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입 승인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 부처는 경상경비를 재검토하고 신규사업경비를 추계한다. 예산액 한도지침서신을 발송하기 전에 예산지침토론회가 개최되어 정부의 차기연도 예산수립방향이 제시된다. 조정 작업은 6월부터 시작되어 9월 정도까지 추진된다.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대한 한도 허용액이 조정·결정되면 각 부처는 그에 맞추어 명세조정을 한다. 7월 초 수상명의로 부처별, 항목별 예산액 한도지침서신(lettre plafond)이 발송되고 공공재정방향토론(DOFP)이 개최된다. 7월 중순~8월 중순 사이 예산배분회의에서 부처별 한도액과 지출에 대해 재조정하고 최종 예산 허용액을 결정하며 세입추계도 재

검토된다. 부처가 최종예산액을 작성하여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는 단계에서 예산국은 예산균형표를 작성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재정법안(PLF)과 예산균형표가 최종 확정된다. 10월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표가 완성되면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대통령의 최종확인을 거친 예산안은 재정법안의 형태로 늦어도 10월 첫째 화요일까지 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법안의 제출 시 경우에 따라 공공재정계획법(LPFP)도 같이 제출되기도 한다. 10월에서 12월까지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은 의회에서 심의·표결된 후 재정법으로 공포된다. 한편 사회보장자원조달법안(PLFSS)도 10월에 하원에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 공포된다.

[그림 6] 예산 편성 일정



자료: <http://www.economie.gouv.fr>

나. 예산 심의 및 승인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총 70일 이내로 제한되며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심의는 균형의 관점에서 재정수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먼저 승인하며 하원에서 40일, 상원에서는 하원의 결과에 따라 15~20일간 심의한다. 하원에서 의결된 경우 상원의 심의기간은 20일이지만 하원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 15일로 단축된다. 첫 번째 심

의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다시 하원에 제출한다. 두 번째 심의는 상한 한도의 관점에서 회계별 사업들에 대한 예산배분을 심의하며 일반적으로는 1주일 내에 완료된다. 의회는 총지출규모를 증가시킬 수 없지만 분야간 조정을 하거나 지출을 축소시켜 세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상·하원 각기 7인으로 구성된 양원합동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위원회는 상·하원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며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바로 하원에서 표결에 동의한 후 통과되면 바로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 반면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다시 하원에서 재검토를 하여 그 결과가 상원에 전달된다. 하원의 상정안을 상원이 거부하여 상·하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하원의 결과를 채택하여 초기예산안으로 확정하며 초기예산안은 늦어도 12월 31일까지 관보를 통해 공포되어야 한다.

의회는 예산 수정권은 세입의 증액, 세출의 삭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서신(lettres rectificatives)을 의회에 보내 수정할 수 있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조세를 징수하거나 세출을 행할 수 있는 잠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과 금액을 한정하여 1년의 12분의 1, 즉 1개월의 예산을 사업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가승인한다.

예산에 대한 표결은 일반예산의 경우 부처별 혹은 목별(titre)이 아니라 미션별로, 부속 예산과 특별할당계좌는 회계별로 이루어진다. 재원조달표(tableau de financement)의 국고수입과 부담에 대한 평가는 단일투표, 부처별 분류 및 종합표의 형태하에 제출된 고용한도 또한 단일투표를 한다. 국가 집행자의 고용한도도 표결대상이다.

다. 예산집행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재정위원회는 3개월마다 집행된 세출에 대한 상황을 각 부처로부터 보고받는다. 의회의 재정위원회는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에 대한 정보 위원회(Mission d'information sur la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를 만들었다. 또한 1999년 이후 재정위원회는 매년 다

수의 '평가 및 통제단(Missions d'évaluation et de contrôle)'을 만들어 협의체적 형태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평가 및 통제단의 목표는 공공재정의 효과를 감독하는 것이다. 상원의 재정위원회의 특별보고위원들도 갈수록 많은 수의 통제보고서(Rapports de contrôle)를 발간하고 있다.

부처의 예산집행은 2단계로 진행된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를 만들고 이를 증명해야 하며 회계적으로는 지불명령지는 지출의 특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예산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어 예산을 지출할 권한을 획득하면 관리자(gestionnaire)는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관리자의 지출은 관리자의 법적 행위(acte)이며 재정통제관(contrôleur financier)에 의해 통제된다. 지불명령자(ordonnateurs)와 출납자(comptables)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지불명령자는 지출을 결의하고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동시에 지출에 대한 지불명령이라는 행정권한을 가진다. 업무에 대한 계약 후 지불명령자는 지출을 통해 구입된 서비스가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계산한다. 지불명령자는 기금에서 지불하기 전에 명령의 적법성과 지출을 정당화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예산의 가용성을 확인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지불명령자는 지불을 중지할 수 있고 중지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출납자는 공공기금의 유지, 회계장부 작성, 세출·세입·기금의 통제기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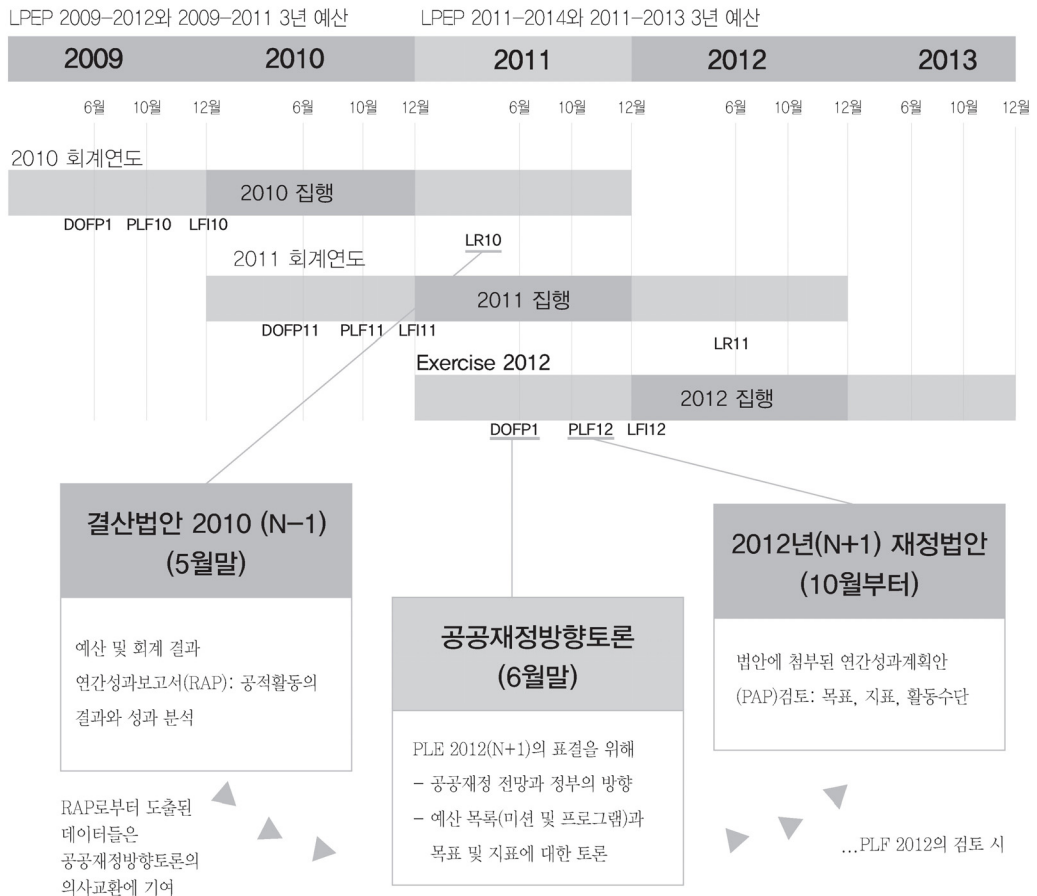
5. 결산, 감사 및 성과평가

가. 결산

프랑스 재정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결산제도의 법률주의이다. 결산법률주의는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예산을 통제하면서 집행된 후에는 결산법을 심의·승인함으로써 정부예산을 통제한다. 정부가 결산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을 사후적으로 의회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결산에 대한 심사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재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정부의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재정위원회는 총괄보고위원을 지정하며, 통상 4~5월에 시작

하여 늦어도 6월에 결산을 가결한다. 결산 심사 시에는 총괄보고위원만 임명하고 특별 보고위원은 임명하지 않는다. 회계감사원이 전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회의 재정위원회가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통제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조직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N+1년도의 결산법(LR) 토론은 N+2년도의 재정법안(PLF)과 연계된다. 결산법 토론을 통해 의회와 프로그램 책임자들은 익년도를 위한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며 이는 성과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 이러한 예산과 결산의 체계적인 연계를 LOLF 제41 조는 선사슬(chainage vertueux) 원리로 규정한다.

[그림 7] 예산과 결산의 연계: LOLF의 선사슬(chainage vertueux)



자료: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2012)

나. 감사

정부 예산의 감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회계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다. LOLF에 따라 의회가 국가회계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회계감사원의 역할은 확대되었다. 회계감사원은 당해연도의 집행 결과와 관련된 사전 보고서를 공공재정방향토론 이전에 제출하고, 이전 연도의 집행 결과 및 회계를 포함한 예산 운용 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결산법안 및 경영보고서 제출 시 첨부한다. 또한 정부가 가장 최근의 재정법을 통해 수정되어야만 하는 예산운용에 대해 의회에 이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회계감사원의 역할이다. 회계감사원은 국가회계 보증(certification) 및 예산 운영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회계감사원은 예산집행의 예산적 정당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여 국가의 공공회계를 점검한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사회보장 일반체제의 징수와 분야마다 결합된 회계 및 일반체제에 속하는 국가기관들의 회계의 적법성, 진실성과 충실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원의 의무는 2001년 LOLF와 2005년 사회보장재원조달에 관한 조직법에 의거하고 있다. 2012년에는 최초로 2011년에 예산의 결과에 대한 보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각각의 미션에 대해 60개의 분석을 하였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국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 공공지원의 사용,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공공기금에 대한 평가임무 등 공공재정의 관리에 개입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한다.

국가회계가 적법하면 회계감사원은 공공회계에 관한 면책결정(arrêt de décharge)을 선언하지만, 수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적법하지 않게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채무변제판결을 한다. 회계감사원은 지불명령자의 경영에서 명백한 비합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예산 및 재정 규율심판소(Cour de discipline budgétaire et financière)에 제소한다. 예산 및 재정 규율심판소는 회계감사원과 국가평의회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비합법성과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공공회계 담당자들에게 재정적 형벌을 결정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의 책임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금전적 차원까지 확장된다. 회계감사원의 관정에 대해서는 국가평의회에 상고를 할 수 있다.

다.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위해 각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및 수량적인 성과지표 등과 연계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재정법안에 첨부되는 연간성과계획(PAP)에서 설명되며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PAP를 가진다. 각 지표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재정법안에 구체적인 수치와 5년 중기의 목표가 제시된다. 각 부처 소관하의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에 기초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결산법과 경영보고서의 검토 시 연간성과보고서(RAP)를 통해 달성된 결과로서 의회에 보고된다. LOLF 제51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PAP는 N-1연도 10월의 재정법안에 첨부되고 있다. PAP는 각 프로그램, 전략,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지출의 정당성, 공공정책의 목표 및 달성 목표 등에 대해 서술한다. RAP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N-1연도 재정법안에 수반된 PAP 내에서 언급된 지출 집행에 대한 보고서로 N+1연도 6월의 결산법안에 첨부된다. RAP는 미션에서 편성되어 공공정책에 배분된 전체 재정지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공공정책운영의 품질을 평가한다.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는 각 프로그램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표현하는 3가지 범주의 목표에 따라 평가된다. 3가지 목표는 시민들과 자치단체들을 위한 공공정책의 기대이익을 표현하는 사회경제적 실효성(Efficacité socio-économique), 이용자들에게 시행된 서비스의 품질(Qualité du service), 납세자들에게 이용된 수단의 경영 품질을 설명하는 효율성(Efficience) 등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소비된 재원을 가진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다. 또한 지표들의 타당성, 신뢰성과 진실성은 프로그램 회계감사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CIAP)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표 15〉 성과 목표의 구체적인 예

| 목표 유형 | 프로그램 | 목표 | 지표 |
|---------------|---------------|----------------------|--------------|
| 시민: 사회경제적 실효성 | 국가경찰 또는 국가 헌병 | 도로 불안전 완화 대책의 실효성 강화 | 사고 건수, 사상자수 |
| 이용자: 서비스의 품질 | 국토행정 | 면허증 발급 조건 개선 | 면허증 발급 평균 기간 |
| 납세자: 경영 효율성 | 지리·지도제작 정보 | 연구와 교육의 대책을 최적화 | 학생당 교육비 |

자료: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2012)

6. 주요 관련 문서

가. 예산방향토론 참조 문서

예산방향의 결정과 관련하여 N-1년 6월에 국가경제의 진전과 공공재정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rapport sur l'évolution de l'économie nationale et sur les orientations des finances publiques)가 발간된다. 동 보고서는 공공재정의 다년간 전략과 다음 연도의 재정법안을 위해 계획된 미션,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 등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나. 재정법안 관련 문서

매년 정부는 의회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다. 재정법안의 형태로 제출되는 예산안에는 국가의 수입, 공공지출 또는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들과 관련된 종합적인 다수의 서류와 법안 규정의 동기와 소개를 하는 일반적인 보고서 등이 수반된다. N-1연도 10월에 재정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는 의회에 재정법안의 경제적·사회적·예산적·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사전적인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방법과 수단에 대한 평가(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는 2권으로 1권은 수입의 진전, 2권은 재정지출의 진전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총조세부담에 대한 보고서(Rapport sur l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는 총조세부담과 그의 진전에 대해 정리하여 재정법안 및 사회보장자원조달법안의 검토를 위한 회기 개시에 심화된 토론 기회를 제공한다. 동 보고서는 사회보장관련 비용 및 기타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및 EU 보조금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경제·사회·재정보고서(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는 수입, 지출 및 유럽연합과 관련된 공공행정의 재정수지에 대한 4년간 발전 전망을 분석한다. 공공지출보고서(Rapport sur la dépense publique)는 공공지출의 경제적, 인구적 결정요소 등 모든 구성요소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된 정책수단을 제출한다. 동보고서에서는 예산화차트(charte de budgetisation)를 첨부하여 매년 지출기준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설명하고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정부는 재정법안 부속문서로 연간성과계획(PAP)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미션별 부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PAP는 구체적인 지표를 수단으로 하여 측정된 연간미래전략, 액션, 추구 목표, 달성 결과 및 기대 결과 등을 포함하여 각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PAP는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 지출액과 정원에 대한 첫 유로에 대한 정당화(Justification au premier

euro, JPE),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조기관 등 프로그램의 주요한 집행자들과 관련된 정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체 수단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의 비용분석 등을 포함한다.³⁰⁾ 회계감사원보고서(Rapport de la Cour des comptes)는 이전 회계연도의 집행결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되며 특히 미션별, 프로그램별 예산집행 분석을 한다. 보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속서로는 통합정책문서(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le, DPT) 및 황서(jaunes budgetaires)가 공공재정의 특정한 한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복수의 미션이나 프로그램들과 관련되어 공공정책의 전체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특히 통합정책문서는 상이한 부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합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수상이 책임장관을 임명하여 그 장관이 공통의 사회경제적 목적 아래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최소한 해당되는 수입과 지출의 첫 번째 독회에서 하원에 의해 검토되기 만 5일 전에 최소한 제출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부속서의 목적은 주로 경제지표 등 정보를 의회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수정재정법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그 해의 재정법과 동일한 형태로 제출된다. 수정재정법들이 제출될 때에는 수정재정법에 포함된 조치들을 정당화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제적·예산적 상태의 진전에 대한 보고서 등이 의무적으로 첨부된다.

〈표 16〉 재정법안 관련 문서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법과 수단에 대한 평가(2권) 2. 총조세보고서 3. 경제, 사회 및 재정보고서 4. 공공지출보고서 5. 연간성과계획 6. 각 프로그램에 연계된 PAP: 7. 회계감사원보고서 8. 통합정책문서 및 황서 |
|---|

30) 첫 유로의 정당화(JPE)는 프로그램별 총 예산, 수요 인원(PAP) 또는 실제 지출된 인원(RAP)에 대한 설명이다. JPE는 예산적 투명성의 수단이다.

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 관련 문서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PLFSS)은 10여개의 부속문서를 동반하며 늦어도 이전 연도 10월 15일까지 혹은 당일 국회가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개최 시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전년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적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회보장재정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 첨부한다. 실무상 회계감사원은 9월초에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은 3개의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첫째, 종결된 회계연도의 잉여배분조치 또는 확인된 적자의 보전에 관한 조치를 나타내는 보고서, 둘째, 일반기초의무체제와 일반체제의 항목별 예상수입과 지출목적을 서술하고, 이러한 체제들에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예상 및 다가올 4년간의 질병보험지출의 국가적 목적(ONDAM)을 서술하는 보고서, 셋째, 기초의무체제와 일반체제 그리고 의무체제의 재정지원에 기여하는 기금의 카테고리별·항목별 수입보고서 등이다. 새로 제안된 조치들의 재정적 영향 평가, 분담금과 기여금의 면제 및 국가가 사회보장에 투입한 재정적 보상총액, 사회보장정책의 성과평가에 포함된 부속서로 각 분야별 품질과 효과 프로그램(programmes de qualité et d'efficience, PQE) 등도 중요한 부속서이다.

〈표 17〉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속서(2011년 기준)

1. 품질과 실효성 프로그램(Programmes de qualité et d'efficience)
2. 사회보장기관의 목표와 수단(Objectifs et moyens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3. 2010년 재원조달법 실행과 단순화 조치(Mise en oeuvre de la loi de financement pour 2010 et mesures de simplification)
4. 범주와 분야에 따른 사회보장체제의 수입(Recettes des régimes de sécurité sociale par catégorie et par branche)
5. 분담금, 기여금의 감면과 그들의 상쇄를 위한 조치의 제시(Présentation des mesures d'exonération de cotisations et contributions et de leur compensation)
6. 국가, 사회보장과 공공자치단체 사이의 개입의 범위의 진전(Evolution des périmètres d'intervention entre l'État, la sécurité sociale et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7. 의료보험국가지출과 국가의 보건지출(ONDAM et dépense nationale de santé)
8. FSV, CADES, FRR, CNSA와 기초의무체제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기관들의 회계(Comptes du FSV, de la CADES, du FRR, de la CNSA et des organismes ou fonds financés par des régimes obligatoires de base)
9. 체제의 유동자산의 필요성과 새로운 조치들의 회계에 대한 영향(Besoins de trésorerie des régimes et impact sur les comptes des mesures nouvelles)

라. 결산법안 관련 문서

N+1연도 6월에 제출되는 결산법안과 경영보고서는 PAP에 근거한 예산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와 실질 전체비용(coûts complets reels)의 예측과 집행을 비교한다. 국가가 일년간 그의 활동에 대한 자금조달을 한 방식을 보여주는 재원조달표, 국가의 대차대조표와 대차대조표 이외 그의 실행에 대한 평가 등도 포함한다. 결산법안의 제출 시 국가의 일반회계에는 회계의 일반 균형표, 결과에 대한 회계, 대차대조표와 그의 부속서, 국가 대차대조표 외의 지출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일반회계에는 회계연도에 발생된 회계적 준칙과 방법의 변화를 설명하는 보고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초기재정법에서 예측된 데이터와 달성된 결과를 비교하면서 공공정책의 경영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성과보고서(RAP)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성과보고서는 재정법에 의한 예측과 실제 차이를 명확하게 하면서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 확증된 지출과 고용 허용 관리 등과 관련된 결과 등을 설명한다. 이전 회계연도의 집행결과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미션별·프로그램별 지출집행을 분석한다.

〈표 18〉 RAP 포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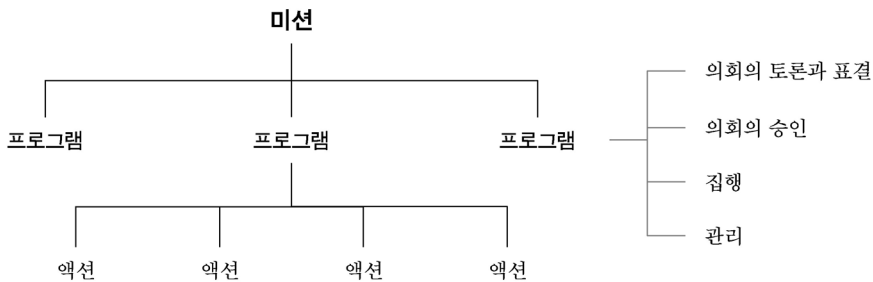
- 프로그램 책임자가 서명한 전략적 대차대조표(Bilan strategique signe du responsable de programme)
- 프로그램 제출의 환기(Rappel)
- 목표별 지표들의 기대된 결과와 획득된 결과 및 결과 분석
- 각 목(titre)별로 예산 흐름과 확정된 지출에 대한 첫 유로의 정당화
- 주요 국가 운영기관 및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고용의 효과적 실현 소개
- 프로그램과 액션들의 총 지출과 총 비용의 분석

V. 기타 재정제도

1. 프로그램별·미션별 지출 분류

프랑스 예산의 구조적 특징은 미션(mission)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mes)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LOLF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품목별(line item) 예산에서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전환되어 재원을 배분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800개 이상의 의결항목이 100개 정도로 축소되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통제를 위해 예산을 지출성질별이 아니라 동일한 부처 내의 하나의 활동 또는 여러 개의 활동으로 재편성하여 목표와 연계시킨다. 따라서 프랑스 예산은 지출성질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른 결과를 위해 편성된다. 예산은 100개에서 150개의 부처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사업예산에서 재정운영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과성 통제를 지향한다.

[그림 8] 프랑스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자료: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2012)

2011년 예산은 <표 19>와 같이 32개의 미션과 124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표 19〉 32개의 미션과 124개 프로그램

| | | | | | | |
|-------------------|---------------------------|-----------------|---------------------------------|------------------|--------------------|------------|
| 국가의 대외활동 | 유럽과 세계에서 프랑스의 활동 | 문화적 영향력 있는 외교 | 해외 프랑스인들과 영사업무 | G20과 G8의 프랑스 대통령 | | |
| 국가의 일반행정과 국토행정 | 국토행정 | 정치적, 문화적, 참여적 삶 | 국내정책 운영과 조정 | | | |
| 농업, 어업, 식품, 숲과 농촌 | 농업, 어업, 국토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 산림 | 식품 안전과 건강의 질 | 농업정책의 운영과 조정 | | |
| 개발에 대한 공공원조 | 개발에 대한 경제적, 금융적 지원 | 개발도상국 연대 | 연대적 발전과 이민 | | | |
| 제대 군인, 국가의 추모와 연계 | 국가와 군대의 연계 | 군인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학대와 야만적 행위 희생자 보상 | | | |
| 국가의 자문과 관리 | 국가자문위원회와 기타 행정적 관할 | 경제·사회·환경위원회 | 회계감사원과 기타 재정적 관할 | | | |
| 문화 | 유산 | 창조 | 지식의 전달과 문화의 민주주의화 | | | |
| 국방 | 국방정책의 환경과 전망 | 군사력의 준비와 이용 | 국방정책 지원 | 군사장비 | | |
| 정부활동 방향 | 정부업무 협력 | 권리와 자유 보호 | 분산화된 행정의 공생수단 | | | |
| 생태,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비 |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통서비스 | 도로안전과 교통 | 해양 안전과 업무 | 기상대 | 도시정비, 경관, 물과 생물다양성 | 지리·지도제작 정보 |
| | 위험 예방 | 에너지, 기후변화 | 생태,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정책의 운영과 조정 | | | |
| 경제 | 기업과 고용의 발전 | 관광 | 통계와 경제연구 | 경제 및 재정전략 | | |
| 국가의 재정적 의무 | 채무부담과 국고 | 국가보증 요청 | 저축 | 임대료 보조 | | |

| | | | | | | |
|------|---------------|-------------------|----------|------------------------|----------|--------|
| 학교교육 | 1단계 공공학교교육 | 2단계 공공학교 교육 | 학생 생활 | 1단계와 2단계의 사립학교교육 | 국가교육정책지원 | 농업기술교육 |
|------|---------------|-------------------|----------|------------------------|----------|--------|

| | | | | | |
|----------------|----------------------------|----------|----------------|--------------------------|-------------------|
| 재정과 인적자원 관리 | 국가와 공공지역부문의 재정적, 조세적 관리 | | 재정전략과 국가현대화 |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운영과 조정 | 공교육 촉진과 안전화 |
| | 국가건물 유지 | 공공기 능 | | | |

| | | |
|------------|-----------|---------------------|
| 이민, 망명과 통합 | 이민과 망명 | 통합과 프랑스 국적에의 접근성 |
|------------|-----------|---------------------|

| | | | | | |
|----|--------|-----------|--------------|------------------|-----------------|
| 사법 | 관할 재판소 | 형무소 행정 | 청소년 법적 보호 | 권리와 정의에 대한 접근 | 사법정책의 운영과 조정 |
|----|--------|-----------|--------------|------------------|-----------------|

| | | | | |
|-------------------|----|------------|--------------------|-----------|
| 미디어, 출판 및 문화산업 | 언론 | 책과 문화산업 | 시청각과 라디오 다양성 기여 | 대의 시청각 활동 |
|-------------------|----|------------|--------------------|-----------|

| | | |
|------|---------|-------|
| 해외영토 | 해외영토 고용 | 삶의 조건 |
|------|---------|-------|

| | | |
|------|----------------|------------|
| 국토정책 | 국토정비정책의 추진과 협력 | 국가의 영토적 개입 |
|------|----------------|------------|

| | | | | | | | | |
|-----|------------|----|----|------|----------------------|-------------|------|--------------|
| 공권력 | 공화국 대통령 | 의회 | 상원 | 의회채널 | 유럽의회 프랑스대 표 수당 | 헌법자문 위원회 | 고등법원 | 공화국 상급재판소 |
|-----|------------|----|----|------|----------------------|-------------|------|--------------|

| | | |
|-----|-------------|---------------|
| 예비비 | 공공급료 관련 준비금 | 사고, 예측 불허의 지출 |
|-----|-------------|---------------|

| | | | | | |
|----------|-------------------------|--------|----------------------|----------------|---------------|
| 연구와 고등교육 | 고등교육과 대학연구 | 학생들의 삶 | 과학연구와 다전공 복합기술 | 환경과 자원관리 연구 | 우주연구 |
| | 에너지,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 | | 경제산업 연구와 고등교육 | 민간과 군사적 연구 | 문화연구와 문화과학 |

| | | | |
|---------------|--------------------------|------------------------|--------------------------|
| 사회적 체제와 퇴직 | 육상교통의 사회적 체제와 퇴직체제 | 해군의 퇴직체제와 사회보장체제 | 광산, SEITA 등 기타 퇴직체제 등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꼬핀과 꼬핀연합에 대한 재정지원 | 데빠르트망 에 대한 재정지원 | 레지옹에 대한 재정지원 | 특별한 지원과 행정 |
|----------------|-------------------------|-----------------------|-----------------|------------|

| | | |
|--------|---------------|----------------|
| 환급과 감면 | 국세의 환급과 감면 | 지방세의 환급과 감면 |
|--------|---------------|----------------|

| | | | | | |
|---------------------|-----------------------------------|--------------------|----------------------|-------------------------|---|
| 보건 | 예방, 보건안전과 치료 제공 | 질병예방 | | | |
| 치안 | 국가경찰 | 국가헌병 | | | |
| 국민보호 | 운영적 서비스 개입 | 구호수단의 협력 | | | |
| 연대, 사회적 통합과 기회균등 | 빈곤퇴치: 적극적 연대수입과 사회적 시범사업 | 취약가정을 위한 정책 | 장애인 | 남녀평등 | 사회적 보건정책, 스포츠, 청소년과 참여적 삶을 위한 정책의 운영과 지원 |
| 스포츠, 청소년과 참여적 삶 | 스포츠 | 청소년과 참여적 삶 | | | |
| 노동과 고용 | 고용에 대한 접근과 복귀 | 경제적 변동과 고용발전 | 고용의 질 개선과 노사관계 | 고용과 노동정책의 수립, 관리, 평가 | |
| 도시와 주거 | 취약자들의 배제 예방과 사회적 통합 | 주거접근 지원 | 주거공급의 발전과 개선 | 도시정책과 그랑파리 | |

자료: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Reforme de l'Etat(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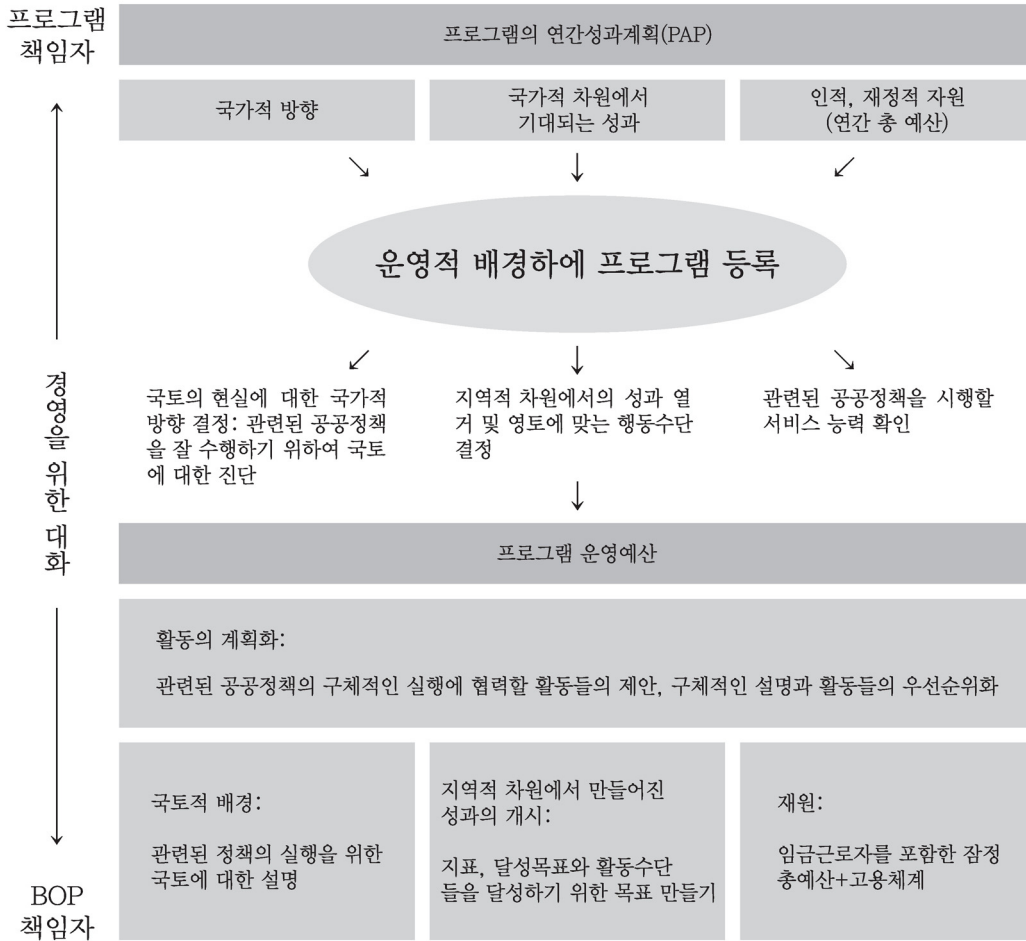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운영예산(Budgets opérationnels de programme)

LOLF는 공공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관리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예산(Budgets operationnels de programme, BOP)을 도입하였다. BOP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액션이나 레지옹, 데빠르트망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임명된 한 명의 책임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BOP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며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목표와 연계되는 총체적인 정책수단이다. BOP의 목표는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BOP는 현장의 관리자로 부분적, 전반적 예산을 준비하고 관리하며, 연간성과계획(PAP)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다. BOP 책임자는 공적 활동에 적합하고 목표와 지표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액션들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시행하는 책임을 진다. BOP 책임자는 프로그

램 책임자에 의해 예산을 할당받고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반면, BOP 내에서 정의된 활동을 하는 지불명령자 담당하에 있는 상이한 운영단위(unités opérationnelles, UO)에 예산들을 배분해 준다.

각각의 BOP는 기대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행동계획과 관련된 성과 부문, 정규고용에 상응하는 고용체계(Schéma d'emplois en équivalents temps plein travaillés, EITPI)를 포함하여 부처들의 고용을 위한 투입승인과 지불한도를 받는 잠정 총예산, 프로그램 및 BOP와 연계된 운영단위들 사이의 예비예산 재배분을 설명한 재정조직화체계(schéma d'organisation financière, SOF)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연하고 밀접한 정책 연계를 위해 경영을 위한 대화(Dialogue de gestion)가 프로그램 책임자와 재정 및 인적자원국장 등 기타 국장들 및 BOP 책임자, BOP 책임자와 운영단위, 도지사, 지역 재정통제관 사이 등에서 진행된다. 약 1,800명의 BOP가 있고 이 가운데 1,500개는 분산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정자산, 정보, 통신 등과 관련, 레지옹간에는 국가경찰과 치안프로그램들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 교환 관련, 레지옹 차원에서는 공교육과 농업 관련, 데парта망 차원에서는 '국가와 지역공공부문의 재정·조세관리' 등과 같은 BOP가 있다.

[그림 9] 프로그램 운영예산



자료: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2010)

3. 다년도 예산(Budget pluriannuel)

프랑스는 단년도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년도 예산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였다. 프랑스 다년도 예산은 3년간의 국가 및 공공정책의 전체적인 지출한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3년도 예산(Budget triennal)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 다년도 재정계획의 특징은 3개년도안에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국가재정운명을 할 수 있고 단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3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년도 예산제도는 매년 재정법안의 준비에 기여하는 프레임워크이다. 3년간 예산의 마지막 연도 예산은 다음 3년간 새로운 예산의 출발점이다. 예산방향설정 전문위원회와 국무회의가 지출한도를 결정하며 이러한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기간 동안 계획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방향설정 전문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과 예산 관련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합의한다. 이때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상의 재량에 맡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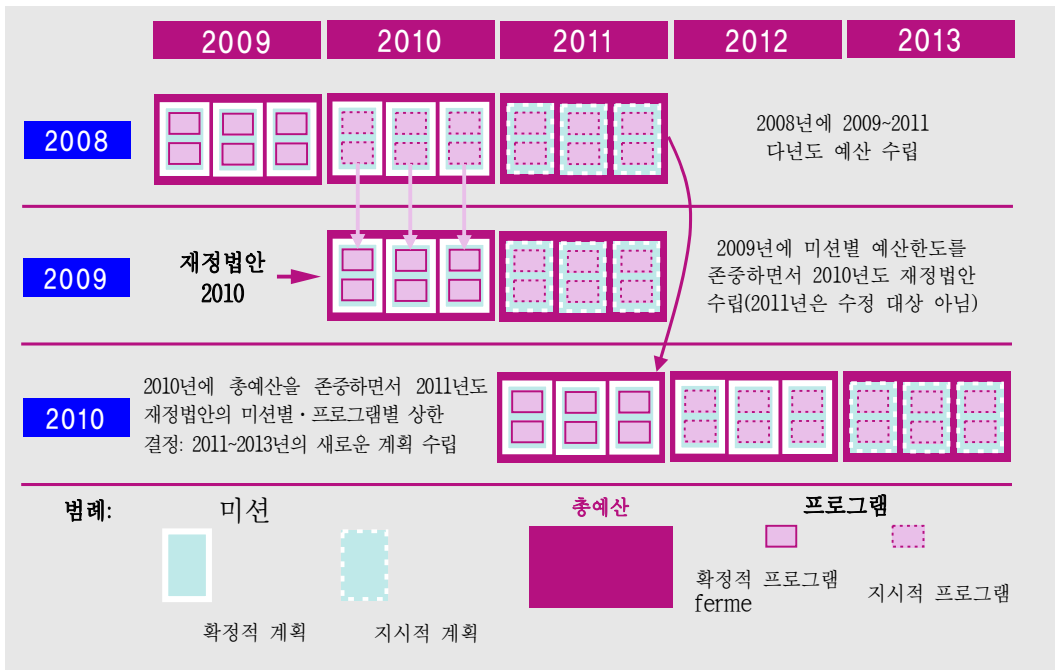
다년도 재정계획에서 정한 지출 및 사용한도는 7월 중순까지 각 부처장관에게 송부된다. 다년도 예산계획에서 3회계연도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지방정부 지원금, EU 분담금의 지출계획 및 자원배분을 설정하지만 부속회계 및 특별회계는 제외된다. 일반회계의 미선별 상한만을 규정하여 이 한도 내에서 단년도 예산 수립 시 프로그램별 지출규모 및 상한이 결정된다. 다년간 계획은 국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며 2009~2011년, 2011~2013년 등 총 2회 수립되었다. 다년도 예산은 중기재정예산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단년도 중앙정부 예산 및 사회보장 예산은 중기재정예산 및 다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수립된다.³¹⁾

2009~2011년 다년도 재정계획은 2008년 7월 공공재정방향토론(DOFP)에서 제시되었다. 다년도 재정계획은 2008년 가을 공공재정계획법에 통합되어 RGPP의 개혁안과 통합되었다. 2008년도에 2009~2011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면 2009년에는 미선에 따른 총 예산 내에서 2010년 재정법안을 수립하며 이때 2011년에 대한 다년도 재정계획은 변경되

31) 중기재정예산이란 향후 4개년 회계연도의 일반정부 재정지표 전망(목표) 및 근거(거시경제 및 재정여건)를 제시하고 달성 수단을 수입, 지출, 구조개혁 등으로 나누어 예산상 효과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2011-14년에 대한 중기재정예산이 2010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지 않으므로 2010~2012년 재정계획은 수립되지 않는다. 2010년에는 2011년 예산안의 미션과 프로그램 상한을 정하고 다음 다년도 예산안인 2011~2013년 재정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다년도 예산의 편성 및 적용 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다년도 예산체계



자료: Ministère de l'Economie et Finances(2012)

4. 안정 및 성장협약(Pacte de stabilité et de croissance)

안정 및 성장협약(Pacte de stabilité et de croissance, PSC)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회원국 간 예산정책의 협력과 과도한 예산적자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다. PSC는 유럽연합의 재정준칙으로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재정적자의 통제방법으로 과다재정적자처리절

차를 도입하였고 1997년 6월의 암스테르담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재정운영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구체화한 PSC를 만들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no bail' 조항은 특정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이나 중앙은행의 자금지원 및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은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자력으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PSC에 따르면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다음해까지 자구노력을 하도록 경제·재무이사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OFIN)가 해당 회원국에 조기예방조치 및 권고안을 제시하며 그 다음 해에도 지속되면 제재조치를 한다. PSC는 GDP의 0.2%에 GDP의 3%를 초과하는 적자분의 10분의 1을 가산한 금액(GDP의 0.2%~0.5%)을 유럽중앙은행에 무이자 예치를 하도록 금융적인 제재를 가하며 각 단계에 대한 최종기한을 설정하여 재정준칙을 실질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수행할 것을 해당국들에 지시한다.

PSC에는 다자간 감시를 통한 예방적 규정이 있다. 매년 유럽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회원국들에 재정운영계획과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화 계획을, EMU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스웨덴, 덴마크에는 수렴화 계획을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SC는 과도한 재정적자의 예방과 억제가 주요 목적이다.

2005년 EU는 불황이나 독일통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의한 재정지출을 고려하여 제약조건들을 유연화하는 PSC의 개혁을 추진하여, 재정적자한도를 GDP의 3%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적자초과를 인정하였다. 2010년 유럽재정위기가 가속화되면서 2011년 12월 9일 유럽위원회 이후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2012년 3월 2일 EMU 내의 안정, 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조약(Traité sur la stabilité, la coordination et la gouvernance au sein de l'Union économique et monétaire)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은 유로존 내의 더 많은 규율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유럽헌법에 예산의 '황금률(règle d'or)'과 '되도록(de préférence)'을 삽입하여 재정적자준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회원국 내 법적 질서에 황금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EU 재판소(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의 법에 의한 벌금은 GDP의 0.1%가 될 수 있으며 이는 PSC 준칙을 지키지 못할 때 자동적으로 가해진다. 이 조약은 유로존의 12개 국가들이 사인을 하자마자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이다.

참고문헌

- Assemblée nationale, *L'assemblée nationale dans les institutions française*, 2009.
- Champsaur, Paul & Cotis, Jean-Philippe, *Rapport sur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INSEE, 2010.
- Dupuis, Jean-Pierre, *L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INSEE, 2007.
- INSEE, *Tableaux de l'économie française*, édition 2011, 2011.
-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Guide pratique de la LOLF*, 2012.
-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La réforme des comptes de l'Etat*, 2006.
-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Guide pratique de la LOLF*, édition 2010, 2010.
-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État, *Rapport d'Activite*, 2010, 2010.
-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Réforme de l'État, *Rapport de la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a période 2011 à 2014*, 2011.

인터넷 자료:

<http://www.assemblee-nationale.fr>,

<http://www.colloc.bercy.gouv.fr>

<http://www.economie.gouv.fr>

<http://www.insee.fr>

<http://www.vie-publique.fr>

〈부록〉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o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제1편 재정법

제1조

동 조직법에 의한 조건과 유보하에 매 회계연도의 재정법은 국가의 재원과 부담의 성격·금액·배분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예산과 재정의 균형을 결정한다. 재정법은 정의된 경제적 균형, 재정법이 결정한 프로그램들의 목표와 결과를 고려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재정법은 다음 법률을 포함한다.

1. 당해 연도 재정법 및 수정재정법
2. 결산법
3.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법률

제2편 국가의 재원과 부담

제2조

국가의 재원과 부담은 예산상 재원과 부담 및 국고의 재원과 부담을 포함한다.

모든 성격의 과세부담은 공공서비스에 부여된 미션에 근거하여 제34조, 제36조 및 제 51조 등에 의한 유보하에서만 제3자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다.

제1장 예산의 재원과 부담

제3조

국가 예산의 재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각종 조세
2. 국가 영역 내에서 산업과 상업 활동, 재정적 참여, 자산과 권리로부터의 경상수입,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사회보장 분담금 운용과 사회보장 적립금 운용수입, 벌금, 국고거래 외의 공적·사적기관의 납입금, 국채발행수입 이외 국고운용수입
3. 협력기금, 기부 및 이익을 허락한 유산
4. 다양한 경상수입
5. 차입금과 선급금의 상환
6. 재정활동 및 자산으로 인한 산물, 기타 자산 및 국유지 양도 등으로 인한 수입
7. 기타 예외적 수입

제4조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재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처 및 관련된 부처의 보고서를 책임지는 국가평의회에 명령에 기초하여 결정·징수된다. 이러한 명령들은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가장 최근의 재정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제5조

- I. 국가의 예산 부담은 다음과 같이 목별로 구분된다
 1. 공공기관에 대한 교부금
 2. 인건비
 3. 운영비
 4. 국가채무부담
 5. 투자지출

6. 지원지출

7. 재정운용지출

II. 인건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 급여
- 사회보장 기여금과 분담금
- 사회적 급여와 각종 수당

운영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인건비 이외의 운영비
- 공공서비스 부담을 위한 보조금

국가의 채무부담은 다음을 포함한다:

- 양도성 국채에 대한 이자
- 비양도성 국채에 대한 이자
- 기타 재정부담

투자지출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국가 유형고정자산 지출
- 국가 무형고정자산 지출

지원지출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계에 대한 이전
- 기업에 대한 이전
- 영토 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이전
- 보증인 공소

재정운용지출은 다음을 포함한다:

- 차입금과 선급금
- 고유 기금에 대한 보조
- 출자

제6조

국가 예산상 재원과 부담은 수입과 지출의 형태로 예산에서 편성된다.

예산은 1회계연도의 국가의 예산상 총수입과 총지출을 기술한다.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 사이의 감소가 없이 수익의 통합된 총액을 수입으로 한다.

총수입은 총지출의 집행을 보장하고,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일반회계라고 칭하는 단일한 회계로 편성된다.

국가수입 중 일정 금액은 수혜자들에게 귀속되는 부담이나 면세·조세감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설정된 조세상한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럽공동체에 배당될 수 있다. 국가수입에 대한 선취는 목적과 금액이 명확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제2장 예산승인의 성격과 범위

제7조

I. 국가예산의 부담에 충당하기 위해 재정법에 허용된 세출예산은 하나 또는 여러 부처의 하나 또는 복수의 서비스와 관련되는 미션별로 편성된다.

하나의 미션은 특정한 하나의 공공정책에 기여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정부 주도의 재정법의 규정만이 하나의 미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하나의 미션은 그들 각각이 하나 또는 복수의 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미션은 다음의 두 가지 교부금 지출을 편성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우발적 지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교부금
2. 세출예산의 표결 시 프로그램별 배분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없는 보상과 관련된 일반적 조치를 위한 교부금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평가대상이 되며 일반 대중들의 합목적성 및 기대 결과와 연계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하나의 동일한 부처의 일관되고 총체적인 액션 또는 하나의 액션을 시행하는 예산지출을 포괄한다.

II. 세출예산은 프로그램별 또는 교부금별로 용도가 한정된다.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교부금의 세출예산은 제5조에 언급된 목별로 제출된다. 세출예산의 목별 제출은 참고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각 프로그램의 인건비 목에 허용된 세출예산은 해당 성질별 지출의 최고 한도액이다.

III. 동법 제7조 I, 제2호 교부금의 세출예산을 제외하고 인건비 목에 허용된 세출예산은 국가가 지급하는 공무원 인건비 승인액 상한과 조화되어야 한다. 동 상한은 부처별로 특정화된다.

IV. 허용된 세출예산은 각 부처 장관이 집행한다.

세출예산은 재정법 또는 예외적으로 동법 제11조~제15조, 제17조·제18조 및 제21조의 적용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부처 간에 승인된 공무원 정원 배정은 재정법 또는 예외적으로 동법 제12조 II.의 적용으로만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허용된 세출예산은 투입승인과 지불예산으로 구성된다.

투입승인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다. 투자와 관련된 운용의 경우 투입승인은 추가 소요액이 없이 집행되거나 본질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는 일관된 전체 예산을 포괄한다.

지불예산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한다.

인건비 지출의 경우 허용된 투입승인액은 허용된 지불예산액과 같다.

제9조

세출예산은 동법 제10조와 제24조 규정의 조건하에 제한된다. 지출은 허용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승인되고 지불될 수 있다.

다음연도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측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지출의 조건은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공무원 정원 허용의 한도는 제한된다.

제10조

국가채무부담·상환·반환·감면과 기타 국가가 승인한 보증채무 세출예산은 평가된다. 관련 예산은 세출한도액을 정한 프로그램별로 구분되어 승인된다.

평가대상이 되는 세출예산지출은 필요하다면 승인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여 계상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재정을 책임지는 장관은 초과 이유 및 회계연도말까지 집행 전망에 대하여 하원과 상원의 재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들에 보고한다.

평가대상 세출예산의 초과액은 관련된 연도의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재정법안에서 세출 승인의 제안대상이 된다.

제1항에 규정된 세출예산은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용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전용에 연계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조

필요한 경우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교부금으로 승인된 세출예산은 재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보고서에 근거한 시행령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배정된다.

급여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로서 교부금에 대해 승인된 세출예산은 재정을 책임진 장관의 부령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배정된다. 동 부령에 의해서만 인건비 목적으로 승인된 세출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제12조

- I. 예산전용을 통해 동일한 부처 내 프로그램간 예산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동일한 해에 전용이 가능한 세출예산 누적액은 관련된 각 프로그램에 대해 당해연도의 재정법에 의해 승인된 세출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한도는 관련된 각 프로그램의 인건비 목적으로 허용된 세출예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II. 이전을 통해 당초 프로그램의 액션에 조응하여 하나의 결정된 목표를 위해 세출예산이 활용되는 정도에 따라 상이한 부처의 프로그램간 세출예산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관련 부처간 승인받은 고용 배정의 변경에 기여할 수 있다.

- III. 전용과 이전은 하원과 상원의 재정위원회 및 기타 관련위원회에 보고한 후 재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보고서에 기초한 부령으로 시행된다. 전용 또는 이전된 세출예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5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작성되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특별 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 IV. 재정법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용 또는 이전을 할 수 없다. 다른 목에서 인건비 목으로는 어떠한 전용 또는 이전도 할 수 없다.

제13조

긴급한 경우 국가평의회 의의 의견에 기초한 선급금명령은 하원과 상원 재정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최근의 재정법이 정한 예산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충적 세출예산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급금명령은 세출예산을 취소하거나 추가 수입을 확정한다. 세출예산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재정법이 승인한 세출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상·하 양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는 동 명령안이 통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상에게 의견을 통보한다. 동 명령의 서명은 해당 위원회들의 의견이 접수되거나 상기 기한이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전술된 2개의 항에 기초하여 최근 재정법에 의해 승인된 세출예산 수정에 대한 기준은 관련 연도의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재정법안으로 의회에 요청된다.

긴급하고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에 보고된 후 국가평의회 의의 의견에 기초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선급금명령에 따라 보충세출예산이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수정을 담은 재정법안은 즉각적으로 혹은 가장 가까운 다음 의회 회기에 제출된다.

제14조

- I. 당해연도에 귀속된 가장 최근의 재정법에 의해 정해진 예산균형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의 보고서에 기초한 시행령에 의해 세출예산이 취소될 수 있다. 목표를 상실한 세출예산은 동일한 조건하에 취해지는 시행령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취소가 공포되기 전의 모든 취소 시행령은 하원과 상원의 재정 및 기타 관련 위원회에 전달된다.
- 동조와 제13조에 의해 시행령으로 취소된 세출예산의 누적액은 현행 연도의 재정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II. 수정재정법안에 의해 취소가 제안된 세출예산은 동 법안이 제출된 날부터 전술한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또는 필요한 경우 헌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 적용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지출을 개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 III. 성격이 무엇이든 예산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목표나 효과를 가진 모든 법적 행위는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15조

- I. 투입승인과 관련된 조항의 유보하에 한 해를 위한 승인된 세출예산과 고용 허가의 한도는 다음 연도들을 위한 어떤 권리도 만들지 않는다.
- II. 하나의 프로그램에 이용 가능한 투입승인은 연도말에 동일한 프로그램 혹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다음연도 예산에 적정 금액으로 증액되면서 이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월은, 인건비 지출을 위해 등록된 예산은 증액시킬 수 없다.
제21조 규정의 유보하에 이용가능한 지불예산은 연도말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재정 담당 장관과 관련된 부처 장관의 공동 부령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월될 수 있다:
 - 1. 이월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의 인건비 목에 기재된 세출예산은 이월된 세출예산의 프로그램의 동일한 목에 기재된 당초 세출예산의 3% 한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 2. 이월 혜택을 받는 다른 목의 프로그램의 세출예산은 이월된 세출예산의 프로그램의 동일한 목에 기재된 당초 세출예산의 3% 한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이 한도는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 III. 동법 제17조 II.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프로그램에 이용 가능한 투입승인은 연도말에 재정 담당 장관과 관련된 부처 장관의 공동 부령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월될 수 있다.
이월되는 세출예산 총액은 전술한 규정의 기초하에 확증된 수입과 지출 사이의 차이를 초과할 수 없다.
II.의 1.과 2.에서 결정된 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의 절을 적용하여 영향을 받은 지불예산의 이월은 고려되지 않는다.
- IV. 이월에 대한 부령은 늦어도 투입승인 또는 지불예산의 이용가능성이 확인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포된다.

제3장 수입의 배정

제16조

특정한 수입은 특정한 지출에 직접 배정될 수 있다. 배정은 일반예산, 부속예산, 특별회계 등의 내부에서 부속예산, 특별회계 또는 특별한 회계적 절차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제17조

- I. 일반예산, 부속예산 또는 특별회계로 배정을 보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한 절차는 협력기금절차, 수입배정절차 및 세출예산환수절차 등이다.
- II. 협력기금은 공익적 지출에 협력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자연인이 지불하는 면세성격의 자금 또는 국가에 귀속되는 유증 또는 기부로 조성된다.
협력기금은 일반예산, 부속예산 또는 해당 특별회계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계상된다. 동일한 액수의 보충예산은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기부에 대한 재정 담당 장관의 부령에 의해 배정된다.
협력기금수입은 재정법에 의하여 산정·평가된다. 동법 제34조 I.의 6.에 따른 지출과 부담의 상한은 기부금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예산총액을 포함한다.
기부금은 기부 당사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평의회 시행령은 기부금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의 사용 준칙을 정의한다.
- III. 국가의 서비스에 의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급부에 대한 보상과 연계된 수입은 재정 담당 장관의 보고서에 기초한 시행령에 의해 수입배정절차의 대상이 된다. 협력기금에 관한 준칙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예산은 관련된 서비스에 배정된다.
- IV. 재정 담당 장관의 부령으로 정해지는 조건하에 세출예산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다:
 1. 세출예산에서 불법적 또는 임시적으로 지불된 금액의 국고환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2. 세출예산에서 지불을 야기하면서 국가의 서비스간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입

제18조

I. 부속예산은 재정법이 정하는 조건하에 주로 전술된 서비스에 의해 실행되는 사용료의 지불을 야기하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에서 비롯된 법인격이 아닌 각각의 국가 서비스의 개별적 운용을 서술할 수 있다.

부속예산의 설치와 부속예산으로의 수입배정은 재정법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II. 부속예산은 동법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미션을 구성한다. 현재의 조문에 의해 정의되는 특별한 준칙들의 유보하에 부속예산의 운용은 일반예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승인 및 집행된다.

동법 제7조의 II.와 제29조의 예외로서 부속예산은 보편적 회계의 기준에 따라 2개 부문으로 제출된다. 경상운영부문은 경상운영 수입과 지출을 서술한다. 자본운용부문은 투자운용과 부채변동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기술한다.

동법 제7조 III.에 대한 예외로서 인건비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에 수반되는 고용허가 한도는 부속예산별로 특정하게 결정된다.

만약 회계연도 중에 실제 수입이 재정법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 담당 및 관련 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채무상환예산을 적절한 금액까지 증액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된 세출예산의 어떤 이동도 일반예산과 부속예산 사이에는 실행될 수 없다.

제19조

특별회계는 하나의 재정법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 특별회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할당회계
2. 상업회계
3. 통화운영회계
4. 재정협력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의 배정은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20조

- I. 공무원 본봉·월급·보상금 및 모든 성격의 수당의 지불로 인한 지출을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은 동법 제21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특정한 준칙들의 유보하에 일반회계의 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승인 및 집행된다. 재정법에 의한 반대의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각 특별회계의 차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 II. 세출예산을 부여받은 각 특별회계는 동법 제7조와 제47조 내에서 하나의 미션을 구성한다. 이 세출예산은 프로그램별로 세분된다.

동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어떤 이동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을 받은 특별회계 사이에 실행될 수 없다.

제21조

- I. 특별할당회계는 재정법에 의한 조건하에 성질상 지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한 수입을 수단으로 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예산운영이다. 이 수입은 해당 지출과 직접 연관을 가지는 수입으로서 각 회계의 초기 세출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전출로 충당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지분참여 관리에 연계된 국유재산적 성격의 운영은 모든 정상관리의 운용을 제외하고 단일한 특별배정회계로 서술한다. 이 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의 전출은 제1항에 명시된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금과 부가급여에 관한 자금운용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의 전출은 제1항에 명시된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II. 재정법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부속예산 또는 특별회계를 위한 어떤 전출금도 특별할당회계로부터 실행될 수 없다.

회계연도 중 신설된 후 3달 동안은 제외하고는 특별할당회계로 시행되거나 지불명령된 총지출액은 확정된 총수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에 당좌대월은 회계를 신설한 재정법에 의해 규정된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연도 중 실제 수입액이 재정법에 계상된 예산액을 초과하면 당해 초과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세출예산이 재정 담당 장관의 부령으로 승인될 수 있다. 재정 담당

장관은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에 이 초과액의 발생원인, 승인된 추가예산의 사용처 및 연말까지 당해 회계의 집행 전망을 통지한다.

연도말까지 이용 가능한 투입승인과 지불한도는 회계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5조 II.와 IV.의 요건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된다.

제22조

- I. 상업회계는 법인격이 아닌 국가기관이 부수적으로 시행한 상공업적 자금운용을 나타낸다. 동 회계의 수입의 평가와 지출의 예측은 참고적 성격을 가진다. 단 그들 사이에 각각 결정된 당좌대월은 제한적 성격을 가진다. 재정법에 명시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회계에서 재정투·융자, 선급금운용 및 차입운용 등은 금지된다.
- II. 모든 경상운용을 제외하고 국가채무와 국고에 관한 예산운용은 결정된 상업회계의 특별회계에 계상된다. 동 회계는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 부문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은 당좌대월의 승인을 부여받는다.

다음은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 매년 각 부문마다 승인된 자금운용의 성격
- 각 당좌대월 승인의 한도 또는 평가적 특성
- 회계의 활동에 관한 의회에 대한 통지의 보편적 양식과 당좌대월 승인의 모든 초과에 대해 재정 담당 장관이 하원과 상원의 재정 관련 위원회들에게 통지하는 특별한 양식
- 회계운용의 일반적인 요건

제23조

통화운영회계에는 통화적 성격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다. 이 범주의 회계에서 수입의 평가와 지출의 예측은 참고적인 성격을 가진다. 단 그들 사이에 각각 결정된 당좌대월은 제한적인 특성을 가진다.

제24조

재정협력회계에는 국가가 동의한 융자금과 선급금을 계상한다. 별도의 회계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 범주별로 개설되어야 한다.

재정협력회계에는 한정된 세출예산이 부여되고 평가를 받지만, 국제통화협정에 의하여 프랑스와 관련된 외국 및 중앙은행들을 위해 개설된 회계의 세출예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융자금과 선급금은 한정된 기간에 대해 승인된다. 융자금과 선급금의 이자율은 동일 만기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만기의 채권이나 국채 이자율보다 낮을 수 없다. 국가평의회 명령에 의해서만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융자금과 선급금의 자본 감가상각액은 관련 계정에 수입으로 계상된다.

만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이 된다:

- 즉각적인 회수결정 또는 회수 불능 시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사실상의 소송제기
- 관보 게재대상이 되는 채무변제 일정조정 결정
- 재정법의 특별한 규정의 대상이 되고 제37조에 규정된 조건하에 집행의 결과로 계상될 가능성이 있는 손실액의 확정. 나중에 확정되는 상환금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상된다.

제4장 국고금의 재원과 부담

제25조

국고금의 재원과 부담은 다음의 운용에서 발생한다:

1. 국가 유동자산의 변동
2. 국가가 발행한 모든 종류의 어음 할인과 현금화
3. 보증인이 기탁한 자금의 관리
4. 국채 및 기타 부채의 발행·전환·관리·상환. 이러한 운용에 귀속되는 국고금의 재원과 부담은 발행에 대한 프리미엄과 시세하락을 포함한다.

제26조

동법 제25조에 명시된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1. 국가유동자산의 투자는 당해연도의 재정법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연간승인에 맞추어 시행된다.
2. 어떤 당좌대월도 동법 제25조 3.에 명시된 상대에게 동의하게 할 수 없다.
3. 재정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공공기관은 국가에 모든 유동자산을 등록해야 한다.
4. 국채의 발행, 전환 및 관리는 당해 연도 재정법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연간 승인에 맞추어 시행된다. 재정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채는 유료화로 발행된다. 국채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또는 공법상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공공지출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국채는 발행계약에 따라 상환된다.

제5장 국가의 회계

제27조

국가는 예산상 수입과 지출의 회계 및 전체 운용의 일반회계를 관리한다.

더욱이 국가는 프로그램 내에서 시행되는 상이한 액션의 비용분석을 위한 회계를 작성한다.

국가의 회계는 적법하고 진실해야 하며 국유재산과 재정상황에 대해 충실한 이미지를 주어야만 한다.

제28조

예산상 수입과 지출의 기장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수입이란 한해 내내 세무관에 의해 현금화되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고려된다.
2. 지출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따른 지출관에 의한 지불이 고려된다. 모든 지출은 채권의 날짜가 언제이든 고려된 연도의 예산지출에 계상되어야 한다.

국가평의회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상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보충적 기간 동안 회계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더욱이 수정재정법이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 공포된 경우에는 수정재정법이 명시하는 수입과 지출의 운용은 추가 기간 동안에 집행될 수 있다.

임시 회계에 계상되었던 수입과 지출은 늦어도 추가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는 확정 회계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 날짜에 확정 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운용의 상세 내역은 예외적으로 동법 제54조 7.에 명시된 부속서에 게재된다.

제29조

국고금의 재원과 부담은 운용별로 국고금 회계에 계상된다. 국고금 운용의 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산적 성격의 수입과 지출은 동법 제28조 규정의 조건하에 계상된다.

제30조

국가의 보편적 회계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확인의 원칙에 기초한다. 운용은 지출일 또는 수납일과는 무관하게 실제 집행을 고려한다.

국가의 보편적 회계에 적용 가능한 준칙들은 그 행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준칙과 구별된다.

재정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의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회계준칙들은 결정된다. 위원회 의견서는 하원과 상원의 재정관련 위원회들에 보고되고 출간된다.

제31조

국가회계의 관리와 작성을 담당하는 세무관은 동법 제27조 내지 제30조에 언급된 원칙과 규칙의 준수를 감시한다. 세무관은 특히 회계기록의 진실성과 절차의 준중을 확인해야 한다.

제3편 재정법의 내용과 제출

제1장 진실성의 원칙

제32조

재정법은 국가의 총 재원과 부담을 진실한 방식으로 서술한다. 재정법의 진실성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이 정보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예측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제33조

2001년 7월 25일 no. 2001-448 DC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헌법에 일치하지 않고 선언된 규정들.

동 조직법 제13조의 규정들의 유보하에 법률적 혹은 규제적 차원의 규정들이 당해 연도 국가의 재원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재정적 균형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그들 사이의 각각의 결과는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가장 최근의 재정법에서 평가받고 승인받아야만 한다.

제2장 재정법의 규정

제34조

매년 재정법은 구별되는 2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I. 당해연도 재정법의 제1부는:

1. 당해연도에 대해 국가 재원의 징수와 국가 이외의 법인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성격의 과세의 승인
2. 예산균형에 영향을 주는 국가 재원에 관한 규정 포함
3. 국가예산 내에 수입의 배정에 관한 모든 규정 포함
4. 동법 제6조에 언급된 각각의 징수에 대한 평가
5. 각각의 예산 수입에 대한 평가 포함
6. 일반예산의 지출과 각 부속예산의 한도, 각 범주의 특별회계의 부담의 한도 및 국가에 의해 보수를 받는 고용의 승인 한도 결정

7. 균형표에 소개된 예산균형의 일반적 데이터 선택
8.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채무와 국고금에 관한 승인 포함 및 재정적 균형의 실현에 협력하는 재원조달표에 소개된 국고금의 재원과 부담에 대한 평가
9. 연말에 평가되는 1년 초과 양도성 국채의 순증감액의 한도 설정

II. 당해연도 재정법의 제2부는:

1. 일반예산의 각 미션별 투입승인과 지불예산의 총액 결정
2. 부처별 및 부속예산별 고용허가 한도 결정
3. 부속예산별 및 특별회계별로 승인된 투입승인과 지불예산 총액 및 승인된 당좌대월 총액 결정
4. 동법 제15조 II.2.에 명시된 일반예산, 부속예산 및 특별회계의 프로그램별 이월상한액 결정
5. 국가 보증권한의 부여 승인 및 체제 결정
6. 국가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 국가의 일방적인 부채승인에 조응하는 모든 다른 투입 구성 등의 승인과 이러한 책임과 투입의 체제 결정
7. 할 수 있다
 - a) 예산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성격의 과세기준, 비율 및 징수방식에 관한 규정 포함
 - b) 당해 연도의 예산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 포함
 - c)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배분양식 결정
 - d) 재정협약에 관한 동의
 - e)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의회의 보고와 통제에 관한 모든 규정 포함
 - f) 국가의 회계와 공공서비스기관의 금전적 책임 체제에 관한 모든 규정 포함

III. 당해 연도의 재정법에는 I.의 1·5·6·7 및 8과 II.의 1·2 및 3.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제35조

동 조직법에 의해 규정된 예외의 유보하에 각각의 수정재정법은 회계연도 중에 제34조 I.의 1·3·9와 II.의 1.과 6.에 명시된 당해 연도 재정법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수정재정법은 최근의 재정법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선급금 명령에 의해 수정된 사항을 비준한다.

수정재정법은 제34조 I.의 6.과 7.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수정재정법은 당해연도 재정법과 동일한 형태로 일부 또는 전부로 제출된다. 제55조의 규정은 수정재정법에 적용될 수 있다.

제36조

국가를 위해 설립된 재원을 다른 법인에 일부 또는 전부 배정하는 것은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37조

- I. 결산법은 관련된 예산의 최종 수입액과 지출액 및 예산에서 발생하는 예산적 결과를 확정한다.
- II. 결산법은 재원조달표에 나타난 당해연도의 재정균형의 실현을 지원하는 국고금의 최종 재원액과 부담액을 확정한다.
- III. 결산법은 동법 제30조에 의한 조건에 따라 확인된 재원과 부담으로부터 확립된 집행결과의 회계를 승인한다. 결산법은 예산집행의 회계결과를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뒤 동 대차대조표와 부속서류를 승인한다.
- IV. 필요한 경우 결산법은:
 1.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가장 최근의 재정법을 통해 선급금명령에 의해 수정된 세출예산의 내용 비준
 2. 관련된 각 프로그램 또는 교부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당화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된 명백한 예산초과를 적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예산을 승인하고 지출되지 않았거나 이월되지 않은 세출예산 취소

3. 관련된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확정된 당좌대월에 맞추어 승인된 당좌대월의 총액 증액
 4.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특별회계 잔액 확정
 5. 각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회계감사
- V. 결산법은 마찬가지로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의회의 보고와 통제 및 국가의 회계와 공공서비스기관의 금전적 책임체제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4편 재정법안의 심의와 표결

제38조

수상의 권한하에 재정 담당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합의된 재정법안을 준비한다.

제1장 당해연도 재정법안과 수정재정법안

제39조

제50조와 제51조에 명시된 문서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재정법안은 늦어도 예산집행 연도 이전 해의 10월 첫째 주 화요일까지는 제출·배포된다. 재정법안은 즉시 재정 담당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다.

다만 의회에 대한 보고와 의회의 통제 대상인 각각의 일반부속서는 법안이 보고하는 수입과 세출예산의 제1독회를 하는 하원에 적어도 심의시작 5일 전에 사무국에 제출·배부된다.

제40조

하원은 재정법안 제출 후 40일 이내에 제1독회에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상원은 재정법안 제기 후 20일 이내에 제1독회에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하원이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재정법안 전체에 대하여 제1독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초기에 제출한 재정법안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에 의해 표결에 의해 개선되고 동의된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한다. 상원은 재정법안을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상원이 주어진 기한 내에 재정법안 전체에 대하여 제1독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상원에 제출한 재정법안 또는 정부가 동의한 상원수정안을 다시 하원에 이송한다.

다음으로 재정법안은 헌법 제45조의 조건하에 긴급절차를 따라 심의된다.

의회가 재정법안 제출 후 70일 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 마지막 규정들은 정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41조

당해연도 재정법안은 전술한 재정법안의 심의를 진행하기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재정법안에 관해 제1독회에서 의회에 의해 표결되기 이전에 의회에서 심의될 수 없다.

제42조

당해연도 재정법안의 제2부와 만약 있다면 수정재정법안은 재정법안 제1부의 채택 이전에는 의회에서 심의될 수 없다.

제43조

수입에 대한 평가는 일반예산, 부속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표결로 한다.

국고금의 재원과 부담의 평가는 단일표결로 한다.

일반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는 미션별로 표결한다. 이 표결은 투입승인과 지출예산에 모두 유효하다.

고용허가의 한도는 단일표결의 대상이다.

부속예산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또는 당좌대월은 부속예산별 및 특별회계별로 표결한다.

제44조

당해연도 재정법 혹은 수정재정법의 공포 또는 헌법 제47조의 정령 공포 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시행령을 정한다:

1. 각각의 미션, 부속예산 또는 특별회계에 대해 승인된 세출예산의 프로그램별 또는 보조금별 배분
2. 인건비 항목으로 승인된 예산액의 프로그램별 확정

이 시행령들은 동법 제51조 5·6 및 제53조 2.에 명시되고, 경우에 따라 의회의 표결에 의하여 수정된 설명적 부속서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배분·확정한다.

배분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예산은 동 조직법에서 명시한 요건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제45조

헌법 제47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 정부는 다음 2가지 절차를 시행한다:

1.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12월 11일까지 당해 연도 재정법 제1부 전체를 분리하여 표결해 줄 것을 하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1부의 부분적 법안은 긴급절차에 따라서 상원에 제출된다.
2. 1.에 명시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12월 19일까지 당해 연도 재정법의 표결까지 현행 조세를 계속 징수할 것을 승인하는 특별법안을 하원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긴급절차에 따라서 심사된다.

당해연도 재정법이 헌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포될 수 없거나 시행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즉시 당해연도 재정법안의 표결이 있기 전까지 현행 조세를 계속 징수할 것을 승인하는 특별법안을 하원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긴급절차에 따라 심사된다.

당해연도 재정법 제1부의 공포든 특별법의 공포든 조세를 계속 징수하도록 승인받은 후 정부는 각각의 기 표결된 사업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세출예산을 승인하는 시행령을 공포한다.

시행령의 공포가 당해 연도 재정법안의 심의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며 심의절차는 헌법 제45조와 제47조, 동 조직법 제40조·제42조·제43조 및 제47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서 지속된다.

헌법 제47조 제4항의 관점에서 표결된 서비스는 정부가 전년도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한 최소한의 세출예산을 대표한다. 동 예산은 당해 연도의 가장 최근의 재정법이 승인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결산법안

제46조

결산법안은 동법 제54조·제58조 4. 및 5.에 명시된 서류를 포함하여 예산이 집행된 다음해 6월 1일 이전에 제출, 배포된다.

제3장 공통규정

제47조

헌법 제34조 및 제40조의 관점에서 세출예산에 적용되는 수정과 관련된 부담은 미션 별로 한다.

모든 수정은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의 개발을 수반해야 한다.
동 조직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수정은 접수될 수 없다.

제5편 공공재정에 관한 정보와 통제

제1장 정보

제48조

의회의 다음 연도 재정법안의 심의와 표결을 위하여 정부는 정기회기의 4/4분기 중에 국가경제발전과 공공재정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동법 제50조에 의한 보고서 작성 이래 확인된 경제발전에 대한 분석
2. 프랑스의 유럽적 책무와 관련된 경제·예산정책의 거시적 방향 서술
3. 국가 자원 및 주요 기능별로 분류된 부담에 대한 중기적 평가
4. 다음 연도 재정법안에 계획된 미션·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에 연계된 성과지표 목록 등 보고서에 대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토론될 수 있다.

제49조

당해연도 재정법안의 심의와 표결을 위하여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의회의 보고 및 통제와 관련된 다른 모든 규정과 상관 없이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및 관련 위원회는 매년 7월 10일 이전에 정부에 질문서를 보낸다. 정부는 동법 제39조 제1항에 적시된 날로부터 늦어도 만 8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제50조

당해연도 재정법안에는 국가의 경제, 사회 및 재정상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동 보고서는 당해연도 재정법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예측의 가정,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동 보고서는 재정법안 제출연도 이후 최소한 4년간의 전체 공공행정의 세부분야별로 상세하게 국가회계협약에 따라 서술되며, 프랑스의 유럽연합에 대한 책무와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기초한 권고사항도 반영하여 수입·지출 및 그의 발전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 부록에는 과거 수년간의 회계설명을 포함하는 국가회계에 대한 보고서들도 첨부된다.

제51조

당해연도 재정법안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한다:

1. 국가 이외의 법인에 영향을 주는 수혜자 또는 수혜자군별 모든 성격의 과세목록과 평가가 포함된 해설부록
2. 관련 연도의 예산제출의 변동이 수입·지출 및 예산수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3. 예산상 수입과 지출 내역, 운영 및 투자 부문
4. 각 예산상 수입 예측을 분석하고 재정 지출을 설명하는 부속서류
5. 현행 연도 및 관련 연도의 프로그램별 또는 교부금별로 제5조의 규정에 일치하는 목별 세출예산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력기금을 통해 승인될 수 있는 세출 추정액을 설명하는 설명적 부속서. 동 부속서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다음을 구체화하면서 연간성과계획안을 첨부한다:

- a) 선택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측정한 미래 연도들의 액션, 관련 비용, 추구하는 목표, 획득되고 기대되는 결과의 설명
 - b) 재정지출의 평가
 - c) 향후 진전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전년도의 실질적인 지출, 재정법에 의해 승인된 현재 연도의 세출예산, 이전 연도에 이월 세출예산으로 인해 증가된 세출예산 등과 비교한 세출예산 진전의 정당화
 - d) 투입승인과 연계된 지불예산의 지출기일 기재장부
 - e)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공무원단, 직업별 직군 및 계약유형별로 제시되는 범주별 예산 배정액과 현 상황 대비 변동의 정당화
6. 각각의 부속예산과 특별회계의 경우 당좌대월액 또는 프로그램별 또는 예비금별로 제안된 수입과 세출예산을 설명하는 부속서. 동 부속서에는 세입 예측과 경우에 따라 당좌대월을 정당화하면서 5.에 명시된 요건하에 이들 각각에 대한 연간성과 계획을 첨부한다.
7. 의회에 대한 보고와 의회에 의한 통제를 위하여 법률과 규칙에 명시된 일반적인 부속자료

제52조

의회에 의한 다음 연도 재정법안과 사회보장재원조달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위하여 정부는 정기회기 개시에 총조세부담과 그의 진전을 기입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현재 연도와 향후 2년 동안 정부가 계획한 법률 또는 규제적인 성격의 각 규정에 대한 재정적 평가를 포함한다.

동 보고서에 대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토론될 수 있다.

제53조

모든 수정재정법안에는 다음을 첨부한다:

1. 보고서의 규정들을 정당화하는 경제적·예산적 상황의 진전에 대한 보고서
2. 제안된 세출예산의 수정을 상세히 설명한 부록
3. 현재 연도의 세출예산 및 규제적 방법으로 개입된 전출입 요약표

제54조

결산법안에는 다음 문서를 첨부한다:

1. 일반예산의 수입 추이
2. 프로그램별 또는 보조금별로 승인된 세출예산액과 확인된 지출액을 상술하고 승인된 세출예산의 목별 설명과 요청한 세출예산의 수정액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설명적인 부속서. 또한 협력기금의 추산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액을 명시한다.
3. 동법 제51조 3.에 규정된 협약에 따라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을 설명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해 제5조 5.를 목표로 하는 지출의 재정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지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배경의 정당화를 포함하는 설명적 부속서
4. 관련된 연도의 재정법의 예측 및 최근의 결산법에서 입증된 실적과의 차이를 프로그램별로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연간성과보고서:
 - a) 목표, 기대 및 실적치, 지표와 관련 경비
 - b) 경우에 따라 불가항력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예산초과의 기원을 명백하게 하면서, 각 목별 세출예산과 입증된 지출의 진출입에 대한 정당화
 - c) 동법 제51조 5. e)의 양식에 따라 실제 고용인원의 배정 상황 및 관련 경비, 같은 양식에 따라 고용인원의 증감을 입증하는 조치와 이에 연관된 관련 경비 등을 명시한 고용허가 관리
5. 각 부속예산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확정된 수입과 지출의 최종액수, 승인된 세출예산 또는 승인받은 당좌대월, 세출예산과 요청된 당좌대월의 수정치를 프로그램별, 보조금별로 설명한 부속서, 이 부속서들은 4.에서 규정된 조건하에 그들 각각의 연간성과보서가 첨부된다.
6.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의 결과를 설명한 부속서
7. 수지균형·결산·대차대조표 및 그의 부록과 국가의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일반회계. 회계연도 중에 적용되는 회계방법과 규칙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도 첨부된다.

제55조

국가의 재원과 부담에 영향을 주는 재정법안의 각 규정은 당해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연도들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제56조

동 조직법에 의해 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에 게시한다. 국가의 방위·국내외 국가의 안전 또는 외교상 비밀사항을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도 관보에 게시한다.

제2장 통제

제57조

하원과 상원의 재정 관련 위원회는 재정법의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공공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평가한다. 이 임무는 위원장, 총괄보고위원, 할당된 영역 내의 특별보고위원 등에게 부여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모든 문서상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청문을 실시한다.

국가방위 및 국내외 안전과 관련된 비밀적 성격의 주제, 사법상 예심재판의 비밀 및 의료상 비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를 포함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재정적·행정적 차원의 모든 정보와 서류는 제공되어야 한다.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보고위원에 의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청문의 대상이 된 자는 이전 항에 명시된 요건의 유보하에 직업상 비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58조

2001년 7월 25일 no 2001-448 DC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조종하지 않는다고 선언된 규정.

헌법 제47조의 마지막 항에 의해 회계감사원에게 부여된 의회보좌업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동법 제57조에 명시된 통제와 평가 임무의 범위 안에서 상·하 양원의 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보고위원이 결정한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
 2. 회계감사원이 통제하는 기관과 부서의 관리에 대하여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사의 실현. 당해 조사의 결과는 조사요구의 신청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요청한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한 공포를 결정한다.
 3. 전년도 집행결과와 관련하여 동법 제48조에 언급된 보고서의 제출 시 첨부되는 예비보고서 제출
 4. 결산법안 제출 시 이전 연도 집행결과 및 특히 미선별·프로그램별 세출예산의 집행을 분석한 관련 회계들에 대한 첨부 보고서 제출
 5. 국가회계의 적법성·진실성 및 충실성에 대한 증명서. 이 증명서는 결산법안에 첨부되며 시행된 확인보고서를 첨부한다.
 6. 기술된 재정법안에서 비준이 필요한 행정적 방식에 의해 운용되는 세출예산의 전출입에 관한 보고서는 모든 재정법안에 첨부 제출
- 3·4 및 6호에서 규정된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장관의 답변을 첨부한다.

제59조

평가통제 임무의 활동을 위해 동법 제57조에 의해 요청된 자료의 전달이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도 획득될 수 없는 경우, 하원과 상원 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법원에 제소하여 업무방해 상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

통제 및 평가단이 정부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경우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제6편 조직법의 발효와 적용

제61조

현 조직법의 공포 후 3년 내에 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허가되지 않은 국가의 모든 보증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에 재정법에 의하여 명백히 허가되지 않은 국가보증을 요약한 부속서가 2004년도 결산법안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62조

- I. 제15조 II.의 규정은 2005 회계연도의 일반 지출예산과 지불예산에 적용될 수 있고, 이 중 일부 예산은 이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I. 제15조 III.의 규정은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을 지탱하는 「1959년 1월 2일의 정령 제59-2호」의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하에 승인된 세출예산에 적용될 수 있으며 2005 회계연도 말까지 이용될 수 있다.

제63조

별도의 입법 규정이 없는 한 「1959년 1월 2일의 정령 59-2」의 제4조에 따라 현 조직법의 공포 이후 두 번째 연도 중 적법하게 징수된 조세는 확정 날짜에 시행 중인 과표 기준·세율 및 부과방식에 따라 해당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수될 수 있다.

제64조

제46조의 기한과 제54조 7.의 규정은 현 조직법이 공포된 4년째에 귀속되는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법안에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전 연도에 귀속된 결산법안들은 늦어도 보고되는 예산의 집행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배포된다.

제65조

제14조·제25조·제26조(제3호 제외)·제32조·제33조·제36조·제39조제2항·제41조·제42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7조·제58조(제4호 및 제5호 제외)·제59조·제60조 및 제68조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제48조(4. 제외)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제26조 3.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제66조

- I. 참고적으로 2005년 재정법안에는 현 조직법에 의한 원칙에 따라 일반예산의 세출예산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한다.
- II. 2006년도 재정법안을 준비하면서 하원과 상원의 재정 담당 위원회들은 제7조에 명시된 미션과 프로그램들에 계획된 항목들에 대해 정부에 의해 보고받는다.

제67조

전술한 「1959년 1월 2일의 정령 제59-2호」는 동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의 유보하에 2005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그러나 이 정령의 규정은 2005년 및 이전 연도에 귀속된 재정법에 여전히 적용된다.

현 조직법은 제61조부터 제66조 및 동조의 이전 항의 유보하에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제68조

필요한 경우 동 조직법의 집행을 위하여 국가평의회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본 법은 국가의 법으로서 집행될 것이다.